

2026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1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01

- 1. 긴급복지지원제도의 개요 2
- 2.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5
- 3. 긴급지원의 종류 8
- 4.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9
- 5. 긴급지원체계 10
- 6. 긴급지원의 절차 16

02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22

-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24
 - 가. 발굴조사 24
 - 나. 활용자원 24
 -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26
 - 라. 발굴체계도 26
- 2.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27
 - 가. 위기상황의 정의(법 제2조) 27
 - 나. 현장확인(법 제8조) 38
 - 다. 지원단위 40

03

긴급지원의 실시

44

- 1. 생계지원(법 시행령 제2조) 46
- 2. 의료지원(법 시행령 제3조) 48
- 3. 주거지원(법 시행령 제4조) 55
-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법 시행령 제5조) 57
- 5. 교육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2) 58
- 6. 그 밖의 지원(법 시행령 제6조) 60
 - 6-1. 연료비 60
 - 6-2. 해산비 62
 - 6-3. 장제비 63
 - 6-4. 전기요금 64
- 7.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법 제9조) 65
- 8. 긴급지원수급계좌(법 제9조의2, 제18조) 66

04 사후조사 68

1. 개요(법 제13조)	70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72
3. 소득조사	74
4. 재산조사	83
5. 금융조사	94

05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02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법 제14조)	104
2. 지원연장 결정(법 제10조)	108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법 제15조)	111
4. 소멸시효	116
5. 이의신청(법 제16조)	116
6. 사후 연계(법 제4조)	117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122

06 서 식 126

07 부 록 158

1.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160
2. 고시	185
3. 만성고시질환	190
4. 노숙인 시설 현황	219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주요 개정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1편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개요 (p.2)	가. 지원대상 <위기사유> <p>1.~8. (생략)</p> <p>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① (생략)</p> <p>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p> <p>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p> <p>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p> <p>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p> <p>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p> <p>10. 타 법률</p> <p>① ~② (생략)</p> <p>③ <신설></p> <p>④ <신설></p>	가. 지원대상 <위기사유> <p>1.~8. (현행과 같음)</p> <p>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p> <p>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④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p> <p>⑥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⑦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p> <p>10. 타 법률</p> <p>① ~② (현행과 같음)</p> <p>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p> <p>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p>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개요 (p.3)	<소득·재산 기준> <p>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규모</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원/월</td> <td>1,794,010</td> <td>2,949,494</td> <td>3,769,015</td> </tr> <tr> <td></td> <th>4인</th> <th>5인</th> <th>6인</th> </tr> <tr> <td></td> <td>4,573,330</td> <td>5,331,144</td> <td>6,048,604</td> </tr> </tbody> </table> <p>※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7인 가구 6,741,321원)</p> <p>② 재산기준 (생략)</p> <p>③ 금융재산기준 :</p>	가구규모	1인	2인	3인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인	5인	6인		4,573,330	5,331,144	6,048,604	<소득·재산 기준> <p>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p>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규모</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원/월</td> <td>1,923,179</td> <td>3,149,469</td> <td>4,019,277</td> </tr> <tr> <td></td> <th>4인</th> <th>5인</th> <th>6인</th> </tr> <tr> <td></td> <td>4,871,054</td> <td>5,667,539</td> <td>6,416,964</td> </tr> </tbody> </table> <p>※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7인 가구 7,136,363원)</p> <p>② 재산기준 (현행과 같음)</p> <p>③ 금융재산기준 :</p>	가구규모	1인	2인	3인	원/월	1,923,179	3,149,469	4,019,277		4인	5인	6인		4,871,054	5,667,539	6,416,964
가구규모	1인	2인	3인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인	5인	6인																															
	4,573,330	5,331,144	6,048,604																															
가구규모	1인	2인	3인																															
원/월	1,923,179	3,149,469	4,019,277																															
	4인	5인	6인																															
	4,871,054	5,667,539	6,416,964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단위: 원)	(단위: 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8,392,000</td> <td>9,932,000</td> <td>11,025,000</td> </tr> <tr> <td>금액 (주거지원)</td> <td>10,392,000</td> <td>11,932,000</td> <td>13,025,000</td> </tr> <tr> <td></td> <td>4인</td> <td>5인</td> <td>6인</td> </tr> <tr> <td></td> <td>12,097,000</td> <td>13,108,000</td> <td>14,064,000</td> </tr> <tr> <td></td> <td>14,097,000</td> <td>15,108,000</td> <td>16,064,000</td> </tr> </tbody> </table> <p>*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24,000원 추가</p>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금액	8,392,000	9,932,000	11,025,000	금액 (주거지원)	10,392,000	11,932,000	13,025,000		4인	5인	6인		12,097,000	13,108,000	14,064,000		14,097,000	15,108,000	16,064,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8,564,000</td> <td>10,199,000</td> <td>11,359,000</td> </tr> <tr> <td>금액 (주거지원)</td> <td>10,564,000</td> <td>12,199,000</td> <td>13,359,000</td> </tr> <tr> <td></td> <td>4인</td> <td>5인</td> <td>6인</td> </tr> <tr> <td></td> <td>12,494,000</td> <td>13,556,000</td> <td>14,555,000</td> </tr> <tr> <td></td> <td>14,494,000</td> <td>15,556,000</td> <td>16,555,000</td> </tr> </tbody> </table> <p>*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000원 추가</p>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금액 (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4인	5인	6인		12,494,000	13,556,000	14,555,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금액	8,392,000	9,932,000	11,025,000																																															
금액 (주거지원)	10,392,000	11,932,000	13,025,000																																															
	4인	5인	6인																																															
	12,097,000	13,108,000	14,064,000																																															
	14,097,000	15,108,000	16,064,0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금액 (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4인	5인	6인																																															
	12,494,000	13,556,000	14,555,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간접복지 지원제도의 개요 (p.3)	<p>나. 지원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생계</td> <td>73만 500원/월(1인 기준) 187만 2,700원/월(4인 기준)</td> </tr> </tbody> </table>	종 류	지원금액	생계	73만 500원/월(1인 기준) 187만 2,700원/월(4인 기준)	<p>나. 지원내역</p> <table border="1"> <thead> <tr> <th>종 류</th> <th>지원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생계</td> <td>783,000원/월(1인 기준) 1,994,600원/월(4인 기준)</td> </tr> </tbody> </table>	종 류	지원금액	생계	783,000원/월(1인 기준) 1,994,600원/월(4인 기준)																																								
종 류	지원금액																																																	
생계	73만 500원/월(1인 기준) 187만 2,700원/월(4인 기준)																																																	
종 류	지원금액																																																	
생계	783,000원/월(1인 기준) 1,994,600원/월(4인 기준)																																																	
간접복지 지원의 기본원칙 (p.6)	<p>나. 단기 지원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이 종료되면 재지원 제한 기간에는 동일한 종류로 다시 지원할 수 없음 - 생계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1년, 다른 위기 사유의 경우 6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 * (예시) 실직으로 소득상실하여 '25.1.15.부터 3개월간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은 '25.1.15.-4.14.이며, 다시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6.4.15.부터 생계지원 책정 가능 - 주거, 시설이용지원은 동일한 위기사유의 경우 2년, 다른 위기사유의 경우 3개월 경과 시 지원 가능 - 의료지원은 동일 상병일 경우 2년, 다른 상병일 경우 바로 지원 가능하며,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에도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의료지원 추가 하여 복합지원 가능 - 부가지원은 재지원 제한 기간과 무관하게 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 지원요청 시 2개 이상의 위기상황(A, B)에 처한 자가 어느 하나(A)를 이유로 긴급지원을 받은 경우, 3개월 경과하였다더라도 다른 이유(B)로 지원 불가 * (예시) 갑자기 중한 부상을 당해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를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위기상황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종료 후라도 기존 위기상황인 공과금 체납으로는 재지원 불가 - 단, 시·군·구청장이 「간접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한 없이 바로 지원 가능 	<p>나. 단기 지원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 다시 발생 시 지원할 수 있음 * (예시) 실직으로 소득상실하여 '25.2.16.부터 3개월간 생계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은 '25.2.16. ~5.15.이며, 다시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7.5.16.부터 생계지원 책정 가능 - 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 경과 시, 주거시설 지원은 3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의료지원은 동일 상병일 경우 2년, 다른 상병일 경우 바로 지원 가능하며,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에도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의료지원 추가하여 복합지원 가능 - 시·군·구청장이 「간접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한 없이 바로 지원 가능 * (예시) 긴급지원 받고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가구원 A에게 가정폭력 당한 피해가구원 B가 가구원 분리를 생계-주거를 달리 하는 경우, A는 위기상황 지속여부 확인 후 1인으로 가구원수 조정하여 지원신청을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B와 같은 피해가구 원 포함는 가정폭력을 위기사유로 한정한 후 신규로 긴급지원 결정 가능 ○ 지원요청 시 2개 이상의 위기상황(A, B)에 처한 자가 어느 하나(A)를 이유로 긴급 지원을 받은 경우, 다른 이유(B)로 지원 불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 (예시) 긴급지원 받고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가구원 A에게 가정폭력 당한 피해가구원 B가 가구원 분리해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A는 위기상황 지속여부 확인 후 1인으로 가구원수 조정하여 지원연장을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B(와 같은 피해가구원 포함)는 가정폭력을 위기사유로 현장확인 후 신규로 긴급지원 결정 가능</p> <p>○ 종료된 지원과 다른 종류의 지원은 재지원 제한 없이 연속 지원 가능</p> <p>* (예시) 의료지원 종료 후 바로 생계지원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참고 재지원 제한 기간]</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후지원 선지원</th> <th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동일 위기사유</th> <th colspan="3"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다른 위기사유</th> </tr> <tr> <th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생계 지원</th> <th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의료 지원</th> <th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주거, 시설 이용 지원</th> <th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생계 지원</th> <th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의료 지원</th> <th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주거, 시설 이용 지원</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생계 지원</td> <td>1년</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d>6개월</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의료 지원</td> <td>제한 없음</td> <td>2년 *동일 상병</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 * 다른 상병</td> <td>제한 없음</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4a7ebb; color: white;">주거, 시설 이용지원</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d>2년</td> <td>제한 없음</td> <td>제한 없음</td> <td>3개월</td> </tr> </tbody> </table>	후지원 선지원	동일 위기사유			다른 위기사유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시설 이용 지원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시설 이용 지원	생계 지원	1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6개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의료 지원	제한 없음	2년 *동일 상병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다른 상병	제한 없음	주거, 시설 이용지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개월	<p>* (예시) 갑자기 중한 부상을 당해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를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위기상황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종료 후라도 기존 위기상황인 공과금 체납으로는 재지원 불가</p> <p>○ 부가지원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후지원 선지원	동일 위기사유			다른 위기사유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시설 이용 지원	생계 지원	의료 지원	주거, 시설 이용 지원																														
생계 지원	1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6개월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의료 지원	제한 없음	2년 *동일 상병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제한 없음 * 다른 상병	제한 없음																														
주거, 시설 이용지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2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3개월																														

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p>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29)</p>	<p>(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생략)</p> <p>④ 위기상황의 확인</p> <p>-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지원센터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 확인서 대체 가능</p>	<p>(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 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현행과 같음)</p> <p>④ 위기상황의 확인</p> <p>-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p>
<p>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31)</p>	<p>(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생략)</p> <p>•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서 정한 적용제의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p> <p>※ 확인되는 급여가 601,800원(최저임금 10,030원×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p>	<p>(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현행과 같음)</p> <p>•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서 정한 적용제의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p> <p>※ 확인되는 급여가 619,200원(최저임금 10,320원×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32~33)</p>	<p>(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p> <p>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p> <p>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p> <p>- (지원대상)</p> <p>(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p>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생략)</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 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때 	<p>(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p> <p>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p> <p>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지원대상)</p> <p>(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p>④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생략)</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 지원 대상자로 추천한 경우 • 노숙인이 된 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것
<p>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34)</p>	<p>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⁹⁾으로서 <u>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u></p>	<p>⑦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p> <p>- (지원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 자살의도자
<p>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35)</p>	<p>(차) ~ (카) (생략)</p> <p>(타) < 신설 ></p> <p>(파) < 신설 ></p>	<p>(차) ~ (카) (현행과 같음)</p> <p>(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p> <p>(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p>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36~37)	위기상황별 요건 확인자료			위기상황별 요건 확인자료		
	구분	요 건	요건확인자료	구분	요 건	요건확인자료
		(생략)			(현행과 같음)	
	가정 폭력	(생략)	- 아래 목록 중 택 1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가정 폭력	(현행과 같음)	- 아래 목록 중 택 1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생략)			(현행과 같음)	
	단전	- 전요금 장기 체납으로 독촉 고지(사) 후 잔류 제한기 설치된 경우	- 전류제한기 부설 통지문 (부설 예고통지 스티커 포함)	단전	- 소독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 (전류 제한기 부설)이 확인된 경우	※ 단전(전류제한기 부설)여부는 지자체 별도 확인
	출소	- 교정시설 출소자(만기, 가석방, 형 집행정지) - 구금기간 1개월 이상, 출소일부 6개월 이하인 경우 (생략)	(생략)	출소	- 교정시설 출소자(만기, 가석방, 형 집행정지) - 구금기간 6개월 이상, 출소일부 6개월 이내인 경우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전세 사기 피해자	(생략)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통지서, 전세 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 등 증빙서류	전세 사기 피해자	(현행과 같음)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43)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생략) - < 신 설 > - 생계급여수급자, 시설수급자,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사람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현행과 같음) - 보장시설 입소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사람		
긴급지원 대상자의 선정 (p.43)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은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채 생계 곤란한 상태로 현재 긴급지원대상자와 거주하고 있어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가구원으로서 포함 가능			- 재외국민 • 재외국민은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 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제3편 긴급지원의 실시			
생계지원 (p.47)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4인	5인	6인
	1,872,700	2,186,500	2,485,4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지원금액	783,000	1,286,600
	4인	5인	6인
	1,994,600	2,324,400	2,636,7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의료지원 (p.51)	마. 지원기간(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회 지원 ○ (추가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의료기관 등에 일괄 지급할 수 없음에 유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 1회 지원 ○ (추가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 다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300만원 초과 시 분할 지급

제4편 사후조사

개요 (p.70)	나. 사후조사의 내용						
	소득·재산 기준						
	① 소득기준: (생략)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794,010	2,949,494	3,769,015	4,573,330	5,331,144	6,048,60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92,717원씩 증가 (7인 가구 6,741,321원)						
	② 재산기준 (생략)						
	③ 금융재산기준: (생략)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392	9,932	11,025	12,097	13,108	14,064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24천원 추가							
	나. 사후조사의 내용						
	소득·재산 기준						
	① 소득기준: (현행과 같음)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 (7인 가구 7,136,363원)						
	② 재산기준: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현행과 같음)						
	③ 금융재산기준: (현행과 같음)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564	10,199	11,359	12,494	13,556	14,555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천원 추가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소득조사 (p.81)</p>	<p>③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참여로 얻는 수당 중 다음금액 <p>*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II유형 취업활동비용 최대 201.4만원</p>	<p>③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현행과 같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II유형 참여로 얻는 취업활동비용 <p>*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p>																																																																																
<p>재산조사 (p.83)</p>	<p>(1) 재산의 의미 및 산정방식</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재산의 합계액</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 한도액 차감</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금융재산 *생활준비금 등 차감</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부채</div> </div> <p>※ 재산의 합계액이 "-"인 경우 0월으로 처리</p>	<p>(1) 재산의 의미 및 산정방식</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재산의 합계액</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재산</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보험[※], 주택청약 종합저축</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부채</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div> </div>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 10px 0;">↓</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gap: 10px;">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재산의 합계액이 "- "인 경우 0월으로 처리</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재산</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일반재산 시행규칙 제8조제1항 제1호가목 부대 자목 * 주거용 재산 한도액 차감</div> <div style="font-size: 24px;">+</div>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금융재산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가목·나목 * 당 내역의 ①보험 ②주택 청약 종합저축은 일반재산 으로 산정·처리 ** 생활준비금 등 차감</div> </div>																																																																																
<p>금융조사 (p.96)</p>	<p>마. 생활준비금 및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p> <p>(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25년 생활준비금</td> <td>2,392,000</td> <td>3,932,000</td> <td>5,025,000</td> </tr> <tr> <td>4인</td> <td>5인</td> <td>6인</td> <td></td> </tr> <tr> <td>6,097,000</td> <td>7,108,000</td> <td>8,064,000</td> <td></td> </tr> </tbody> </table> <p>※ 재산의 합계액 산정 시 생활준비금은 금융재산에서 차감</p> <p>* 「금융재산 기준」 - 2025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8,392,000</td> <td>9,932,000</td> <td>11,025,000</td> </tr> <tr> <td>금액 (주거지원)</td> <td>10,392,000</td> <td>11,932,000</td> <td>13,025,000</td> </tr> <tr> <td>4인</td> <td>5인</td> <td>6인</td> <td></td> </tr> <tr> <td>12,097,000</td> <td>13,108,000</td> <td>14,064,000</td> <td></td> </tr> <tr> <td>14,097,000</td> <td>15,108,000</td> <td>16,064,000</td> <td></td> </tr> </tbody> </table> <p>*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24,000원 추가</p>	가구원수	1인	2인	3인	25년 생활준비금	2,392,000	3,932,000	5,025,000	4인	5인	6인		6,097,000	7,108,000	8,064,0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금액	8,392,000	9,932,000	11,025,000	금액 (주거지원)	10,392,000	11,932,000	13,025,000	4인	5인	6인		12,097,000	13,108,000	14,064,000		14,097,000	15,108,000	16,064,000		<p>마. 생활준비금 및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p> <p>(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26년 생활준비금</td> <td>2,564,000</td> <td>4,199,000</td> <td>5,359,000</td> </tr> <tr> <td>4인</td> <td>5인</td> <td>6인</td> <td></td> </tr> <tr> <td>6,494,000</td> <td>7,556,000</td> <td>8,555,000</td> <td></td> </tr> </tbody> </table> <p>※ 생활준비금은 재산의 합계액 산정 시 금융재산에서 차감</p> <p>* 「금융재산 기준」 - 2026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단위: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가구원수</th> <th>1인</th> <th>2인</th> <th>3인</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8,564,000</td> <td>10,199,000</td> <td>11,359,000</td> </tr> <tr> <td>금액 (주거지원)</td> <td>10,564,000</td> <td>12,199,000</td> <td>13,359,000</td> </tr> <tr> <td>4인</td> <td>5인</td> <td>6인</td> <td></td> </tr> <tr> <td>12,494,000</td> <td>13,556,000</td> <td>14,555,000</td> <td></td> </tr> <tr> <td>14,494,000</td> <td>15,556,000</td> <td>16,555,000</td> <td></td> </tr> </tbody> </table> <p>*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000원 추가</p>	가구원수	1인	2인	3인	26년 생활준비금	2,564,000	4,199,000	5,359,000	4인	5인	6인		6,494,000	7,556,000	8,555,0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금액 (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4인	5인	6인		12,494,000	13,556,000	14,555,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25년 생활준비금	2,392,000	3,932,000	5,025,000																																																																															
4인	5인	6인																																																																																
6,097,000	7,108,000	8,064,0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금액	8,392,000	9,932,000	11,025,000																																																																															
금액 (주거지원)	10,392,000	11,932,000	13,025,000																																																																															
4인	5인	6인																																																																																
12,097,000	13,108,000	14,064,000																																																																																
14,097,000	15,108,000	16,064,0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26년 생활준비금	2,564,000	4,199,000	5,359,000																																																																															
4인	5인	6인																																																																																
6,494,000	7,556,000	8,555,000																																																																																
가구원수	1인	2인	3인																																																																															
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금액 (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4인	5인	6인																																																																																
12,494,000	13,556,000	14,555,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금융조사 (p.97)	<p>(다)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 결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등의 자금은 가입기간 중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차감 가능 - 희망키움통장, 디딤씨앗통장, 내일키움통장, 희망플러스통장, 청년희망적금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포함 	<p>(다)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 결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등의 자금은 가입기간 중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차감 가능 - 희망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플러스통장, 청년희망적금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포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금융조사 (p.98)	<p>바.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일시금 공제금액〉 (단위: 원)</p>				<p>바.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일시금 공제금액〉 (단위: 원)</p>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1,315,000	2,162,000	2,763,000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1,410,000	2,309,000	2,947,000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6,097,773	7,108,192	8,064,805		6,494,738	7,556,719	8,555,952	
	3,353,000	3,909,000	4,435,000		3,572,000	4,156,000	4,705,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08,000원씩 증가(7인 가구 4,943,0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28,000원씩 증가(7인 가구 5,233,000원)			

제5편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p.112)	<p>다 지원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p> <p>(1) 납부통지 (생략)</p> <p>-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서식 제12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출력 후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발송</p> <p>※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불산입</p>	<p>다 지원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p> <p>(1) 납부통지 (현행과 같음)</p> <p>-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서식 제12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출력 후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발송</p> <p>※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7조,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p>
사후 연계 (p.120)	<p>(2)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중 긴급복지 지원이 종료됨에도 불구하고 생계에 지속적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공통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p>(2)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 가능 ※ 공통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공통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 중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가구소득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지 않을 것 <p>〈개별요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 교육, 주거, 의료 등 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을 것 - 지원대상 자녀 또는 양육비 채권자가 중증질환이 있거나, 질병 또는 상해로 2주 이상 입원하여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 질병이나 부상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조부모인 경우 - 난방, 전기, 수도 공과금의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경우 - 양육비 채권자가 채무초과로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결정이 되었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결정이 된 경우 - 그 밖에 한시적양육비지급심의위원회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원칙) - 지원 기간: 9개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상황 지속될 경우 지원 종료 후 3개월 연장 가능 - 문의사항: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대상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공통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양육부로부터 정식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이행한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p>* 선지급 기준금액: 월 20만원(단,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관련 이행명령, 채권추심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혼가구, 조손가구라도 양육비 채권이 있다면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직접 양육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채권(양육비부담조서, 결정문, 조정조서, 화해 권고결정 등)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18세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등 선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지원 중단 - 문의사항: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p>사후 연계 (p.121)</p>	<p>(1)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 재단 등 민간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지원협의회를 통해 긴급지원 후 연계방안에 대한 기본체계 마련 	<p>(1)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 재단 등 민간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지원협의회를 통해 긴급지원 후 연계방안에 대한 기본체계 마련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p>-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p> <p>* 민간기관의 지원사업 예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빈곤 가정지원사업, 대한적십자사의 긴급구호사업, 아름다운재단의 긴급/특별나눔사업 등</p>	<p>-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p> <p>〈 삭제 〉</p>
제6편 서식		
<p>서식 (p.128~143)</p>	<p>[서식 1호] 현장확인서 〈앞면〉 위기사유 (생략) 〈신설〉 〈신설〉</p>	<p>[서식 1호] 현장확인서 〈앞면〉 위기사유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여객기참사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산불피해자)</p>
	<p>[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개정2022.9.5.〉</p>	<p>[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개정2025.7.4.〉</p>
	<p>[서식 11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앞면〉 위기사유 (생략) 〈신설〉 〈신설〉</p>	<p>[서식 11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앞면〉 위기사유 (현행과 같음)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여객기참사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산불피해자)</p>

이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01 긴급복지지원의 개요

1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개요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결정 전 반드시 제3편(긴급지원의 실시) 지원종류별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의 세부사항 확인 후 지원결정할 것에 유의

가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위기사유〉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⑦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 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②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④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①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75%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7인 가구 7,136,363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단위: 천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0	152,000	130,000

③ 금융재산기준: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단위: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금액 (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000원 추가

나 지원내역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금전·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 지원 ①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783,000원/월(1인 기준) 1,994,600원/월(4인 기준)	6회
		의료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 국가자체 소유 또는 타인 소유의 임차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39만 8,900원/월 이내(대도시 1인 기준) 66만 2,500원/월 이내(대도시 4인 기준)	12회
		복지 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55만 2,000원/월 이내(1인 기준) 149만 4,100원/월 이내(4인 기준)	6회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부가 지원 ②	교육	○ 가구원 내 초·중·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초 12만 7,900원/분기 - 중 18만 원/분기 - 고 21만 4,000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에게 연료비, 해산비 등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15만 원 /월 - 해산비(70만 원)·장제비(80만 원) 전기요금(50만 원 이내): 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② 부가지원은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주지원과 병행 지원이 가능하나 반드시 지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병행 지원 여부 결정
- ③ 주거지원(최대 12개월)대상자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분기)로, 분기별 지원해야 함에 주의

다 지원절차

- 대상자, 관계인의 지원요청/신고 발생 시, 현장확인[서식 1호~7호 활용] → 지원 결정 [서식 8호] 및 통보 → 지급 →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서식 11호, 서식 8호] →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서식 8호, 서식 12호]

※ 현장확인 은 1일 이내에 실시하고,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부적정 결정 후 처리



* 긴급복지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상담, 정보 제공 및 연계

2 긴급복지지원의 기본원칙

가 선지원 후처리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이나 관계인이 지원요청 또는 신고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요청일부터 후 1일 이내¹⁾)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해 우선 지원(지원 결정 1일 이내, 지급 1일 이내 등 추가 2일 이내로 실시, 총 72시간 이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나 단기 지원 원칙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① 생계지원은 3개월,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 의료·교육지원의 경우 1회
 - ②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①, ②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계·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3개월 범위 내, 주거지원은 9개월 범위내,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은 3회 범위 내 추가연장 가능

지원	원칙	시·군·구청장 결정	긴급지원심사위원회
생계	3개월		3개월 범위내 연장
시설이용, 연료비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3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주거지원	1개월	2개월 범위내 지원연장	9개월 범위내 추가연장
의료지원	1회	-	1회 추가연장
교육지원	1회(분기)	-	3회(분기)* 범위내 추가연장

* 교육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분기)까지 추가연장 가능

1) 본 지침 상 '1일 이내'라 함은 긴급지원공무원의 인지 시점부터 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를 의미

-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사유가 다시 발생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음
 - 다만, 지원이 종료된 때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동일한 위기사유가 다시 발생 시 지원할 수 있음
 - * (예시) 실직으로 소득상실하여 '25.2.16.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기간은 '25.2.16.~5.15.이며, 다시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7.5.16.부터 생계지원 책정 가능
 - 다른 위기사유라도 생계지원은 1년 경과 시, 주거·시설지원은 3개월 경과시 지원 가능
 - 의료지원은 동일 상병일 경우 2년, 다른 상병일 경우 바로 지원 가능하며,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중에도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의료지원 추가하여 복합지원 가능
 - 시·군·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생활이 곤란하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한 없이 바로 지원 가능
 - * (예시) 긴급지원 받고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가구원 A에게 가정폭력 당한 피해가구원 B가 가구원 분리해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A는 위기상황 지속여부 확인 후 1인으로 가구원수 조정하여 지원연장을 검토하고, 이와 별개로 B(B와 같은 피해가구원 포함)는 가정폭력을 위기사유로 현장확인 후 신규로 긴급지원 결정 가능
- 지원요청 시 2개 이상의 위기상황(A, B)에 처한 자가 어느 하나(A)를 이유로 긴급 지원을 받은 경우, 다른 이유(B)로 지원 불가
 - * (예시) 갑자기 중한 부상을 당해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를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위기상황으로 지원한 경우, 지원종료 후라도 기존 위기상황인 공과금 체납으로는 재지원 불가
- 부가지원은 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가능

다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의 원칙 (법 제3조제2항)

- 「재해구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청소년복지 지원법」²⁾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긴급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제외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때 시·군·구청장이 가구특성, 생활실태 등을 고려하여, 긴급복지보다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시설보호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에 적극적으로 연계 하도록 함
-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긴급지원 가능

라 가구단위 지원의 원칙

- 가구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및 그와 함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자를 하나의 가구로 봄
- 다만, 의료·교육지원과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 장제비는 해당 지원이 필요한 가구 구성원 개인에게 지원(개인단위 지원)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성평등가족부): 보호자 부재 또는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만 24세 이하 저소득층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상자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청소년활동·기타 지원비용을 현금으로 지원

3 긴급지원의 종류

가 금전 또는 현물 등의 직접 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나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로의 연계 지원
- 상담·정보제공 등 그 밖의 지원

4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

가 지원금품에 대한 압류 등 금지 (법 제18조)

- 압류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음
 - 긴급지원수급계좌³⁾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음
- 양도 및 담보 제공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법 제4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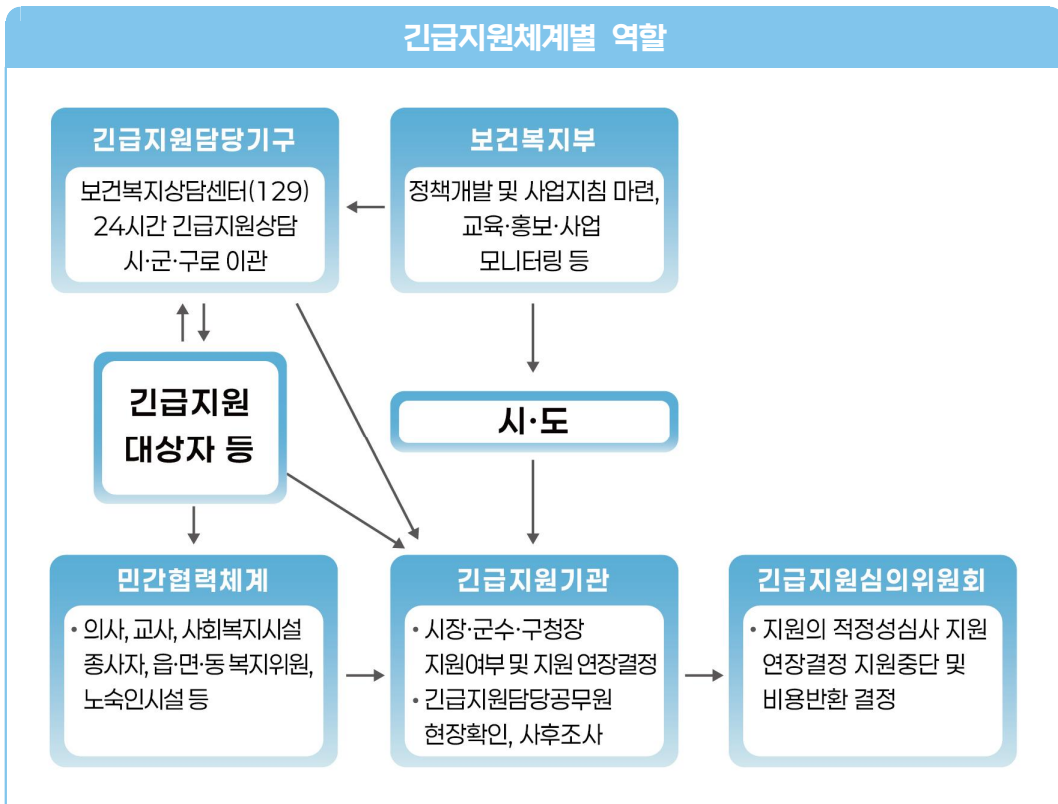
다 개인정보의 보호 (법 제13조제7항, 제19조)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긴급지원의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긴급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해서는 안 됨
-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긴급지원수급계좌(법 제9조의2)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개설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

5 긴급지원체계

- (긴급지원기관) 시장·군수·구청장 ⇒ 요청·신고 시 현장확인 및 지원결정, 지원 (사후조사 등)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 요청에 따라 긴급지원 연장결정, 적정성 심사, 지원비용 환수 등 심의·의결
- (긴급지원 담당기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상담·정보 제공, 지원요청·신고의 이관, 기관·단체 등 연계
- (민간협력체계) 의사 등 의료기관종사자, 교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 등 ⇒ 대상자 조기발굴(신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 연계 지원



가 시·군·구

(1) 시장·군수·구청장

(가) 긴급지원기관(법 제6조)

- (원칙) 긴급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
-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실거주지의 시·군·구청장
 - ① 거주불명등록 상태이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부여가 필요한 경우
 - 출생 미등록 아동, 무호적자
 -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 보장시설 입소자로 범죄피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 필요한 사람
 -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그밖에 이에 준하는 자

*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의2(전산관리번호의 부여)

- ① 보장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가 누락되지 아니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관리번호를 임시로 부여할 수 있다.
 1. 출생 미신고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사람
 2. 일정한 거소가 없는 무연고자로서 주민등록번호 부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입소자로서 범죄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4.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상담을 요청한 위기임산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부 또는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비식별화를 신청한 위기산부

- ③ 불가피한 가구의 사정으로 주민등록 이전이 어려운 경우
 - 채무, 범죄피해 등으로 실거주지의 노출이 어려운 경우
 - 질병으로 인하여 타 지역에 장기 입원해야 하는 경우
 - 화재 등으로 전입신고 없이 긴급히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폭넓게 인정
 - ※ 단, 실거주지로 전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교육 등의 사유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기관이 됨
- ④ 수시 발굴을 통해 위기가구로 확인된 경우에는 실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책임하에 긴급지원 실시
 - ※ 실거주지의 시·군·구청장은 주민등록표 상 거주지 또는 다른 지자체에서 현장확인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시·군·구청장에게 협조 요청 가능하며, 요청받은 시·군·구청장은 반드시 협조

(나) 역할

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지정(법 제6조제3항)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변경 시,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1번)로 연락해 담당자 정보 현행화

- 시·군·구청장이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당해 시·군·구 소속 공무원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고, 사회복지 업무 3년 이상의 경력자로 배치
- 복지 관련 교육훈련: 긴급복지지원사업을 포함한 사회복지 관련 교육⁴⁾을 담당공무원 지정 전 3년 내에 10시간 이상 이수. 단, 불가피한 경우 발령 후 3개월 내에 필수 이수

② 지원요청 또는 신고 있을 시 현장확인: 읍·면·동, 시·군·구

* 읍·면·동 담당공무원 권한 확대(행복e음: 지원대상자선정관리 → 현장조사내역등록)

③ 긴급지원 실시

④ 사후조사 실시 후 적정성 심사 상정

⑤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른 지원연장 여부 결정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지원종류별 연장범위 내에서 검토 후 통보

(다) 기 타

① 이의신청서 시·도 송부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도지사에게 송부

② 긴급지원기관의 조정 요청

-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로 연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

4)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거나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관련 실무교육(기초 생활보장, 노인, 장애인 등) 또는 개별 지자체 교육훈련기관 실시 유사교육

(2) 긴급지원심의위원회(법 제12조)

(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① 긴급지원연장 결정
- ②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 ③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 ④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나) 구 성

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 임명 또는 위촉 주체: 위원장(시장·군수·구청장)
- 위원 정수: 위원장 1인 포함 15인 이내
- 위원 자격

- ㉠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5)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 ㉣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 또는 ㉡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함

- 위원 임기: 2년 이상 3년 이하

② 시·군·구의 기존 위원회 활용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여 그 기능을 대신하는 협의체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음

※ 또한,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반드시 사후 긴급지원심의 위원회에 보고하여 의결처리(단, 사후조사 결과가 지원결정 사항과 동일하거나 지원이 명백히 적정한 경우, 소위원회 의결만으로 심의 종료 가능),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반대 의결한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함

※ 긴급복지의 지원 증가 추세, 심사의 전문성 및 신속성 확보 등을 고려하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검토 필요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 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③ 위원회 개최 및 운영

㉓ 개최시기: 수시

- 매월 1회 이상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개최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고 신속한 적정성 심의를 통해 지원연장 등을 결정
- * 신속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준수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 가능

㉔ 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㉕ 수당지급: 시·군·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나 시·도

(1) 긴급지원기관 조정(법 제6조)

- 시·군·구청장으로부터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군·구의 예산확보 현황, 긴급복지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의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함
- 새로이 긴급지원기관이 된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긴급지원절차를 이행해야 함

(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법 제16조)

- 지원결정, 지원중단 또는 비용반환명령에 불복하는 긴급지원대상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다 긴급지원 담당기구 (법 제11조)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 기능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긴급지원기관 연계
- 긴급지원의 담당기구로서 365일 24시간 상담팀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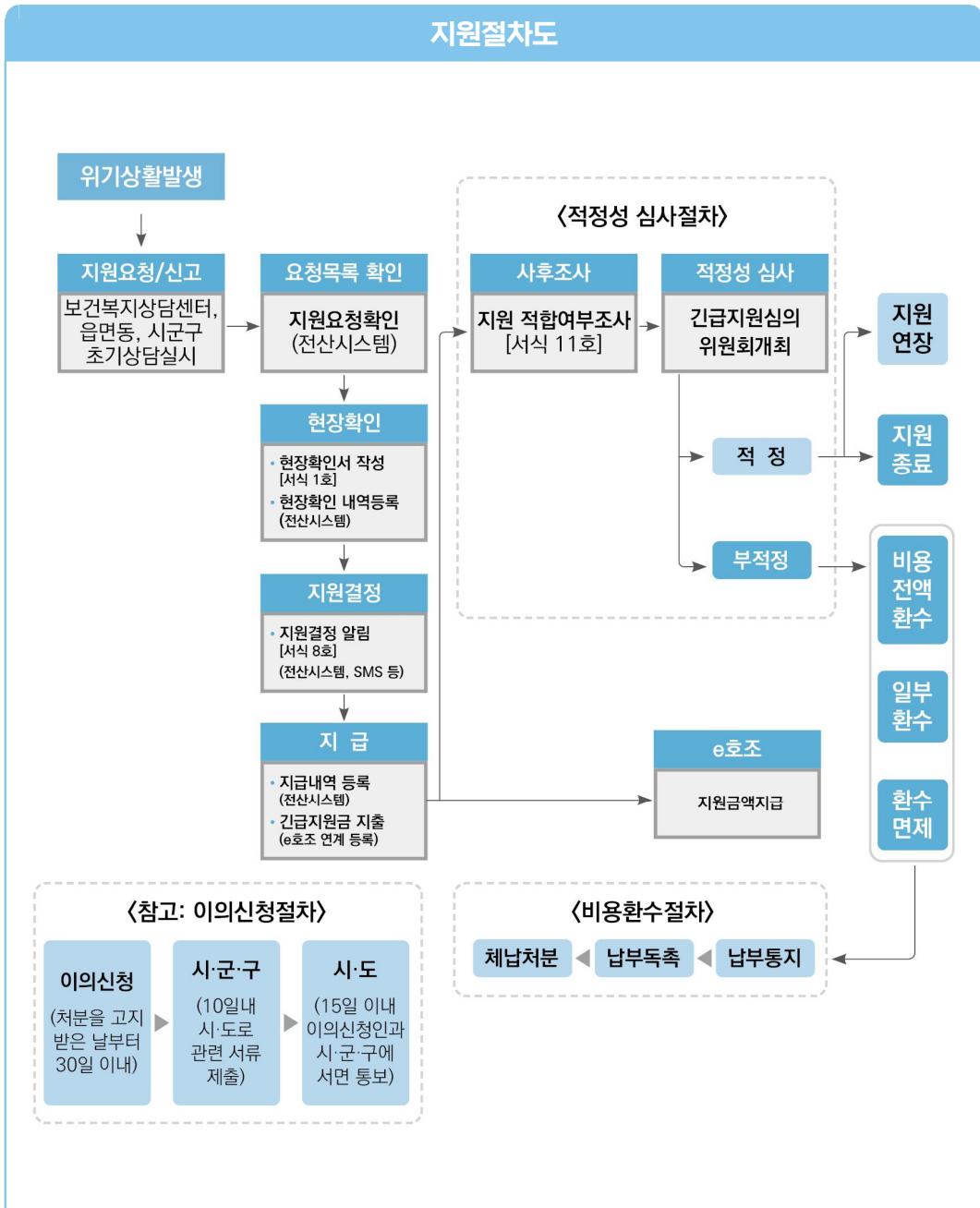
(2) 긴급지원의 처리과정

- ① 상담센터를 통한 지원요청 또는 신고 → ② 상담센터(상담사)는 시장·군수·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연계 → ③ 시·군·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이관된 긴급지원대상자의 상담내역(정보) 확인 후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3) 시·군·구(긴급지원담당공무원)와의 관계

- 시·군·구청장이 신속히 긴급지원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상세정보 이관 등 적극적인 업무지원 및 협력

6 긴급지원의 절차



가 지원요청 또는 신고

(1) 지원요청 또는 신고 주체

○ 지원요청

- 긴급지원대상자(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원 요청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에서 팩스·e-mail 등으로 진료비 영수증 등을 일방적으로 전송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요청 사실을 인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주요 의료기관 등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 필요

○ 신고

-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사람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제1호부터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의 활용 자원 참고)

(2) 요청목록 확인

○ 긴급지원 담당기구(보건복지상담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원은 긴급지원의 요청 또는 신고 전화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시·군·구청장에게 이관하거나 상황에 따라 응급상황지원 관련기관⁶⁾에 연계

○ 긴급지원기관(시·군·구청장)

- 지원요청·신고 또는 신고의 이관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며, 이때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나 현장확인 (법 제8조)

(1) 목적

- 긴급지원을 요청하거나 신고 또는 발견된 사람에 대한 위기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함

6)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장애인권익옹호기관(1644-8295),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긴급상담(1366), 119, 경찰관서(폭력, 학대 사건은 우선적으로 경찰서로 연계) 등

(2) 현장확인 주체

- 읍·면·동 또는 시·군·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 ※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현장확인 시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식 1호] 현장확인서를 휴대하여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서식 1호] 현장확인서도 인정(대리 현장확인자의 서명 필요)

(3) 현장확인 시기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이관받은 경우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 지원요청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현장확인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 시·군·구청장은 지원 결정을 보류하거나 부적합 결정을 할 수 있음

(4) 관련서류 및 요건확인 자료 요구

- 기본서류: [서식 1호] 현장확인서, [서식 2호]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또는 [서식 2-1호] 소득·재산 신고서,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서식 5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 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선지원 후 징구 가능
- 요구자료: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원 보유계좌별 잔액증명서(또는 내역정리된 통장), 법정 위기상황과 지원내용의 결정 여부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시 제출 가능한 자료(p.36 위기상황별 요건 확인자료 참고)
 - ※ 금융재산 기준의 적합 여부는 사후조사 단계에서 확인함에 유의

(5) 증빙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처리

- 선지원 후 위기상황 입증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내부결재([서식 11호] 사후조사 보고서) 득한 뒤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 부적정 결정 시 지원중단 처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지원한 긴급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

(6)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업무처리

- (지원요청·신고 시) ‘행복e음>상담·신청>초기상담’ 작성 후 화면 하단의 [긴급복지 요청] 처리. 현장확인 후 ‘행복e음>긴급복지>현장조사 내역등록’에서 긴급지원대상자 정보 입력

- (정보수정 필요시) '행복e음>긴급복지>지원대상자 선정관리>지원요청목록'에서는 가구원 변경을, '현장조사 내역등록'에서는 '직권등록'을 통해 입력한 정보 수정 가능

㉔ 지원결정 및 지급

- (지원결정)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서식 8호]를 참조하여 지체 없이 지원결정 실시
 - 이때,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종류와 지원기간, 유의사항을 통보하고 긴급지원금을 지급. 부적합할 경우에도 반드시 부적합 결정을 통보
 - ※ (결정통보 방식)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통보하며, 문서 통보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식8호] 출력·첨부
- (공적·재산자료 요청)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공적자료요청 및 금융재산요청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실시
- (긴급지원금 지급) '행복e음>긴급복지>긴급복지지원 지급내역 등록' 입력 후 전자결재 득한 뒤 지방재정시스템연계 통해 e호조로 지급

㉕ 사후조사

(1)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선지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함

(2) 사후조사 주체 및 시기(법 시행령 제7조)

- 시·군·구청장은 지원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7)에 사후조사를 완료해야 함
 - ※ 공적자료는 통상 3~5일내 회신되나 금융재산 자료는 기간 내 회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장 필요시 회신된 공적자료를 근거로 지원연장 결정·지급하고 금융재산 회신자료가 확인되는 즉시 사후조사 실시
- (사후조사) 사후관리 내역등록에서 사후조사를 통해 선지원에 대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
- (전출입관리) 전출입관리의 긴급지원대상자 전출관리/전입관리를 통해 전출입가구에 대한 변동처리 후 즉시 현장확인 및 지원

7) 사후조사 결과는 시·군·구청장이 지원연장 결정시 부적정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고, 지원연장 필요시 지원종료 3일 전까지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후조사를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정보⁸⁾는 지원의 적정성 등 심사를 위해 지원요청 (또는 신고) 시점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

마) 적정성 심사

(1) 목적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악용하는 부적정 사례의 발생을 차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 건전한 재정 집행을 수행하기 위함

(2) 적정성 심사기관: 시·군·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3) 적정성 심사대상

- 최초 실시한 선(先)지원 건
- 금전 및 현물지원한 건
- 적정성 심사 이후 가구원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건

(4) 적정성 심사의 실시

- 시·군·구청장의 사후조사 완료 후 실시하되 선지원의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완료
- 사후조사 결과 지원기준 초과 시 시·군·구청장은 현장확인 당시 확인한 가구의 전반적 상황 등의 종합적 판단을 위한 참고자료를 작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
- ※ 소득·재산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님에 유의

(5) 심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적정/부적정 결정에 따라 지원중지 또는 지원연장을 결정하고, 부적정 결정 시 지원중지 및 환수/환수면제 등 사후조치 실시

바) 지원연장 결정

(1) 목적

- 선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별 연장가능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연장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8) 현장확인서, 사후조사보고서, 제출된 증빙자료, 적정성 및 추가연장 심사 결과보고 문서 등 서류일체

(2) 연장결정 주체 및 연장 기간(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4조)

- (가) 시·군·구청장(1차) :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 지원의 경우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지원연장 결정
- (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2차) : 생계·사회복지시설 이용·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 지원은 3개월의 범위, 주거지원은 9개월의 범위, 의료지원은 1회, 교육지원은 1회(주거지원 받을 시 3회 범위 내) 추가연장 결정

(3) 지원연장결정 시기(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가) 1차(지원연장)**

- 시·군·구청장은 지원종료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연장이 결정된 경우 [서식 8호]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를 참고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기간 내 회신되지 않은 경우, 우선 공적자료 사후조사 실시 후 지원연장 하고, 금융재산 회신 즉시 사후조사 실시

(나) 2차(추가연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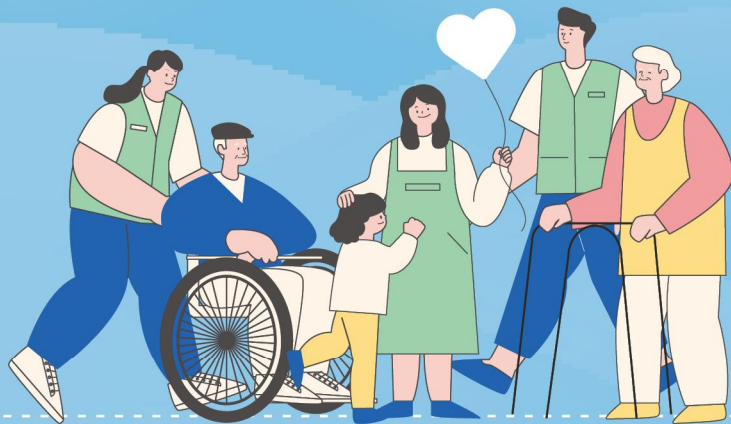
- ① 시·군·구청장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요한 사유, 추가연장기간 및 지원내용 등을 심의조서에 기재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안건으로 상정 → ② 위원회는 지원기간 종료 3일 전까지(의료지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연장 여부를 결정 → ③ 시·군·구청장은 [서식 8호] 통보서를 참고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함

사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1)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중단하고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함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은 아니나 부적정한 지원이었던 것으로 사후 드러난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중단 후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 (3)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그 초과 지원액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음

02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02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1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가 발굴조사

(1) 정기 발굴조사(법 제7조의2)

- 시·도 및 시·군·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야 함

나 활용자원

(1) 발굴 협력·신고 의무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⁹⁾의 종사자¹⁰⁾
- 「유아교육법」¹¹⁾, 「초·중등교육법」¹²⁾ 및 「고등교육법」¹³⁾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 겸임교사, 강사

9)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

10)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에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자 모두를 의미

11)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유치원 원장, 원감 및 교사

1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19조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의 교장, 교감 및 교사

13) 「고등교육법」 제2조 및 제14조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의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¹⁴⁾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분야 또는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2) 기존 응급상황지원 관련 종사자

- 노인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찰관서, 119 응급구조대 등

(3) 저소득층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자

- 통·리·반장,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 학교사회복지사, 대한적십자사 봉사원, 복지도우미, 가스 검침원, 종교인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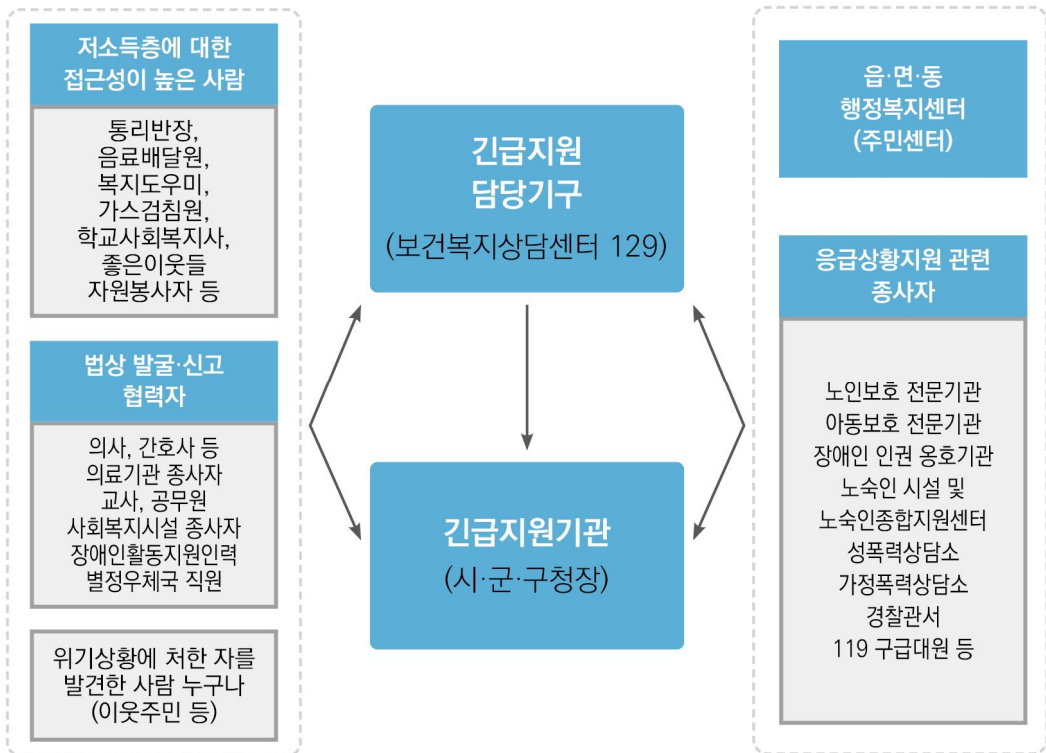
14) 「우정사업본부 직제」에 따른 우체국 직원 포함

다 활용자원 확보방법

(1) 지자체 차원

- 희망복지지원단 또는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용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용
- 적극적인 홍보
 - 공무수행차량에 스티커 부착, 유선방송(자막), 시정뉴스, 지역소식지, 전광판, 통화연결음 서비스 등 활용
 - 지방의사회, 약사회 등 각종 직능단체, 협회, 자원봉사조직, 후원회 등을 대상으로 홍보
 - 위기상황에 처한 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한 자에 대하여는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라 발굴체계도



② 긴급지원대상자의 선정

가 위기상황의 정의 (법 제2조)

위기상황은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 등이 곤란한 경우, 두 가지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주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 ①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 ② 주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③ 사망
- ④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⑤ 구금시설: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①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②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① 대상별 학대의 정의

●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

-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 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

● 장애인학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

-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

② 위기상황의 확인

- 노인보호전담기관·아동학대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 현장확인은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에 의한 가정 내 폭력일 경우 현장확인(「서식 1호」 작성)을 통해 지원 가능

- ① (가구구성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본인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② 가정폭력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 ③ 지원내용
-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계지원과 주거지원, 시설이용지원 등을 선택적 또는 복합적으로 지원 가능
 - * (예시) 가정폭력에 의해 남아(男兒)를 데리고 시설 입소한 사람이 퇴소 시까지 취업난 등으로 소득활동이 어렵고 퇴소 후에도 가정으로 복귀하기 어려울 때에는 생계지원과 주거지원을 동시 결정함으로써 복합지원 가능
- ④ 위기상황의 확인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 ※ 현장확인은 폭력이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화재 및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중복지원 하지 않도록 유의

대규모 자연재해 등 발생에 따른 특별조치 사항

-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상담소 설치 및 운영
 - (상담소의 역할)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문 배포 및 상담 ㉡긴급지원대상자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게 신고·의뢰 ㉢상담건수 및 특이사항 등 보고
 - (상담인력) 읍·면·동 담당자 또는 시·군·구 긴급복지 업무 경력자 2~3인 배치
 - ※ 시·군·구 긴급복지 업무 현직자는 지원 결정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며 시·도에서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역 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파견·지원
 - (상담소 설치구역) 이재민 대피소 등 피해가구 밀집장소에 설치하며 대상구역 및 설치 개소수 등은 현장 상황을 적의 판단하여 조치
 - (기타) 복지부-시·도-시·군·구-상담소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담건수, 지원결정건수, 지원결정금액 등 일일보고 실시
 - 피해지역 내 긴급지원 홍보 강화
 - 현수막, 자체 보도자료 배포,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
 - 필요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통장 등을 활용하여 피해가구 방문 상담 실시
 -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적극 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한 경우라도 개별가구의 피해상황 등 현장확인 결과 및 위기상황 등을 고려
 - 「재해구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서 지원받을 수 없고, 긴급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우선 긴급지원 후 적정성 심사 실시
 - * 소득·재산기준 없이 이재민에게 현물 또는 현금지원
 -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3항 타법 중복지원 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이자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2.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3.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4. 자금의 융자, 보증, 상환기한의 연기, 그 이자의 감면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금융지원
5.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 5의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 5의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6.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 난방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7.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의 피해에 대한 복구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지원
8.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9. 그 밖에 제14조제3항 본문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지원대상) 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구성원 중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 (또는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발생)를 한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단,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 다만,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이 발생했으나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화재피해 및 영업에 대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연장

- 근로가능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은 아님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대상) 다음 모두를 충족

- 가구원 중 주(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¹⁵⁾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일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1개월간 60시간 이상)

※ 확인되는 급여가 619,200원(최저임금 10,320원×60시간) 이상이면 1개월간 근로 인정

- 부소득자 실직으로 소득 상실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15) 실업급여는 퇴사일 포함 1년 6개월을 기준기간으로 보고, 근로기간 180일 되어야 지급 가능

*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 전 기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 확인해 180일 넘으면 실업급여 지원 가능
(예시) '23.1.1.~12.31. 월급 수령하고 '24.1.1.~12.31. 무급휴직했다면 '23.7.1.~'24.12.31. 기준기간 동안 근로기간이 180일 넘지 않을 때는 '23.1.1.~'24.12.31. 기준을 연장해 실업급여 산정하여 지급 가능

- (지원연장)

- 구직 및 근로 가능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연장결정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과 같이 구직활동을 할 것을 전제로 생계지원 하는 것은 아님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위기상황의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로 조례를 제정(또는 개정)·시행해야 함

*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①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③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④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⑤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⑥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지원은 지자체별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국비+지방비) 사용 한도 제한 없이 집행할 수 있으나 이 부문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①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이혼16)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이혼 소송 중으로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도 포함(소송이 장기화 될수록 생계곤란의 우려가 크므로 지원요청 제한기간인 12개월 요건 예외적용)
 - 미성년자녀가 있는 가정의 협의이혼인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 동안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요청할 경우 전반적 상황을 고려해 지원 가능
- 배우자의 소득 수준, 소득·재산·금융재산 선정기준 충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②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기출소자, 가석방자, 형 집행정지자 포함하며, 피고인구속(법정구속) 중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 허가된 사람 중에서 생계 곤란할 경우 법원 결정문 등 확인 후 지원 가능

16) 이혼 방법: 협의이혼(미성년자녀 있을 시 숙려기간 3개월, 그 외 숙려기간 1개월), 가사조정이혼(조정이혼), 가사이혼(재판상이혼. 6개월~1년간 소요되며, 변론기일부터 소송절차 시작)

- (지원대상)
 - 출소자 중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¹⁷⁾ 대상인 중증·희귀·중증 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 (긴급지원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 즉,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출소자의 65세 미만의 부모, 성년인 형제나 자녀 등은 가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
 - 구급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 (지원방법)
 - 출소 후 생계 뿐만 아니라 거주지 마련이 곤란한 경우 주거지원도 가능
 - 현장확인을 통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른 법률의 보장결정 전까지 긴급지원대상자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복지지원 가능
- ④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목적) 해당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은 노숙인 전반에 대한 지원이 아닌 초기노숙인의 유입을 차단하고 만성화를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군·구청장에 긴급 지원대상자로 추천한 경우(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 제출 필요)
 - ※ 노숙인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시·군·구청장이 노숙을 직접 인정할 수 있음
 - 노숙인이 된 기간이 6개월 미만 일 것
 - (지원방법)
 - 주거지원의 경우 임시거소 제공 등 현물지원 원칙
 - 요청한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에서 주거지원 등에 대한 임시거주지 마련 및 사후관리 협조
 - 시·군·구에 직접 요청하는 노숙인에게는 노숙인복지시설 및 노숙인종합지원센터로 상담 연계. 연계된 기관에서는 사정 후 긴급지원 필요시 공문으로 [서식 15호] 추천서를 관할 시·군·구로 제출

17) 참고: 부록 3. 만성고시질환 중 산정특례 대상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시행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책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뿐 아니라 명예사회복지 공무원, 좋은 이웃들 등 지자체 또는 민관협력을 통해 발굴된 일체의 대상자 중 관계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한 사람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이외에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원 후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사
 - ※ 상시적으로 발굴되는 위기가구에는 긴급지원 담당부서에서 발굴하는 가구도 포함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 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지원방법)
 - 관련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4호] 의뢰서 작성 후 공문으로 의뢰
 - ※ 담당자가 같거나 추천부서와 지원부서가 같은 경우 내부결재로 진행하며, 담당부서에서 현장조사 등으로 대상자의 상황을 확인하였다면 담당부서의 긴급지원의뢰서로 현장조사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 ⑦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지원대상)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 자살의도자¹⁸⁾
 - (추천기관)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18)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사람을 말함

- (지원방법)
 - 관련 부서(기관)에서는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추천하되, [서식 15호] 추천서 작성 후 공문 발송
 - ※ 신속지원을 위해 대리 현장확인자의 현장확인으로 같음하여 [서식 1호] 현장확인서 생략 가능
 - 추천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지원 결정하고, 위기상황에 따라 주지원 및 부가지원 결정
- ⑧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카)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 (타)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 (파)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를 적용받는 경우

위기사유별 요건 확인자료

* 선지원 시 위기사황 발생과 생계곤란 상황을 포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대리현장 확인자가 작성한 현장확인서를 필수 증빙으로 활용하고,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 징구

구분	요건	요건확인자료
주소득자의 사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또는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 부소득자인 경우, 가구원 내 1명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사실 반영된 주민등록등본 • 가출신고 접수증 • 수용증명서(정부24 발급 가능)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의료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단서 - 중간진료비영수증 - 입원확인서(단, 진단서 상 입원일 확인 시 생략) - 보험증권 유무
	(생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진단서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의 방임/유기/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 내 유일한 소득원인 배우자의 경제적 방임도 포함 - 방임 또는 유기에 대해 본인 주장하여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법령 해석 상 지원 - 노인학대/아동학대/장애인학대를 당해 보호 필요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유관기관에서 작성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 현장확인인 사건 발생한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가정폭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구성원에 의한 가정폭력·성폭력이 발생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가정폭력상담센터,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에서 작성한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 경찰·법원 등에서 발급한 관련 증빙서류(접수증, 사건 사고사실확인원, 명령서 등)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 현장확인인 폭력 발생한 가정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님에 유의
화재/자연재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화재 시) 화재증명원 • (자연재해 등) [서식 1호] 현장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매/공매/재개발에 의한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경매/공매판결문 상 퇴거일 도래 • 퇴거명령서
휴폐업/실질영업 곤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 확인, 휴폐업한지 12개월 이내 -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 - 부소득자의 경우,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전 소득이 자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폐업사실증명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이 발생한 때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 1년 이상 실질적 영업 지속 - 부소득자의 경우, 휴폐업 또는 사업장 화재 등 실질적 영업곤란 전 소득이 자원요청일 기준으로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서 등 - 아래 목록 중 택 1 • 화재인 경우, 화재증명원 • 실질적 영업곤란 시, [서식 1호] 현장확인서

구분	요건	요건확인자료
실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보험 가입여부 - 실직여부 - 실업한지 1개월경과 12개월 이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가능 여부 확인 (고용지원센터 등에서 확인) - 실직 전 3개월 이상, 매일 60시간 이상 근무 여부 (확인되는 급여가 최저임금×60시간 이상이면 인정)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서 • 「경력증명서 • 월급명세서 또는 급여통장 사본 • 국세청 소득신고자료(원천징수영수증, 일용근로사실 확인서 등) • [서식4호]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용역사무실 출근부 등 소득확인 자료
이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와 이혼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해당하여 소득 미미하거나 상실되어 생계곤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이혼판결문(정본) • 가사법원의 조정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혼 소송 중으로 인해 장기간 생계가 곤란한 경우 ※ 미성년 자녀 있는 가구의 협의이혼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이혼 조정기일 통지서 • 이혼 변론기일통지서
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이 확인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전(전류제한기 부설) 여부는 지자체 별도 확인
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정시설 출소자(만기, 가석방, 형 집행정지) - 구금기간 6개월 이상,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경우 - 가구구성원 중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거나 가족관계 단절 또는 근로능력 없는 가족으로만 구성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출소증명서 • 법원 결정문
노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상담 후 긴급복지지원 추천 ※ 시설 없는 지역은 현장확인서 통해 지원 가능 - 노숙기간 6개월 미만인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 목록 중 택 1 •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 [서식 1호] 현장확인서
복지사각 지대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혹은 지자체/민관협력으로 발굴되어 긴급지원이 필요한 생계곤란 가구 - 수시 발굴되는 위기가구 중 부서(기관)에서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 의뢰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14호]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통합사례 관리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곤란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14호]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자살 고위험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리하는 가구 중 생계곤란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범죄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피해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법원 등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 판결문 등 증빙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특례) 등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

(2) 생계유지 등의 곤란

- 현장확인 등을 통해 담당자가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지 판단
- “생계유지 등의 곤란”이라 함은 생계유지 곤란, 의료비 감당 곤란, 주거확보의 곤란 및 사회복지시설 이용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상태를 의미

(3)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따른 구분

- 지원요청일 당시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선지원 후조사 실시
- 다만, 위기상황 발생 시점에 긴급복지보다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담당공무원 등에게 연계하며, 다른 법률에 의한 보장결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긴급지원 가능

나 현장확인 (법 제8조)

(1) 현장확인시 점검사항¹⁹⁾

- (가) 위기상황에 처했는지 여부
 - 위기를 초래한 사유의 발생 여부
 - 생계유지 등의 곤란
- (나)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상담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게 연계하여 기존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다) 소득 및 재산 확인
 - 가구구성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을 대략적으로 파악
 - ※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님
 -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희귀난치성질환 등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기 조회되었던 소득·재산 정보를 참고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징구(법 제8조의2)

19) [서식 1호] 현장확인서 작성

- 긴급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함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서면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후에 제출받을 수 있음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현장확인²⁰⁾ 방법 및 절차

(가) 방법

①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현장확인)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
- 현장방문 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8조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통해 2인 1조 방문
- 의료지원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에는 긴급지원담당 공무원이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대리 현장확인자로서 의료기관의 협조²¹⁾를 받아 [서식 1호] 현장확인서와 증빙자료를 징구함으로써 현장확인 절차를 이행

② 긴박한 상황이라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요청 시 확인한 증빙자료 또는 유선으로 확인한 대략적인 정보, 관련인 진술 등을 토대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서식 1호] 현장확인서로 현장확인 절차를 같음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읍·면·동 공무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 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

20) 지원요청·신고에 따라 1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의료지원의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요청일부터 3일 이내(검사 등 부득이한 사유시에만 5일 이내)에 현장확인 실시

21)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와 입원 중인 의료기관의 소재지가 달라 직접 의료기관을 방문하기가 곤란한 경우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현장확인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을 징구

- ③ 시·군·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
- ④ (통·반장, 이웃 주민 등의 진술 청취 등)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진술을 근거로 판단하되 통·반장, 이웃 주민 등의 진술 청취

(나) 절차

- ①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제시[서식 1호]
- ② (상담을 통해 얻은 정보로 현장확인서 작성)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이 포괄적으로 판단한 현장확인서만으로도 지원결정 가능. 추가 증빙을 위한 참고자료는 즉시 제출 가능한 것이 아니면 사후조사 시까지 보완하고, 증빙자료 제출을 이유로 신속한 선지원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 * 현장확인서(서식 1호)에 있는 '유의사항' 안내
- ③ 보건복지상담센터로부터 연계받은 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지원 현황 정보를 확인하여 진행

(3) 지원결정 및 지급

-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²²⁾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상황이 긴급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전결로 지원결정 가능하며, 긴급지원금이 지급되기 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필요한 복지 지원을 연계하도록 노력

다 지원단위

(1) 기본원칙 : 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① 지원의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결정
 - (가구단위 지원) 생계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이용 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전기요금)
 - (개인단위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해산비, 장제비)

22)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확인 후 2일 이내 결정 및 지급

② 가구단위로 주지원, 부가지원 병행 가능

- 가구단위 또는 개인단위에 대하여 위기상황에 따라 주(主)지원을 결정하고, 주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기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부가(附加)지원 필요시 병행지원 가능

※ 이 경우 부가지원을 반드시 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해 지자체에서 지원의 필요시 병행지원 여부를 결정

- 주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시 생계·주거지원 불가

- 부가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③ 주지원 간 복합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주지원 결정 가능
(예시) 4인가구의 주소득자가 중한 질병으로 소득 상실하고 주거상황 또한 퇴거 위기인 경우, 주소득자를 대상으로 의료지원하고 남은 가구원 3인에 대해 생계지원 및 주거지원 가능(동절기인 경우 연료비 추가)

⇒ 의료지원에도 불구하고 퇴원 후에도 근로할 수 없어 소득 상실할 것이 예상된다면,

- 입원기간 14일 이하: 4인가구로 재책정하여 생계지원금 지급
- 입원기간 14일 초과: 퇴원일이 포함된 지원기간에는 3인가구 생계지원금을 유지하고 다음 지원일에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지원금 지급

(2) 가구의 범위

① 가구에 포함되는 사람²³⁾

● (원칙)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단, 비동거 중인 배우자 포함)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2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인정 등 가구분리를 통하여 수급자로 보호해주는 특례제도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도 가구구성원에 포함
- 외국인(법 제5조의2):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체류자²⁴⁾
 - 특별기여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예외)

- 직장 등의 사유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다른 가구구성원과 분리하여 주거 및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달리하여도 동일 가구원에 포함
- 교육, 양육 등의 사유로 부모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고 타인의 가정 또는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가구원에 포함
- 기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가족이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경우 동일 가구원에 포함
- 가구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원이 있을 경우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되, 해당 가구원을 제외하여 긴급생계지원 결정
- 화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거주지에서 퇴거하거나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부득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경우 원가족(위기상황이 발생한 가족)만 가구원으로 산정 가능

②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록되어 있더라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확인한 사람²⁵⁾
- 병역법상 병역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의무복무로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²⁶⁾

24) 인도적체류자(비자코드: G-1-6): 난민은 아니나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

25) 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인 부모 등과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26) 사회복지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구성원에 포함

-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형/구속 집행정지자 제외)
- 보장시설 입소자
-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기관 또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사람²⁷⁾ (조사대상자에는 포함)
- 가출·행방불명자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된 사람²⁸⁾
 - 시·군·구청장이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²⁹⁾
- 재외국민³⁰⁾
 - 재외국민은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 시 신고받아 주민등록을 재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거주자가 실제 생계가 곤란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가구원에 포함

(3) 가구원의 변동

- ①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 제외된 회차의 긴급지원금 전액 지급
- ② 가구원 출생 및 가구원 전입 시 지급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다음 회차에 소급지급
 - 전입신고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다음 회차에 소급지급
 - ※ 마지막 회차 지급 기간 중 추가되는 경우에는 미지급
- ③ 가구원 사망 시 지급기준
 - 사망한 날이 속하는 회차의 긴급지원금은 전액 지급
 - ※ 단, 단독가구의 경우 지급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 미지급
- ④ 교도소 및 구치소 수용
 - 교정시설 입소일이 속하는 회차까지 지원 후 중지

27) 의료기관, 요양병원 입원은 14일 초과 입원인 경우이며, 요양병원 등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28) 사후조사 내지 적정성 심사 과정에서 가출 등의 추이를 추가로 확인

29)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나 현장확인서 첨부

30)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03

긴급지원의 실시





03 긴급지원의 실시

1 생계지원 (법 시행령 제2조)

가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서 제9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나 지원내용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금전 지급
 - 지원결정 후 지체 없이³¹⁾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예외적으로 현물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렵거나, 직접 물품을 구매하기 곤란한 경우 등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물지원 가능
- 주(부)소득자가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남은 가구원에 대해 생계지원 가능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31)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결정시부터 만 1일(근무시간 기준 8시간) 이내 지원 완료
 - 지원대상자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산정기간에서 제외
 - 다만, 긴급한 상황인 경우 수급계좌 적정성 검증을 생략하고 지체 없이 지원을 완료하여 대상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주(부)소득자가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다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휴업급여, 보험금³²⁾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라 지원기준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하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마 지원기간 및 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
 - (3개월간 지원)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음)하고 1회차(1개월 분) 선지원 후 사후조사
 - (예외)
 - 생계지원 지원기간 중 법 제3조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는 생계급여로 연계, 법 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부적정 지원으로 결정된 건 등은 법 제15조에 따라 조치
 - (절차)
 - 1회차(1개월 분) 지원 → 최초 지원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조사 실시 → 사후조사 결과 및 변동사항 등 50긴급지원대상자 요건 충족 여부를 지급일 전까지 확인 → 2회차, 3회차 지급(거짓, 부적정 지원 등의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상정)
 - 금융조회결과가 2회차 또는 3회차 지급전 까지 회신되지 않은 경우 2회차, 3회차 우선 지급 후 사후조사 완료
 - * (예시) 1월 3일에 1회차 지원 후 2월 3일 지급시까지 금융조회결과 회신이 오지 않은 경우 2회차 우선 지급 후 사후조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한 연장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원

32)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비 수준의 보험금만 수령한 경우에는 생계지원 가능

② 의료지원 (법 시행령 제3조)

가 지원대상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① 만성적으로 앓고 있는 질병³³⁾(요양, 재활치료, 치과, 기타 척추병증, 기타 추간판장애, 무릎관절증 및 척추성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등³⁴⁾)은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 다만, 「의료법」 제17조(진단서등)를 통해 갑자기 악화되어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긴급한 진료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 가능
- ②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우선 암환자(소아·성인) 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에 의해 보건소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함
 - 다만, ㉠ 암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보건소에서 위 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 보건소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능한 경우 (보건소에 협조 공문 시행하여 보건소에서 익년도 예산 확보에 따른 소급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지원 가능
- ③ 긴급의료지원 이외에 다른 사업(암환자, 희귀난치성질환지원, 재난적의료비 등)에 선정된 경우 긴급지원 제외됨이 원칙이나, 통상 타 의료비 지원의 사후지급 특성을 감안해 퇴원 전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긴급지원 가능
- ④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음. 다만, 예외적으로 수술 또는 중환자실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 의료지원 가능
- ⑤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하여 의료지원 가능
- ⑥ 알코올 중독, 치매 등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자 포함

- 동일 상병 기 지원자 제외.

단, 동일 상병이라도 지원종료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지원 가능

※ 동일 상병의 기준 : 국가데이터처 질병분류 사인코드 상 3자리 코드(예: K85) 단, 환부의 위치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 각각의 지원 인정

- 상이한 상병일 경우, 기 의료지원 종료시점과 관계없이 다시 의료지원 가능

33) 「의료급여수급자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에 따른 만성고시질환을 포함한 만성질환*을 뜻함.

* 만성질환의 특징: 의학적으로도 명백히 분류되어 있지 않으나 ① 일단 발생하면 3개월 이상 오랜 기간의 경과 존재 ②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점점 악화로 진행 ③ 퇴행성이란 어휘가 의미하듯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연령증가와 비례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가 ④ 결핵, 백혈병 등 몇몇 질환군을 제외하면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알려진 것은 거의 없음(출처: 보건소 만성병 관리개발, 2004, 서울대학교 간호대학·보건복지부)

34) 참고: 부록 3. 만성고시질환

나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다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퇴원 전 요청(단, 입원당시 유선 연락, Fax 등으로 관할 시·군·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명백히 지원요청 의사를 밝힌 경우 예외적으로 퇴원 후 지원 가능)
 - 의료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진단서 등 서류와 현장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
 -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

○ 지원절차

- ① 의료지원 요청 → ② 현장확인 등으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3일 이내)한 후 지원결정 통보(의료지원 대상자 및 의료기관 등) → ③ 병원 입원 등 진료, 처방약물 조제 등 → ④ 의료기관 등이 의료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³⁵⁾ → ⑤ 시·군·구청장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시·군·구청장은 의료기관 등(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은 제외)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반드시 G코드(긴급복지 의료지원 대상자)입력 할 수 있도록 안내

⇒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참고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3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지원
 - 지원의 우선순위는 급여 중 일부본인부담금,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순서로 지원 ('본인부담상한제³⁶⁾' 적용이 삭제된 '21.1.1. 요청분부터)

35) 긴급의료지원 지급에 대한 소멸시효 안내

- 5년전 의료기관으로 긴급의료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를 받았으나, 병원에서 청구하지 않은 미지급 건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의료비 청구를 하는 경우
-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해 의료인이 병원에서 진료한 채권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정하고 있음에 따라 소멸시효(환자의 퇴원일로부터 기산)가 끝난 경우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음

36) 본인부담상한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업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당해연도에 환자 본인이 부담한 연간 의료비를 다음해 8월말경 최종합산해 보험료 수준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부상에 따른 수술,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 (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지원제외)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비급여 도수치료비·증식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식대, 비급여 입원료 (특실 및 1인실 비용*)
 - * 감염예방을 위해 1인실 사용이 불가피함이 진단서 상 명시된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 가능
 - 지원범위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기납부(중간정산)한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가 본래 진료과에서 긴급한 치료가 종료되어 진료과를 옮긴 경우에는 지원이 종료됨
 - * (예시) 중한 부상으로 정형외과로 입원한 자가 치료가 종료되어 재활과로 옮긴 경우 등
 - 지원요청 후 치료의 목적상 의사나 수술장비 부재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될 경우, 지원결정 받은 의료기관의 전원의뢰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검토하여 이송의 타당한 사유가 확인된다면 전원횟수와 상관없이 긴급의료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중 사보험 가입자의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보험사로부터 수령 또는 수령할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의료기관 등에 지급
 -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 예상됨에도 실제 지급될 보험금액을 알 수 없어 보험금액을 차감한 의료비를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추후 긴급지원대상자가 보험금을 수령 받은 이후, 이미 지원한 의료비 중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군·구에 반납 조치
 - 의료지원 요청 후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의료비 청구금액에서 수령 또는 수령할 사망보험금액을 차감한 잔여금액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 지급
- 지원금액이 1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지원하지 않음

마 지원기간 (횟수)

- (원칙) 1회 지원
- (추가연장)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연장 가능
 - ※ 다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추가연장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300만원 이내)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므로 300만원 초과 시 분할 지급
 - 퇴원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원이 임박하여 연장 요청을 하는 경우 퇴원 후 심의 가능

바 보장기관(시·군·구)의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및 환불금 처리의 개요

-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 등) 및 「의료급여법」 제11조의3(급여대상 여부의 확인 등)
- (목적) 긴급지원대상자를 대신해 권한위임* 받아 의료(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본인부담금 징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함으로써 긴급지원대상자의 권익보호 및 국고의 재정누수 방지
 - * (첨부) 위임장,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 (적용대상) 긴급의료지원금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총 지원 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 대상자
- (심사요청) 시·군·구청장이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의 총 지원 금액이 150만원 이상인 의료지원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비급여진료비 확인(심사) 요청
 - ※ 행복e음 > 긴급복지 > 지원대상자 지원관리>비급여진료비 심사대상 관리-[심사신청서작성] 후 [심사요청및 전자결재] 처리
- (심사결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조회
 - ※ 행복e음>긴급복지>지원대상자 지원관리>비급여진료비 심사대상관리 ‘조회’
- (이의신청) 비급여진료비 심사요청 결과에 이의있는 시·군·구청장, 긴급의료지원대상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으로 [별지 6]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서 작성·제출

-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할 시 심판청구(행정심판) 가능하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
- (환불금 처리) 당해연도 환불금은 여입처리하고, 과년도 환불금은 세외수입으로 처리
- (심사결과 보고) 심사평가원은 반기별로 진료비확인요청(개인 및 시·군·구)에 따른 심사 결과 분석결과(부당청구, 환불액 등 현황)를 복지부에 보고
- (심사요청 진행절차)



사 타 의료지원 사업과의 관계

- 각 의료지원 사업의 지원범위, 지원기준 등이 상이하므로 각 사업 목적에 따라 긴급복지 의료지원보다는 다른 사업의 지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안내
- ※ (참고) 심사평가원에서는 긴급의료지원과의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통합급여정보시스템 상 긴급의료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후 재난적의료비를 지원함

긴급복지지원사업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비교

구분	긴급복지 의료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근거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긴급복지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한 질병(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질환 														
지원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일상병에 1회 지원 * 위기상황 미해소시 1회 추가연장 가능 * 동일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지원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 5천만원 한도 내에서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에 대해 지원 														
소득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923,179원, 4인기준 4,871,054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개별심사 후 지원 결정 														
재산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 대도시(241~310백만원), 중소도시(152~194백만원), 농어촌(130~165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해당금액(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이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가구</th> <th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1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2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3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4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5인</th> <th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6인</th> </tr> </thead> <tbody> <tr> <td style="background-color: #0070C0; color: white;">금액(천원)</td> <td>8,564</td> <td>10,199</td> <td>11,359</td> <td>12,494</td> <td>13,556</td> <td>14,555</td> </tr> </tbody> </table>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천원)	8,564	10,199	11,359	12,494	13,556	14,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산 : 과표 7억원 이하 가구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천원)	8,564	10,199	11,359	12,494	13,556	14,555										
지원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3백만원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비급여,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산한 금액의 50%~80%* 지원(지원제외항목 제외) * 소득구간별 지원비율: 기초수급자·차상위 : 80%, ▲ 중위소득 50% 이하 : 70%, ▲ 중위소득 50~100% 이하 : 60%, ▲ 중위소득 100~200% 이하 : 50% 														
지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항목 상급 병실료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비급여, 선별급여,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본인 부담액 ※ 사회적 입원(요양병원), 미용·성형, 특실료, 효과가 검증되지 않는 고가치료법 등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제외 														
지원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 (요청기한) 퇴원 전 긴급의료지원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신청기한) 퇴원 후 180일 이내가 원칙이나 입원 중인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퇴원일 3일 전까지 신청 														

※ 재난적 의료비 지원 관련 상세 내용은 '26년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참조

타 의료비 지원사업 예시('25. 12월 기준)

※ 아래 지원사업 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의료비 지원제도가 있을 수 있음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대상
1	의료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에게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 제공(기부담금과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및 타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유공자, 이주민 등)
2	재난적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질환 의료비 합산하여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액 50~80%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과표 7억원 이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초과 200% 이하인 가구는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개별심사 후 지원 결정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성인: 최대3백만원(본인부담) - 소아: 최대3천만원(백혈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인암(건강보험료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소아암(중위소득 120% 이하)
4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준 중위소득 일정수준 이하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차상위 등록장애인
6	장애입양아동 의료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 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7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한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위소득 140% 이하
8	노인실명 예방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 안질환 적기 치료 및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한 노인 개인수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9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퇴행성 관절염 및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등 실시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1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출생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 이상아
11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신질환으로 응급상황 시 즉시 입원이 필요하거나 꾸준한 진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치료비를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5가지 지원유형(응급입원, 행정입원, 발병초기, 외래치료지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유형 중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대상자

3 주거지원 (법 시행령 제4조)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방법 및 절차

- 원칙: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³⁷⁾를 제공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한 지원의 경우,
 -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1회에 한하여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 금전지원은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이 경우 긴급주거지원금 지급 후 추후 주거상태 확인
 - ※ 긴급주거지원대상 가구구성원의 배우자 또는 1촌의 직계혈족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하지 않음

다 지원기준

-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지 역 \ 가구원 수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별시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 상기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37) 개인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처(기존의 거주지와 다른 장소)로 인정하는 각종 주거형태를 의미

라 지원기간

-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 1개월 ①
 - 지원연장: 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 최초 3개월간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 가구구성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 단위로 지급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연장
 -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9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원

4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법 시행령 제5조)

가 지원대상자

-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개인운영신고시설 포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지원방법 및 절차

- (원칙)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
- (절차) ① 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지원에 소요된 비용을 [서식 10호]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해당 비용 지급

※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 가능

다 지원기준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개월 내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사회복지시설에서 지원액을 기타 접수입으로 처리하도록 할 것

라 지원기간

-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선지원): 1개월 ①
 - 지원연장: 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 (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 최초 3개월간 지원결정 후 지원금은 입소자 수의 지원기준에 따라 매월단위로 지급 (3개월분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은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 지원)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지원

5 교육지원 (법 시행령 제5조2)

가 지원대상자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 (지원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 교육급여수급자, 고교학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족 고교 교육비 지원, 지자체 특수시책사업 등
 - ※ 방과후자유수강권, 급식비지원, 한부모가족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는 중복으로 보지 않음

나 방법 및 절차

- (원칙) 금전 지급
 - 지원결정 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
 -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예외)
 - (현물지원)
 -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학비를 납부하거나 학용품, 부교재비 등을 현물로 지급
 - (금전 및 현물지원)
 - 학부모의 학생보호가 소홀한 경우 학교로 납부해야 하는 교재비,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수업료, 입학금은 학교로 고지금액을 직접 납부
 - * (예시) 방임·유기되거나 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 학비를 미납하고 있는 경우, 자녀와 별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학 중인 초·중·고등학교에 지급
 - 학교로 고지금액 직접 납부 후 교육지원금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 학생 또는 상가 학부모 외의 보호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 지급

다 지원기준

(단위: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 (해당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은 경우도 전액 지원

라 지원기간

- (원칙)
 -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 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분기 구분)
 -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의 2월 말일까지
- (추가연장)
 - 1회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연장 가능
 - 추가연장 횟수
 - ① 생계지원, 시설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1회
 - ②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최대 3회
 - 주거지원의 경우, 교육지원 횟수는 주거지원 기간과 교육 분기를 일치시킬 것

6 그 밖의 지원 (법 시행령 제6조)

가 지원개요

-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 긴급복지 주지원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6-1~4 공통사항

- 현금지급 원칙
 - ▶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계좌로 입금하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이 곤란한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가능
 - * p.66 수급계좌 예외사항 참고
- 현물지원 예외적 인정
 - ▶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물지원 가능
- 시·군·구청장의 직권 처리
 -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의 요청인(또는 잔여가족)가 ① 의식불명인 경우, ②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③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④ 그 밖에 ①~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로 요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이 직권 처리 후 지급 가능
-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1회 지원

6-1 연료비

가 지원내용

- 연료비는 동절기(10~3월)에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 (예시)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의 지원기간이 9월 2일부터 10월 1일인 경우, 하루라도 동절기에 속하므로 연료비 지원 가능

나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
 -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지원 제외

다 지원기준: 월 15만 원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 등 계좌로 입금(월별 정액급)하는 것이 원칙
- 주지원이 종료되면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
- 주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 종료
- 현물제공시 ① 연료를 제공한 자는 해당 비용을 [서식 10호]를 작성해 시·군·구청장에게 청구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비용을 연료를 제공한 자에게 지급
- 시·군·구청장에 의한 지원
 - 원칙: 1개월 ①
 - 지원연장: 2개월 범위 ②
 - 지원의 실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 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개월(① + ②) 지원*을 우선 결정 가능
 - * 최초 3개월간 지원 결정 후 지원금은 매월 단위로 지급(3개월분 일시 지급 아님)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의한 추가연장)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추가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쳐 3개월 범위에서 추가연장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연장 또는 추가연장을 위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안전에 연료비도 포함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철저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 바우처와 긴급복지 간 중복지원 확인

- (요청단계)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을 받는 가구 중 긴급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현장방문 전 에너지바우처 책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미보장상태인 경우 긴급연료비 지원결정 가능
 - ※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 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
- (결정단계) 지원결정 전 전산시스템의 원스크린 확인 → 보장 목록에서 에너지바우처 없을 경우 부가지원인 긴급 연료비 지원 결정

6-2 해산비

가 지원내용

- 조산(助産)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나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출산예정도 포함)한 경우

*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다 지원기준

- 1인당 70만 원 현금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 원 지급)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①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는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산비를 요청인에게 지급
 - 출생증명서는 출생신고로 대체 가능
 - 출산예정자는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요청 가능(진단서 또는 소견서, 산모수첩 등을 통해 확인)
- 사산의 경우 의사·한 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사산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웃주민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요청

마 중복지원 제한

- 긴급복지 해산비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불가

가 지원내용

-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³⁸⁾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직접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에게 지원

나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 사망신고서는 사망 신고로 같음
 - * 긴급복지 주지원: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긴급지원 요청 후 선지원 결정 전에 가구원 중 사망자가 있어도 장제비 지원 가능
 - ※ (예시) 긴급지원 요청일: 1.1. / 사망일: 1.2. / 선지원 결정일: 1.3.

다 지원기준: 1인당 80만 원 지급³⁹⁾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단독가구의 사망⁴⁰⁾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자에게 지급 가능
- ① 긴급장제비 요청인은 [서식 7호] 지원 요청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장제비를 요청인에게 지급

38) 주소득자(主所得者)의 사망으로 인한 위기상황 발생시에는 가구원이 ① 미성년인 자녀, ② 65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④ 환자 등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가구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상황으로 보아 장제를 행하기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시·군·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기사망한 주소득자(主所得者)에 대한 장제비 지원도 가능

3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40) 사망자가 단독가구주이고 부양의무자도 없는 경우,

- ① 시·군·구청장이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으로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 이를 장제비로 지급
- ② 다만, 사망자가 유류한 유가증권 등 유류물품의 매각대금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음
- ③ 유류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이 장제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경우에는 재산상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 민법의 관련규정에 준용하여 처리

6-4 전기요금

가 지원내용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주거지원을 받는 가구의 전기요금(재공급 수수료 포함)

나 지원대상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생계·주거지원 대상가구
 - ※ 전기요금지원 제외대상
 - 비주택용, 공업용, 소매상용도의 전기
 - 1가구 최대 50만 원 이상 연체자(다만, 50만 원 이상 연체자가 전기요금 일부 납부하고 50만 원 미만의 고지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가능)
 - 주택 내 단일 전류기가 설치된 가구에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은 전차인이 등본상 동거인으로 생활 중일 경우, 전차인이 긴급지원대상자라도 지원 제외(본 계약자는 임차인)

다 지원기준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한국전력공사 아름다운재단 등 다른 기관(단체)에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요금을 차감한 나머지 요금에 대하여 지원

라 지원 방법 및 절차

- 전기요금은 시·군·구청장이 직접 고지서를 발급한 기관에 지급
 - ※ 전기요금 고지서 상 계약자명과 긴급지원대상자가 불일치 하더라도 등본상 주소 일치 시 지원 가능
- ① 긴급지원대상자는 [서식 7호] 지원 요청서(전기요금 체납고지서 첨부)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②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전기요금을 고지서 발급기관에 지급

⑦ 관련 민간 기관·단체 연계 지원 (법 제9조)

가 관련 민간기관·단체

(1) 지방차원

- 로타리 클럽, 각종 직능단체, 복지후원회 조직, 개인 후원자, 병·의원 등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하여 지역의 복지자원 확보
-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름다운 재단, 각종 복지재단 등 연계할 기관, 단체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 광역(시·도)은 기초(시·군·구)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2) 중앙차원

- 연계할 기관, 단체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나 지원유형

(1) 상담·정보제공 등은 필요시 수시로 지원

(2) 정부의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지속되어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 연계

다 연계방법 및 절차

(1) 상담·정보제공 등

-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상담 과정 중 정보제공

(2) 정부지원 후 연계하는 경우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 민간기관·단체에 의뢰 → ② 민간기관·단체의 심의·결정
→ ③ 민간기관·단체는 시·군·구청장에게 결정 통지 → ④ 시·군·구청장은 당해 결정내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통지·연계

8 긴급지원수급계좌 (법 제9조2, 제18조)

가 수급계좌 원칙

- 긴급지원금은 반드시 대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존에 복지제도 급여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확인 후 해당 계좌로 지급

나 수급계좌 예외

- 대상자 명의의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 계좌 개설이 곤란한 아래 긴급지원대상자의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여 지급함

- ①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 가능
 -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가 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경우
 - 압류 등 거래제한으로 긴급지원금 입금 시 긴급지원대상자가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

※ 법정후견인이 지정되기 전까지 형제자매, 친척, 이·통장, 복지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긴급지원대상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서식 6호] 긴급지원금관리자 지정동의서 징구 후 현금지급 가능 → 이 경우 긴급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 필요

- ② 긴급지원대상자로서 계좌 개설이 불가능한 사람(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신고를 받은 자 중 계좌 개설이 되지 않는 사람)
 -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특정후견 신고를 받은 자의 민법상 후견인* 명의 계좌로 입금([서식 5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징구)

*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 방계혈족, 법원에 의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람

- ③ 법령상 규정에 따라 제3자 또는 기관(학교·의료기관·전기요금 고지서 발행기관)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 전기요금

㉔ 대상자 명의 확인방법

- [서식 5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의 첨부서류로써 통장 사본 징구 시 원본인 통장 계좌번호* 확인 필수
 - * 휴면, 압류 등 계좌상태 확인 후 지급
- 휴면, 압류 등으로 입금 불가능한 경우
 - 가구구성원 모두 압류 등 거래제한되어 계좌 사용이 곤란한 경우, 압류방지 전용계좌 개설 발급방법을 안내
 - 다만, 계좌상태의 확인 불가로 지출처리했으나 지급되지 않은 경우, 반납처리 후 [서식 5호] 계좌정보 재징구하여 전산시스템 상 계좌정보 정정·지급

㉕ 수급계좌 수: 1인 1계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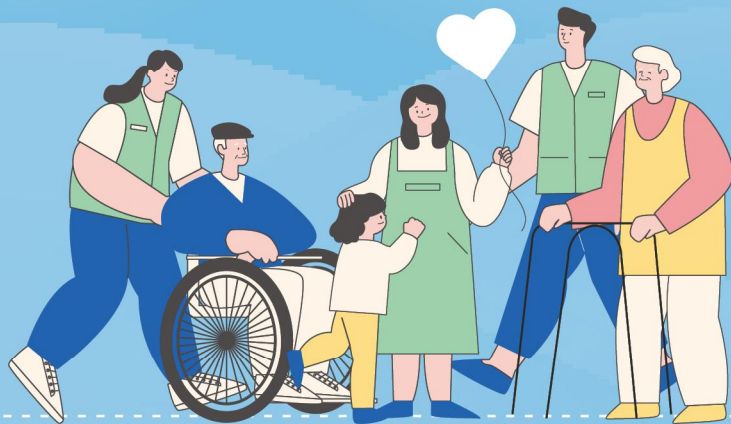
-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그 가구구성원

㉖ 긴급지원수급계좌

- (정의)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금융권에서 개설하는 본인 명의의 압류방지 전용 계좌로써 긴급지원금을 포함한 복지급여만 입금 가능한 출금전용 계좌(복지급여 외 입금 불가)
- (방법)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를 발급·전달하여 시중 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에서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
 - * 행복e음(긴급복지)지원대상자 선정관리(현장조사 내역등록-화면하단 [대상자통보서 출력])
- (처리) 긴급지원대상자가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개설했다면 [서식 5호] 긴급지원수급 계좌 입금 신청서와 첨부서류인 통장계좌번호 사본을 징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계좌번호 사본 이미지를 첨부·등록
 - ※ 압류방지 전용계좌를 일반계좌로 등록할 경우 지급오류 발생하므로 반드시 등록 전에 확인
- (유의사항)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미리 압류방지 전용계좌 발급 방법을 안내해 계좌압류 등의 상황에 놓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04

사후조사



04 사후조사

1 개요 (법 제13조)

가 사후조사의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 보호 또는 지원으로 연계 보호하기 위함

나 사후조사의 내용

-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 재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조사

소득·재산 기준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원/월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719,399원씩 증가(7인 가구 7,136,363원)						
② 재산기준 :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단위: 천원)						
지 역 ⁴¹⁾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기준금액	241,000	152,000	130,000			
③ 금융재산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564	10,199	11,359	12,494	13,556	14,555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천원 추가						

41) 대도시 :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 중소도시 :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 농어촌 : 도의 “군”

㉔ 사후조사 시기

- 긴급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내에 1회 조사 실시
 - 단, 금융재산자료의 경우 1개월 내 회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지원 후 연장 필요시 우선 지원연장 후 금융재산자료 조회 즉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
 - 가구원 변동(전입·사망 등) 등의 사유로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사후조사를 추가 실시

②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가 전산자료 조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 복지대상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수시 제공하는 전산시스템

㉠ 주의사항

- 자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 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 공적자료 변동으로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확인 후 보장중지 또는 급여변동 등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적용
 - * 반드시 증빙자료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나 금융재산 조회

-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고시로 정한 「금융재산 기준」의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단계에서 확인 후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원칙
 -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적용에도 지원기준 초과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중지 및 법 제15조에 따른 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등을 추진
- [서식 3호]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한 사람에 한해 조회 가능하며, 가구원이 추가된 경우 반드시 현장확인([서식 1호] 작성)을 통해 추가된 가구원에 대한 [서식 3호]를 징구해 금융재산자료 요청·사후조사를 실시

다 조사자료의 추가 제출요구

- 전산시스템 상 조회된 공적 및 금융재산 자료가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초과한 경우
 - 원칙상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가 수정돼야 하며 적정성 심사를 위해 자료수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반드시 징구해야 함
 - ※ 다만 고용주가 발급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취득·상실 통지서, 퇴직증명서 등 고용주나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일용근로사실 확인서⁴²⁾ 제출 시 제한적으로 인정

- 추가 요구 자료에도 불구하고 선정 기준 초과로 확인된 건은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심사를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원 중단
- 사후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요구한 입증자료는 ①[서식 11호] 사후조사 보고서 작성 후 내부결재하거나 ②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상 사후조사 보고서에 첨부·보관
- (가구원 확인)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행방불명 신고 접수증, 출생신고서 등
- (소득, 취·퇴직 확인)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서식 2호] 또는 [서식 2-1호]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출근부 등
-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⁴³⁾,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사본 또는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보험가입증명서, 보험해약확인서, 법원 판결문, 주식잔고증명서(또는 주식잔존가액증명서) 등
- (기타)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월세지출(임대차 계약서), 경력증명서, 출소증명서 등

라 사후조사 수행주체

- 시·군·구청장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시·군·구 소속 긴급지원담당 공무원
- 실태조사를 위한 현장방문 시 조사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서식 1호] 현장확인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마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3조제7항 및 제19조)
 - 사후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42)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일용근로사실확인서(국세청 서식) 출력하여 활용

43) 법 제8조의2에 따라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사후조사 단계에서 징구 가능
 ※ 법 시행령 1조의3제1항: 의식불명인 경우,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 결정할 능력 미약한 경우,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3 소득조사

가 개 관

(1) 소득의 의미

- 긴급지원대상자의 사후조사 시 “소득”은 소득에서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 불가피한 지출을 제외한 금액⁴⁴⁾을 의미함

(2) 소득산정 기준 시점: 긴급지원 요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

(3)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가) 근로소득

① 정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되, 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서목에 따른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산정에서 제외

② 유형

- (상시근로소득)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다음과 같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은 사람
 - 건설공사 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사람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않고 정기적으로 근로 대가를 받는 사람)
-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 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공공일자리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44) 가구특성별 지출을 차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액 개념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

③ 조사방법

㉓ (상시근로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 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에서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 필요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해당 자료의 제출 요구 가능
 - 근로복지공단 자료(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4편 사후조사 -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 다. 조사자료의 추가 제출요구'에 따라 처리

㉔ (일용근로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⁴⁵⁾조회 결과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제4편 사후조사 - 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 - 다. 조사자료의 추가 제출요구'에 따라 처리

㉕ (자활근로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매일 반영
 -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시·군·구에서 매일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임금지급금을 반영

㉖ (공공일자리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하는 자 중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⁴⁶⁾의 임금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으로 조회되어 반영
 - ※ 건강보험(직장가입자)에 가입된 공공일자리 참여자의 임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로 조회되어 상시근로소득에 반영됨

45)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46)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9조제1호(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

(나) 사업소득

① 농업소득

㉠ 정의

- 경종업(47), 과수·원예업, 양봉업, 종묘업(48),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49)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공적자료(농지원부) 또는 신고를 통해 농지 소유여부, 면적, 재배작물을 파악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해 「농산물 표준소득정보에 의한 작물별 단가」가 조회되는 경우, 경작면적에 작물별 단가를 곱하여 농업소득 산정
 ※ 농산물 소득정보: 농촌진흥청 농사로 홈페이지(www.nongsaro.go.kr)에서 「농업경영」- (농산물소득정보) 참조

$$\text{농업소득} = \text{경작면적} \times \text{작물별 단가}$$

- * 경작면적: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
- * 재배작물 확인: 농지원부 또는 신고
- * 재배작물별 단가(= 단위 면적당 작물별 소득- 필요경비): 농산물 표준소득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농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축산업소득은 가축 종류, 사육두수 등 신고자료를 통해 산정

② 임업소득

㉠ 정의

-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임목재산자료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임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를 유도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업협동조합, 임산물종합유통센터, 임산물직매장, 목재종합 집하장 등 해당지역 임산물 유통기관의 판매기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산정

47)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가꾸는 농업
 48) 식물의 씨앗이나 모종, 묘목 따위를 생산·판매하는 업
 49) 종축(번식용 가축)을 사육하고, 생산·판매하는 업

③ 어업소득

㉓ 정의

- 어업(양식업 포함)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어가가 어업경영의 결과로 얻은 총수입에서 동 수입을 획득하는데 소요된 소모적 비용을 차감한 금액

㉔ 조사방법

-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어업권 및 선박 보유여부를 제공하므로, 이를 통해 어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수급(권)자에게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을 통해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산정

④ 기타 사업소득

㉓ 정의: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㉔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하도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 후 실제소득 반영

(다) 재산소득

① 임대소득

㉓ 정의: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㉔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파악

② 이자소득

㉞ 정의: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㉟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③ 연금소득

㉞ 정의

-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
-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의 연금보험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

㉟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 조회결과 적용
 - 연 1회, 연 2회 수령하는 상품의 경우 월할하여 소득으로 적용
 -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급여는 연금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함에 유의

④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㉞ 정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지를 담보로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㉟ 조사방법

-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등 가입여부 확인하여 적용
 - 매월 수령하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반영하고, 지급받은 연금 누적액은 부채로 반영

(라) 기타소득⁵⁰⁾

① 공적이전소득 정의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 일시적으로 받는 금품은 소득에서 제외하고, 금융재산(기타 일시금)으로 산정

50)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상의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양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추정소득은 부과하지 않음

③ 무료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②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복지급여 연계 자료

-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주거급여법」에 따른 주거급여
-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아동양육비 및 「동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입양특례법」에 의한 양육보조금(입양아동양육수당, 장애아동입양양육수당)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 「아동수당법」에 따른 아동수당, 부모급여

●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애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및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보상금,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6·25자녀 수당 등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보상금)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진폐위로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연금 및 수당: 경기력향상연구연금, 대한민국체육 유공자 연금 및 수당 등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위로지원금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각종급여⁵¹⁾ 및 제11조에 따른 보상금⁵²⁾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의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 급여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의료지원금
- 「석면피해 구제법」 제10조에 따른 석면피해자 요양생활수당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1ha미만 소유 또는 임차한 자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조 및 제16조에 따라 받은 경영이양 소득보조금, 친환경 농업소득보조금, 조건불리지역소득보조금, 발농업직접지불 보조금
- 조사과정에서 추가 확인되는 다음 급여
 -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수당, 구직촉진수당, 육아휴직급여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지원금(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 (지자체 지원) 이·통장 등 직책수당, 출산·고령화 관련 수당, 교통수당, 보훈대상자 추가지원, 복지대상자 추가지원 등 지자체에서 정기지급하는 보조금
 - ‘희귀 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대여료, 기침유발기 대여료 및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③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4) 소득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품(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① 퇴직금·현상금·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금융재산(기타 일시금)으로 산정하여 처리
- ②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학자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동보육료

51) 간호수당, 부양가족수당, 중상이부가수당 등

52) 국가보훈처에서 고시하는 보훈보상금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양육수당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육비
-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및 같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부모급여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 아동양육비 및 같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추가아동양육비
-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수당
- 중·고·대학생 등에 대한 장학금(생계지원형 금품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유자녀장학금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농어업인의 영유아보육비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③ 아래의 실비 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 산정에서 제외

- 자활근로사업의 참여로 인한 급여 중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노동부) II유형 참여로 얻는 취업활동비용
 - *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참여장려수당
- 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최대 11.6만원/월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 최대 20만원/월(또는 자치단체 플러스사업⁵³)으로 인한 우대 지원액)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훈련장려금 등): 최대 31.6만원/월(또는 자치단체 플러스사업으로 인한 우대 지원액)
- K-Digital Training(고용노동부) 참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 지원적 성격의 금액 (훈련장려금 등): 최대 31.6만원/월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53)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플러스사업):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한 유형. 국비 매칭사업으로, 시·군·구 경제·일자리 부서에서 명단 관리·집행하므로 참여자 여부를 확인 후 공제

(5) 소득에서 차감되는 지출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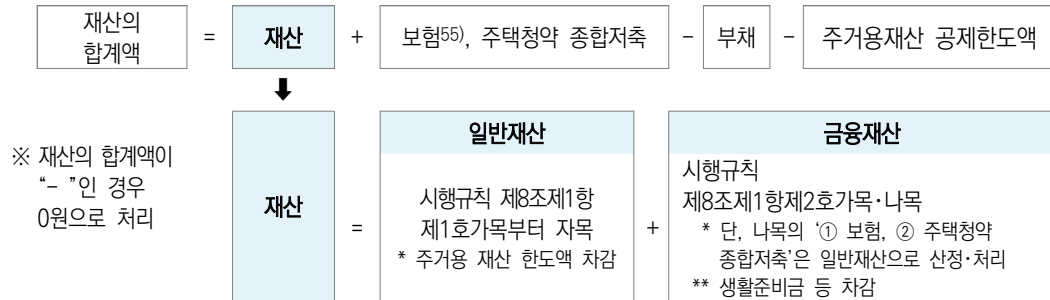
- 요청 당시의 소득에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차감
 - 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하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진료비 영수증 첨부)로써 평균 1개월의 의료비, 약제비, 간병비
 - ② 자신의 소득에서 지출하고 있는 대학생의 등록금(입학금·수업료), 기성회비
 - ※ 당해연도 납부한 입학금·수업료의 월평균 지출액
 - ③ 월세(또는 보증부 월세)로 주거를 임차한 경우 매월 지출되는 임차료
 - ※ 임차료 차감한도액: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주거지원금
 - * (예시) 서울에 거주하는 1인 월세가 45만원일 경우, 398,900원까지 소득에서 차감
 - ④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료
 - 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또는 금융부채로 인하여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비용⁵⁴⁾
- 금융재산이나 소득 중 유리한 쪽에서 한 번 차감하며, 소득에서 차감한 지출은 금융재산에서 차감 불가

54)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사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제외

4 재산조사

가 개 관

(1) 재산의 의미 및 산정방식



(2) 재산가액 산정기준

- 사후 조사일을 기준으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
-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적자료에 의한 가액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률 사용)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보정계수(3.5)	
가축·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일반 재산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 상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 또는 추가부담금을 가감한 금액(분양가액)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금융재산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55)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입목재산/어업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3) 재산의 종류 및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가) 일반재산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구성원 명의⁵⁶⁾의 다음 재산을 말함

- ① 「지방세법」 제105조제1호부터 제3호에 의한 토지⁵⁷⁾, 건축물⁵⁸⁾ 및 주택
 - 단, 중증재산, 중증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하되 증빙자료⁵⁹⁾ 확인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첨부*

* 행복e음>긴급복지>사후조사 내역등록-[제출서류] 등록

56) 가출, 행방불명, 실종,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이를 재산 가액에 산정하지 않음 → 이 경우 신청이후 재산상황에 대한 소명을 받되 생계가 곤란한지에 대한 확인 필요

57) 논·밭·임야 등

58) 건물, 시설물 등

59) 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이나 종친회 고유번호증 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친회 간부들이 서명날인한 중증재산 확인서, 해당 토지가 있는 지역의 이·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통한 협조 요청), 그 밖에 공동재산임이 확인가능한 객관적 자료

- ②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③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④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⑤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및 「지방세법」에 따른 입목(제6조제11호)
 -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⑥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제14호부터 17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⑦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⑧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 ⑨ 「수산업법」 및 「내수면 어업법」에 의한 어업권,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권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제13호의2호)

(나) 금융재산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 명의의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

(4) 부채

(가) (정의)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으로 차용된 금액 중 미상환액

*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금융회사' 등의 범위에 등록된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포함

(나) (원칙)

- 공적자료를 통해 조회된 부채는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대로 적용
 - 공적자료 외 부채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거나 용도를 확인하여 사용처가 명백히 입증된 경우 전액 공제
- 개인 간 부채(사채)는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 또는 법원의 화해·조정 조서로 확인된 경우에 대해 인정
 - 다만, 공정증서와 매월 이자지급통장 사본(동시충족) 등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 가족(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 간 부채는 법원을 통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다) (부채의 종류) 임차인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⁶⁰⁾

(라) 부채 인정 시 유의사항

- 금융기관(외)의 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으로 주택매입, 전세자금, 생계유지를 위한 사업자금이나 의료비, 학비 등에 사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차용한 금액 중 미상환액을 부채로 인정
 - 부채를 얻어 타인에게 다시 빌려주는 등 생계유지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재산가액을 줄이기 위해 고의적으로 얻은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 또는 점포 등을 타인에게 임대해 발생한 임대보증금 산정방식⁶¹⁾
 - 임대보증금의 전부나 일부를 주택구입 자금 부채상환 등으로 이미 지출한 것으로 입증되는 경우 남은 잔액은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하고, 지출한 것으로 입증된 금액은 부채로 처리

예시 1 8,000만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000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000만원 중 2,800만원을 주택구입 자금 부채로 상환하고, 금융기관에 200만원을 예치한 경우

- 재산의 합계액: 5,400만원
 - 일반재산: 11,000만원(주택 8,000만원, 임대보증금 3,000만원)
 - 금융재산⁶²⁾: 200만원
 - 부채: 5,800만원(주거부채 2,800만원, 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000만원)

① 임대보증금 전액을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부채 처리

예시 2 8천만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경우

- 재산의 합계액: 11,000만원
 - 일반재산: 11,000만원(주택 8,000만원, 임대보증금 3,000만원)
 - 금융재산: 3,000만원
 - 부채: 3,000만원(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000만원)

60) 금융기관 외 대출금 등

- ① 공공기관 대출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자치단체, 국가보훈처, 공적연구기관, 근로복지공단, 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 ②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지방행정공제회, 소방공제회, 철도공제회 등
-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개인회생프로그램이 적용되면 원금의 30%가 탕감되고, 연체이자도 전액 탕감
- ④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대출금
- ⑤ 개인 간 부채(사채) : 법원 판결문(지급명령, 지급결정 포함)으로 확인된 사채, 법원의 화해·조정조서로 확인된 사채

6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금융재산 공제로 처리하지 않음

62) 금융재산 조회결과로 회신된 금액(임대보증금이 금융재산으로 조회된 경우에는 금융재산으로 적용)

② 임대보증금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산정함과 동시에 임대보증금 상환액으로 처리

- 예시 3** 8천만원 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3천만원에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3천만원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 재산의 합계액: 8,000만원
 - 일반재산: 11,000만원(주택 8,000만원, 임대보증금 3,000만원)
 - 금융재산: 없음(금융기관 통보금액 없음)
 - ※ 다만, 현금, 사인간에 빌려준 금액 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금융재산 적용
 - 부채: 3,000만원(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000만원)

③ 임대보증금 전액을 잔금으로 상환한 경우 부채 처리

- 예시 4** 8천만원 주택 구입시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받아 잔금으로 모두 상환하고, 금융기관에 예금하지 않은 경우
- 재산의 합계액: 5,000만원
 - 일반재산: 11,000만원(주택 8,000만원, 임대보증금 3,000만원)
 - 부채: 6,000만원(주거부채 3,000만원, 세입자 임대보증금 상환액 3,000만원)

(마) 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연대보증인으로 표기 된 경우(긴급지원대상자가 주채무자인 경우에만 인정)
- 저당권·질권이 설정된 경우의 담보 설정액(실제 대출금을 부채로 인정)
- 한도 대출(일명 '마이너스 대출(통장)')
- 카드론(신용카드회사에서 제공하는 단기간의 신용대출) 및 단기간(1년 이내)의 어음 할인에 의한 대출

(5)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가) (정의) 긴급지원대상자가 생활하고 있어 현금화하기 곤란한 주거용재산에 대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거주하는 주택 1호(戶)에 한하여 공제

(나) (범위) 건축물(건물), 주택, 토지(대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⁶³⁾)

- 건축물(건물) 또는 주택과 같은 주소지인 토지(대지)인 경우 건축물가액 또는 주택가액에 대지가액을 포함한 금액을 1호의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 명시된 범위 외 재산(가건물, 비닐하우스 등)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 불가

63) 상가는 주거지로 인정 불가함이 원칙이나 시·군·구청장이 실거주지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다) (적용) 재산의 총액-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

- 재산의 총액에서 부채와 주거용재산을 한도 내 공제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일 때 기준 충족
(단위: 만원)

지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	4,200	3,500
기준금액	24,100	15,200	13,000

* (예시) 대도시에 사는 긴급지원대상자 A에 대한 공적자료 확인결과, 전세보증금 20,000만원과 대지 2,000만원, 자동차 2,000만원, 주택청약저축금액 2,000만원의 일반재산 항목과 예금 500만원의 금융재산이 확인된 경우의 재산의 합계액 기준금액 = 19,600만원

※ 적용 산식: [(일반재산 26,000만원)+(금융재산 5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6,900만원)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

(가) 정의: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파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 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 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참고〉 시설종류 및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 ▶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 ▶ 도크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
- ▶ 급수·배수시설: 송수관, 급수·배수시설, 복개설비
- ▶ 도관시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등
- ▶ 기타시설: 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 자동차(세척) 시설 등
- ▶ 부수시설물: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트, 기타 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으로,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하고 반영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

(나) 유형별 조사방법

-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건물, 시설물)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2) 선박·항공기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선박 및 항공기

- 선박: 기선·범선·부선 및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
- 항공기: 사람이 탑승·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⁶⁴⁾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64) 보정계수: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3) 자동차

(가) 정의: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처리하고 그 외의 건설기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는 동산으로 처리

(나)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 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 정보를 반영
-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인 경우, 차량 구입시 지원받은 보조금(환경부·지자체) 포함한 자동차가액 반영

(다)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4) 임차보증금

(가) 정의: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라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계약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률}(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5) 동산 및 입목재산

(가) 동산

1) 정의: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2) 조사방법

- 가축·종묘 등의 동산은 개별 재산평가액이 100만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경우만을 조사하며, 대상자의 신고재산을 반영

- 각종 기계·기구류는 동산에 포함하고, 장애인재활보조기구나 냉장고·TV 등 생활 필수품은 제외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의 범위) 중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의 가액은 국토부 취득가액에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반영됨

〈참고〉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산정 기준」 [별표 17] 기계장비 잔가율표

대 상	내용 연수	경 과 연 수																			
		1년 미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트럭, 콘크리트피니셔, 콘크리트펌프, 로보스트럭, 노면파쇄기, 터널용고소작업차, 수목이식기, 트랙지게차	10	0.832	0.708	0.637	0.545	0.439	0.349	0.290	0.231	0.184	0.146	0.100									
콘크리트살포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아스팔트피니셔, 아스팔트살포기, 골재살포기, 천공기, 선별기,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13	0.871	0.768	0.709	0.603	0.543	0.455	0.381	0.318	0.279	0.234	0.196	0.165	0.138	0.100						
불도저, 기중기, 롤러,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벙칭 플랜트,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쇄석기, 공기압축기, 준설선, 자갈채취기, 노면측정장비, 스크레이퍼, 향타 및 향발기,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15	0.885	0.793	0.736	0.644	0.603	0.511	0.439	0.376	0.323	0.290	0.249	0.214	0.183	0.158	0.135	0.100				
모터그레이더, 타워크레인	17	0.904	0.831	0.763	0.680	0.627	0.551	0.488	0.431	0.382	0.346	0.307	0.272	0.242	0.215	0.191	0.162	0.131	0.100		

(나) 입목재산

- 1)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의한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입목의 종류

- 산림목(총 5종): 소나무, 잣나무, 낙엽송, 기타침엽수, 기타활엽수
- 유실수(총 18종):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밤, 감, 자두, 매실, 호도, 앵두, 대추, 살구, 모과, 다래, 유자, 보통온주밀감, 조생온주밀감, 기타 과일

- 2) 조사방법: 입목재산은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6) 회원권

-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 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7) 조합원입주권

- (가) 정의: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분양권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징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8) 분양권

(가) 정의: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9) 어업권 및 양식업권

(가) 정의: 「지방세법」 제6조제13호 및 제6조제13의2호에 따른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수산업법」에 의한 어업: 정치망어업, 마을어업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 「양식산업발전법」에 의한 양식업: 해조류·패류·어류 등 양식업, 복합·협동·외해·내수면양식업

(나) 조사방법: 공적자료 조회 결과에 따라 어업권 및 양식업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5 금융조사

가 정의

- 1)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2)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다만, 「주택법」 제56조2항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⁶⁵⁾은 금융재산에서 제외하되 일반재산으로 처리하고, 유사보험의 종목도 상기 기준에 따라 처리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제공되는 금융정보 등(보험정보 포함) 조회 결과를 적용

다 금융정보 등 조회

1) 조회범위 및 산정기준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3개월 이내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市勢價額)

- 비상장 주식의 가액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하되, 평가금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액면가액 적용

※ 비상장 주식은 공적자료 상 미조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진신고 하도록 안내하고, 사후조사 시 '제4편 사후조사-2. 사후조사의 일반원칙-다. 조사자료의 추가 제출요구'에 따라 '주식 잔고증명서'(해당 증권사 발행)를 징구. 행복e음 상 액면가액과 주식 잔고증명서 상 평가금액이 상이할 시 주식 잔고증명서의 평가금액을 반영 후 적정성 심사를 실시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65) -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은 일반재산이 아니라 금융재산(기타 일시금)으로 불에 유의
 -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 ① (생명보험업의 보험종목) 생명보험, 연금보험(퇴직보험 포함)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②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화재보험, 해상보험(항공·운송보험 포함), 자동차보험, 보증보험, 재보험(再保險)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③ (제3보험업의 보험종목)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등(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바)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사)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은 연금 개시 후에는 정기지급받는 월 수령액이 조회되며, 연금소득으로 산정
- 아) 출자금: 농·축·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조합원 가입 시 출자액(추가 입금한 출자액 포함)

2) (조회기준 금액) 계좌당 10만원 이상

※ 금융기관에 가입한 연금상품(보험, 저축, 신탁)의 월 수령액은 모든 금액 조회

3) 조회절차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제출 → 시·군·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등록 → 중앙 전담기관에서 금융기관 등에 일괄 조회 실시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조회 결과 확인

4) 유의사항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제출 및 시스템 입력시, 조사대상 가구원과 동의서를 제출한 가구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반드시 확인하여 일치시키도록 함
- 금융정보 등 조회 내역 누설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라) 조회결과 적용

- 1) 조회된 금융재산은 원칙적으로 예금주(조사대상자) 명의의 재산으로 적용
 - 금융재산(부채 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 결과대로 적용
 - ※ 가령 대출금이 평균잔액으로 조회되거나 각종 연금 및 보상금 등이 금융재산에 포함되어 조회되는 경우 등 그 원천을 고려하지 않음
 - 금융재산 중 요구불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의 조회 범위는 요청일 기준 6개월~3개월 이전⁶⁶⁾까지
- 2) 시·군·구청장은 조회결과 적정성 기준을 초과한 것이 확인된 경우는 긴급지원이 계속 되고 있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을 중단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금융 재산 허위기재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비용 징수 등 법령에 따라 조치함
 - ⇒ 지원연장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지원 중지

66) (예시) 12월에 요청한 대상자의 경우 조회기준일이 9.30.이라면 9·8·7월의 평균잔액이 조회됨

3) 차명계좌 또는 도명계좌라고 주장하는 경우 처리방법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의 예외를 인정하여 재산산정에서 제외
 - 법원에서 차명·도명계좌로 확정판결 받은 경우
 - (차명계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차명으로 인정하고 금융재산에서 제외
 - (도명계좌) 수사기관에 도명 해당자에 대한 고발을 하고 수사를 통해 도명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경우 금융재산에서 제외

마 생활준비금 및 금융재산에서 차감되는 지출

(가)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생활준비금

- 금융조회 기준일부터 금융재산 요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구당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백원단위 이하 절사)의 금액을 생활준비금으로 산정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26년 생활준비금	2,564,000	4,199,000	5,359,000	6,494,000	7,556,000	8,555,000

※ 생활준비금은 재산의 합계액 산정 시 금융재산에서 차감

* 「금융재산 기준」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6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단위: 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564,000	10,199,000	11,359,000	12,494,000	13,556,000	14,555,000
금액 (주거지원)	10,564,000	12,199,000	13,359,000	14,494,000	15,556,000	16,555,000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000원 추가

(나) 필수지출 항목 및 매월 고정지출 차감

- (지출항목)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매월 일정하게 지출한 항목⁶⁷⁾등
- (적용방법) 금융재산 요청일 기준 최근 3개월⁶⁸⁾ 동안 발생한 것으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금융재산에서 차감 가능

※ 금융재산이나 소득 중 유리한 쪽에서 한 번 차감하며, 금융재산에서 차감한 지출은 소득에서 차감 불가

(다) 희망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

- 조회 결과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등의 자금은 가입기간 중의 본인 저축액에 대해 차감 가능
- 희망저축계좌, 디딤씨앗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 희망플러스통장, 청년희망적금 등 정부, 지자체 예산을 통한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포함

바 기타 일시금 처리 방안

(가) 대상 일시금의 종류

- 퇴직금: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 사망일시금: 산재보험급여, 보훈대상자 명예수당·보상급여
- 반환일시금(국민연금급여), 조기취업수당(실업급여)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보상금
- 최근 1년 이내 지급된 보험금
-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 비정기적 금품

(나) 일시금의 확인 및 반영 기준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른 일시금은 금융재산으로 우선 반영
- 동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는 사용처에 따른 재산의 이동을 확인하여 해당 재산유형으로 변경
- 단, 변경은 일시금 사용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반영

67) (예시) 전·월세 등 주거임차료,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아파트 관리비, 동절기 연료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채상환액(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금융기관(외)에서 대출받아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사채는 불인정) 등

68) 매주 화요일까지 요청된 금융재산 조회는 목요일에 일괄 전송됨에 따라 해당 주의 목요일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전 말일까지의 금융재산 조회가 이루어짐. 따라서 금융재산 조회 기간 이후의 최근 3개월에 대한 공제 가능 (예시) '24.12.27. 금융재산 조회 요청, '24.12.29. 일괄 전송, '24.7.1.부터 9.30.까지의 평균잔액이 회신·반영 '24.12.28. 금융재산 조회 요청, '25.1.5. 일괄 전송, '24.8.1.부터 10.31.까지의 평균잔액이 회신·반영

- 사용처를 입증하기 곤란한 내역에 관하여는 일시금 발생월부터 요청월까지 매월 기준 중위소득의 55% 수준으로 자연감소분으로 공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및 일시금 공제금액〉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공제금액 (기준 중위소득 55% 수준)	1,410,000	2,309,000	2,947,000	3,572,000	4,156,000	4,705,000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528,000원씩 증가(7인 가구 5,233,000원)

용도	증빙서류
일시금의 출금 확인	일시금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
사용처를 명백히 제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채상환증명서, 의료비, 간병비, 학비, 주거비, 주거임차료(전·월세 등), 공과금(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아파트 관리비, 동절기 연료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채상환액[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납부하고 있는 채무변제액, 금융기관(외)에서 대출받아 매월 지출되고 있는 원금 및 이자(부채로 인정되지 않는 사채는 불인정)] 등

일시금 처리 예시

- A씨(4인 가구)가 '26.1.4. 긴급지원 요청, '26.1.6. 지원결정 받음. 사후조사 결과 '25.10.31. 조희기준일에 일시금 4,500만원 조회되었고, '25.8.17. 수령 확인. 증빙자료로 의료비 영수증(200만원), 금융기관 대출 상환 확인서(1,000만원) 제출한 사례
 - 의료비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시: 차감 반영
 - **3,300만 원 = 4,500만원-1,200만원**
 - ※ 단, 자동차나 임차보증금 등에 지출하여 재산으로 전용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징구하여 금융에서 차감 후 일반재산(자동차, 보증금 등)으로 반영
 - 사용처 증빙자료 미제출 시: 자연감소분 공제
 - **2,143.2만원 = 357.2만원(4인가구)×6개월[(발생월)'25년 8월~(요청월)'26년 1월]**
- ☞ 기타 일시금 산정액: 1156.8만원(3,300만원-2,143.2만원)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구 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소득	근로 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1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 시에만 제공	매월(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1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일용 근로소득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신청조사 시 : 최근 3개월 자료	연 2회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	매분기	확인조사 시 : 최근 6개월 자료	매분기
		자활 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매월	자활사업기관 및 시군구에서 등록된 임금지급 내역	매월
	공공일자리 소득	재정지원일자리사업 - 직접일자리사업 근로소득 (고용노동부)	수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취약계층 일자리 사업 근로내역정보(노인, 장애인 일자리 포함)	연 2회	
	사업 소득	농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어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임업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기타사업 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 사업자등록증	수시	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재산 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1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1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금융정보 조회결과	4월	(이자소득-보장별공제금*)/12	연 2회
		연금(개인) 소득	금융정보 조회결과	수시	연금(저축, 보험 등) 개시 후 연금의 월 수령액	연 2회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국민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구 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1월	전월 지급된 보훈급여	매월
		* 농지연금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공익직 접직불금	12월	직불금/12	연 1회
		구직촉진수당	매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국토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1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 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입목재산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 표준액(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 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구 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금 융 재 산	분양권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건설기계	건설기계(국토부)	수시	건설기계 보유정보	매월	
	요구불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과거 3개월간의 평균금액	연 2회	
	저축성예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계좌잔액	연 2회	
	증권거래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주식, 선물옵션, 펀드, 수익증권, 출자금, 부동산 신탁 등 : 최종시세가액 (2) 채권, 어음, 수표, CD (양도성 예금증서), 신주 인수권 증서 등 : 액면가액 (3) 예수금 : 잔액	연 2회	
	보험증권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 보험 해약 시 환급금 (계약자 기준) (2) 개시 전 연금보험, 연금 저축 해약 시 환급금	연 2회	
	1년이내 지급된 보험금	금융정보 조회 결과	수시	1년 이내 지급된 사고 보험금 지급액(수익자 기준)	연 2회	
	자동차		국토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부채	대출 금	금융기관 대출금	수시	대출 잔액	연 2회	
		신용카드 연체금	수시	신용카드 미결제액	연 2회	
	임대보증금	국토부 임대보증금	수시	주택소유자 임대보증금액	매월	

* 굵은 글씨는 자동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며 그 외는 참고자료로 제공

* 국토부 선박원부 및 농림축산식품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 가능

* 기본형공익직접직불금은 전년도 자료를 소독으로 우선 반영하되 자료가 없는 경우 전전년도 자료를 반영함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공적자료) 입수주기

구 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사업주 신고	4월말	7월말	10월말	다음 연도 1월말
신청조사 입수	7월	10월	다음 연도 1월	다음 연도 4월
확인조사 입수	같은 연도 하반기	같은 연도 하반기	다음 연도 상반기	다음 연도 상반기

05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05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리

1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법 제14조)

가 적정성 심사 목적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선지원 후조사 원칙’을 악용하는 부적정 사례의 발생을 차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수행하기 위함
- 시·군·구청장(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행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의 적정성 판단
 - * 사후조사 결과: 내부결재 서식인 [서식 11호]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사후조사(소득·재산기준) 결과와 현장확인에서 파악한 가구의 생활실태,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자체 판단결과 등이 기재된 심의조서를 말함

나 적정성 심사 기관 (법 제12조)

- 시·군·구 긴급 지원심의위원회(본(本)위원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대체 가능
- 조례에 따른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가능. 이 경우 반드시 6개월 내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후 의결 처리

다 적정성 심사의 실시

- (심사시기) 시·군·구청장의 사후조사 완료 후 실시⁶⁹⁾
- (심사대상)
 - 선지원 건

69) 회신된 공적자료로 우선 적정성 심사 가능하며, 금융재산 회신자료가 확인되는 즉시 사후조사 실시
 - 다만, 금융재산 조회결과가 현장확인에서의 본인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비용환수 결정

- 금전 및 현물지원한 건⁷⁰⁾
- 적정성 심사 이후 가구원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건

○ 심사 제외대상

-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금융재산 등 긴급복지 지원기준 적합 여부 확인
- 위기상황 발생 및 사후조사 결과 공제항목 반영한 소득·재산금액이 긴급지원 기준을 명백히 충족한 경우 적정성 심사 생략* 가능
 - * 지자체 업무 부담 경감 및 위기가구 적극 보호를 위해 '19년 1월부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운영 활성화 방안 시행
 - * 예시) 주소득자의 사망사실이 확인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가능하고 사후조사 회신 결과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공제 후 금액 적용)
- 부가지원에 대한 지원 적정성 심사는 주지원 적정성 심사로 같음

○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통한 심사 절차 간소화

- 지원연장 결정 등에 있어 긴급함을 요구하는 경우, 조례에 따른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를 활용 가능
 -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결에 준하며, 6개월 내에 본위원회(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
 - 다만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 의결사항을 반대 의결할 경우 소위원회 결정을 취소하며, 소위원회 의결에 따라 긴급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본위원회의 반대 의결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에게 환수하지 않음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적정성 심사 예시〉

신청자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 활용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A 건	지원 연장 결정 등에 있어 긴급함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지방생활보장 소위원회에서 '적정'하다고 심의·의결	생략 (사후보고)	의결
B 건			
C 건			
E 건	심의·의결 하지 않음	심의	의결
F 건			

70) 적정성 심사 완료 전에 시·군·구청장이 지원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원연장 결정까지 적정성 심사의 대상이 됨

라)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현장확인 후 선지원한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
 - 소득·재산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님에 유의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소득·재산이 지원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현장확인 당시 대상 가구의 개별적 상황, 생계곤란에 따른 긴급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적정성을 심사
 - 적정성 심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없이 지원 중단 및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 중단 및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법 제15조제2항)
- *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환수면제 가능

고의 또는 중과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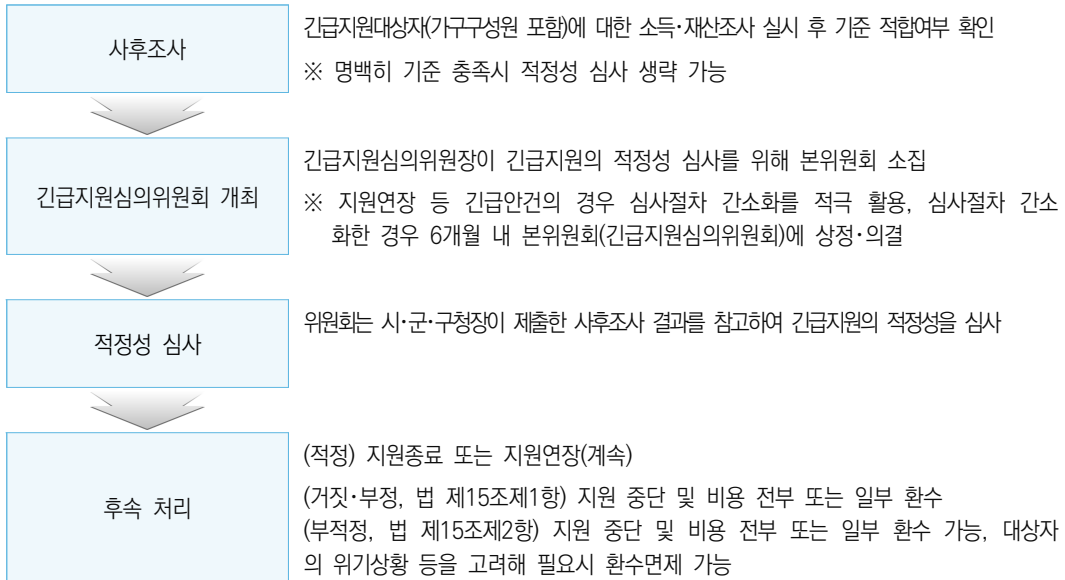
➔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 ① 지원조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 ② 신청자가 고의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묵인한 경우
- ③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사망자 또는 타인에게 지원한 경우 등

➔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 ①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②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경우
- ③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 ④ 공증사체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마 걱정성 심사 절차



바 심사완료 시기: 선지원의 결정일부터 3개월 이내 완료

사 적극행정 면책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 금지

근거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긴급지원의 걱정성 심사)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원법」 제34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① 감사원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 ① 자체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② 지원연장 결정 (법 제10조)

가 목적

-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연장함으로써 긴급지원 대상자가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함

나 지원연장 사유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및 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는 1개월간 지원하고 의료·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해산비·장제비·전기요금은 1회 지원하는 것이 원칙
 - 생계,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
 - 생계지원은 3개월간,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교육지원 및 연료비를 1개월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의료·교육지원
 - 선지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지원의 상한선을 초과하는 의료비의 발생으로 추가 연장 결정이 필요한 경우
 - 교육지원은 부가지원으로, 주지원 중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 중에서도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지원연장 결정 시, 소득·재산·금융재산 추가 조사 등으로 소득·재산 변동을 파악하고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고려하여 지원연장
 - 공적자료가 늦게 조회되는 경우 필요 시 우선 연장하되, 조회된 즉시 지원 기준 초과 여부 확인하여 추가 심의 가능

㉔ 지원연장 결정 기한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 시·군·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의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함
 - 금융재산자료가 지원연장 결정 시까지(1개월 내) 미회신된 경우 우선 지원연장을 결정하고, 자료회신 즉시 사후조사 실시해 지원의 적정성 확인
- * (예시)'25.3.11.(월) 1개월 선지원 후 지원연장 결정일('25.4.9.)까지 금융재산자료가 미회신된 경우, '25.4.10.(공휴일인 경우 전날인 '25.4.9.(화))까지 지원연장 결정하고 '25.4.11.(목) 긴급지원금 지급. 이후 금융재산 자료회신 즉시 사후조사 실시 및 적정성 심사

㉕ 지원연장 결정주체 및 연장기간 / 횟수

- (생계지원)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3개월 범위내 연장 지원할 수 있음
- (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및 그 밖의 지원 중 연료비)
 - 시·군·구청장의 판단으로 2개월 범위내 연장할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추가로 3개월 범위내(주거지원은 9개월 범위내) 연장 지원할 수 있음
- (의료·교육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회를 추가연장 가능
 - ※ 교육지원은 주거지원의 추가연장기간 동안 최대 3회(분기) 범위에서 추가연장 가능

지원종류		기 본(A) (시·군·구청장)	연장(B) (시·군·구청장)	추가연장(C)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최대 지원기간 (D=A+B+C)
주 지 원	생계	3개월	-	3개월 범위	6개월
	의료	1회(선지원)	-	1회	2회
	주거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9개월 범위	12개월
	사회복지 시설이용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3개월 범위	6개월
부 가 지 원	교육	1분기(선지원)	-	3분기 (주거지원 9개월 범위)	4분기 (주거지원 12개월 범위)
	연료비	1개월(선지원)	2개월 범위	3개월 범위	6개월
	해산비	1회	-	-	1회
	장제비	1회	-	-	1회
	전기요금	1회	-	-	1회

마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지원연장 결정 (법 제10조제3항)

- (대상) 지원연장(또는 선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연장이 필요한 긴급 지원대상자
- (내용) 선(先)연장 결정 하더라도 위기상황 해소 여부에 따라 지원중지 또는 추가연장을 판단하여 연장기간을 결정
 - 이때, 한 번의 심의로 대상가구에 대한 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지원대상자가 선연장 결정된 지원기간 동안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연장 또는 추가 연장의 기간에 대해 일괄결정 가능
 - 소득·재산·금융재산 추가 조사 결과 등 소득·재산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심의)
 - ㉠ (위원회의 회의) 위원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종료 3일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고, 지원연장에 대한 심의를 결정
 - ㉡ 추가연장 기간의 구분
 - 1개월 결정: 소득·재산 변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일괄 결정: 소득·재산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 ㉢ 지원종류별 추가연장 기간 및 한도 범위
 - 생계·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 최대 3개월(주거지원의 경우 최대 9개월)
 - 의료: 1회(최대 300만원)
 - 교육: 주지원 연장기간에 따라 1회 또는 최대 3회
(예시) 주거지원 9개월 추가연장 결정 시 교육지원은 3회 내에서 추가연장 가능
 - 그 밖의 지원(연료비) : 생계·주거지원 연장기간에 따라 동절기(10월~다음해 3월)에 한하여 최대 3개월
 - ㉣ 추가연장 필요성 확인
 - 시·군·구청장은 의료지원을 제외하고, 1개월(회, 분기)분 추가연장기간의 매 지원종료 3일 전까지 위기상황의 해소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중지 또는 최대 추가연장 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원결정

바 지원연장 결정 알림

- 시·군·구청장의 지원연장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추가연장이 결정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서식 8호]에 따라 지원종류와 연장기간 및 유의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함
- ※ 결정통보 방식: 「행정절차법」 제24조에 따라 통보하며, 문서 통보시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서식8호] 출력·첨부

3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법 제15조)

가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대상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가) 의미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한 자
- 자기 소득·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나) 판정 및 환수결정기관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다) 환수금액⁷¹⁾

- 지원 중단 후 지원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지 않았으나 적정성 심사 결과, 부적정 지원으로 결정된 경우

(가) 의미: 사후조사 결과 현장확인 시 소명한 바와는 다르지만 고의적인 거짓은 없는 경우⁷²⁾를 의미

(나) 환수결정기관: 시·군·구청장

(다) 환수금액

- (원칙) 반드시 지원 중단 후 지원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 (예외) 반드시 지원 중단하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지원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반환하지 않게 하거나 일부만 반환⁷³⁾

71) 긴급지원대상자가 2인 이상인경우는 지원비용 환수금액을 긴급지원대상자 수로 나눈 금액을 각각 징수할 수 있음

72) 본인이 인지하지 못한 유산의 존재 등

73) ① 지급된 지원비용 등을 이미 소비하여 환수할 가용자산이 없는 경우

②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3) 적정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가) 의미: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적정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나) 환수결정기관: 시·군·구청장
- (다) 환수금액
 - 초과 지원 상당분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음

나 징수대상자 관리

- 긴급지원기관의 장은 환수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

다 지원비용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1) 납부통지

- 지원비용 환수 결정 시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대상자에게 지원비용 환수금을 납부하도록 통지해야 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통해 [서식 제12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출력 후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발송
 - ※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157조, 제161조에 따라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익일로 만료함
 - 환수대상자의 분할납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납부 징수 가능
- 환수대상자가 다른 시·군·구 거주 시에는 지원비용 환수 납부통지서를 산출내역과 함께 우편(등기우편 등)으로 송부하여 납부하도록 함

(2) 납부독촉

-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경과 후 1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

(3) 체납처분

- 납부독촉의 납부기한 내에 미납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처리 (압류→매각→청산)

(4) 정리보류

(가) 정리보류 정의[「체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

-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의미

(나) 정리보류 대상[「지방세 징수법」 제106조 제1항]

-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은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 ※ 위 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단, 이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참고〉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예시)

-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재산의 멸실이 있어 실제 징수가 곤란한 경우
 - ▶ 납부의무자가 사망, 국외이주, 정신질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 한정승인의 사유로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피상속인의 환수금을 변제할 수 있는 상속(적극)재산이 없는 경우(한정승인에 대한 법원의 확인 필요)

-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함. 다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제외함 (시효완성정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제2,3항)

관 련 조 문

☞ 지방세징수법

제70조(교부청구의 해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 총당,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 의무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청구의 해제는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그 뜻을 통지함으로써 한다.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총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1.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 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중략)-재산의 유무를 확인(-생략)-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삭제>

라 징수금액의 처리

- 긴급지원기관이 징수한 긴급복지 지원비용은 당해연도 지원분과 과년도 지원분으로 구분
 - 당해연도 지원비용 징수금: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지원비용 징수금: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긴급지원 비용 환수 절차



4 소멸 시효

- 긴급복지지원 비용을 환수 할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 : 「국자재정법」 제96조

5 이의신청 (법 제16조)

가 이의신청 개요

(1) 이의신청 대상

- 시·군·구청장의 지원결정내용(연장결정 포함)
- 시·군·구청장의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2) 이의신청인

- 긴급지원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고지받은 사람

(3) 이의신청 기한: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이의신청에 따른 시·도지사의 처분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지원요청결과 통보일, 연장결정 통보일 및 비용반환 결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나 이의신청 절차

(1) 이의신청

- [서식 13호] 이의신청서 작성 후 시·군·구청장(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2) 시·군·구청장의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군·구청장은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 시·군·구청장이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한 후 이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이 경우 신청인에 대한 통지는 새로운 처분으로 간주)

(3) 시·도지사의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체없이 소속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서([서식 13-1호] 작성) 하도록 함
 - 소속 관계공무원은 현장확인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이의신청인에게 필요한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해야 함
- (통지)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군·구청장에 서면으로 통지

6 사후 연계 (법 제4조)

가 의의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 ⇒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기적 빈곤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음
- 장기적 빈곤상황에 놓인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다른 제도의 지원요건 미충족으로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호·구호 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함
 - ※ 다만, 재지원 제한기간 중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 자체사업, 민간지원,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적극 활용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른 공공부조제도 연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

-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받았거나 혹은 받고 있는 중이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선정조건에 충족한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신청하도록 연계(필요시,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경우 긴급복지지원과의 중복지원 가능 여부
 - 긴급복지지원 연장결정을 받은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이 되는 경우 기초급여 종류별(생계, 의료, 주거, 교육) 중복지원 불가(〈표〉 참고)
 - ※ 단, 기초의료급여수급자여도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의료지원 검토 후 결정 가능

〈표〉 긴급복지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간 지원 가능 범위

일반 긴급지원 요청 가능	㉠	㉡	㉢	㉣	← 기중위 50%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요청 가능	㉤	㉥	㉦	기초 교육급여	← 기중위 48%
긴급 '생계지원, 의료지원' 요청 가능	㉧	㉨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 기중위 40%
긴급 '생계지원' 요청 가능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의료지원' 별도	㉩	기초 의료급여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 기중위 32%
긴급지원 요청 대상 아님 * 다만 긴급한 사유시 '긴급의료지원' 별도	기초 생계급여	기초 의료급여	기초 주거급여	기초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이 '㉩부터 ㉣까지' 범위이고 위기상황 발생시 긴급지원 요청 가능

- 긴급복지지원 요청과 기초생활보장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거나 긴급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보장결정 받기 전까지 긴급복지지원 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되어 사후적으로 긴급복지지원과 기초급여가 중복되는 경우, 긴급지원금 일할분과 기초생활보장급여 월급여를 비교(긴급생계지원 - 기초 생계급여 비교, 긴급주거지원 - 기초주거급여 비교)
⇒ 해당 월의 긴급지원금이 기초급여보다 많으면 긴급지원금만 지급하고, 긴급지원금이 기초급여보다 작으면 차액분의 기초급여를 소급하여 지급
- ※ (참고) 긴급복지지원은 선지원 사업이므로 중복지원 여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 급여별 시·군·구 소관부서에서 확인·처리

(예시) 긴급생계지원 요청 및 기초생계급여 신청을 동시진행한 경우

○ 요청 및 신청일

- 긴급생계지원금: 7.12. 요청, 7.14. 지원결정(3개월)
8.25. 기초생계급여 적합 결정에 따른 지원중지
※ 7~8월은 31일로, 1일당 64,342원으로 하고, 9월은 1일당 66,486원으로 계산
- 기초생계급여: 7.12. 신청, 8.25. 보장 결정

○ 급여액 비교 및 기초생계급여 소급·지급 계산(2026년 기준)

예시 1 긴급생계지원금이 더 많은 경우

- 긴급생계지원금: 1,994,600원(4인 기준)
- 기초생계급여: 500,000원(결정금액)
- 지급방법

해당월	긴급생계지원금		기초생계급여	
7월	7.14. 1,994,600원 (보장기간: 7.14.-8.13.) 7월분: 1,158,156원	전액 지급	8.30. 500,000원 (7월분)	긴급지원이 더 많아 소급없음
8월	8.14. 1,994,600원 (보장기간: 8.14.-9.13.) (8.25. 지원중단)	전액 지급	8.30. 500,000원 (8월분)	긴급지원이 더 많아 미지급
9월	9월분: 836,444원*	전액 지급	9.20. 500,000원 (9월분)	긴급지원이 더 많아 미지급
10월	-	-	10.20. 500,000원 (10월분)	전액 지급

* 9월에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8월 지급분이 8.14.~9.13.까지 보장하고 있기에 일할계산 시 8월 지급액 1,994,600원에서 8월분인 18일에 대한 1,158,156원을 차감한 836,444원이 9월분에 해당

- 9월분 긴급생계지원금 836,444원은 9월분 기초생계급여 500,000원보다 많으므로 9월 기초생계급여 미지급

※ 긴급 생계지원과 기초 생계급여는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자동 연계되거나 필요 시 수기 계산하여 지급액 확정 가능

예시 2 긴급생계지원금이 더 적은 경우

- 긴급생계지원금: 1,994,600원(4인 기준)
- 기초생계급여: 1,300,000원(결정금액)
- 지급방법

해당월	긴급생계지원금		기초생계급여	
7월	7.14. 1,994,600원 (보장기간: 7.14.-8.13.) 7월분: 1,158,156원	전액 지급	8.30. 1,300,000원 (7월분)	차액분 142천원 추가지급
8월	8.14. 1,994,600원 (보장기간: 8.14.-9.13.) (8.25. 지원중단)	전액 지급	8.30. 1,300,000원 (8월분)	긴급지원이 더 많아 미지급
9월	9월분: 836,444원*	전액 지급	9.20. 1,300,000원 (9월분)	464천원 추가지급
10월	-	-	10.20. 1,300,000원 (10월분)	전액 지급

* 기초생계급여가 긴급생계지원금보다 많은 경우, 8월에 7~8월분 기초생계급여를 소급·지급 시 긴급생계지원금 해당 월의 일할 지급분과 비교해 차액을 지원

- 이에 8월 기초생계급여는 미지급하고 7월, 9월분 기초생계급여는 긴급생계지원금의 차액분을 지급

(2)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 신청

-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신청,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선정기준에 부합한다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경우, 신청 안내 및 연계 노력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6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긴급지원대상자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을 받고 있어도 중복 지원 가능

※ 공통요건을 충족하는 한부모가구(조손가구 포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으로 문의하도록 안내

- 지원대상

<공통요건> * 아래 요건 모두 충족 필요

- 비양육부모로부터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한 양육비 채권을 가지고 있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 비양육부모(양육비 채무자)가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연속)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하지 않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동안 이행한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선지급 기준금액: 월 20만원(단, 매월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 채권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하거나, 양육비 관련 이행명령, 채권추심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소송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 재혼가구, 조손가구라도 양육비 채권이 있다면 신청 가능

- 지원 금액: 직접 양육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원칙)

※ 양육비 채권(양육비부담조서, 결정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 상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 기간: 18세까지

※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이행하는 등 선지급 중지 사유 발생 시 지원 중단

- 문의사항: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

(3) 통합사례관리로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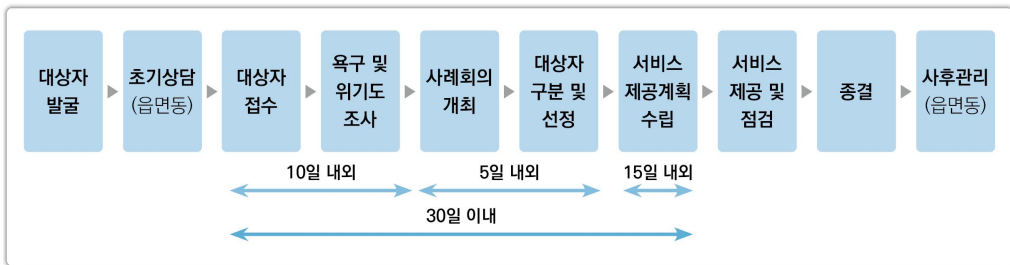
- 긴급지원 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은 통합사례관리로 적극 연계

○ (통합사례관리 개념)

- 지역 내 공공·민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지원체계를 토대로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신용·법률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상담·모니터링 해나가는 사업

○ (통합사례관리의 절차)

-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 대상자 접수, 욕구 및 위기도 조사, 사례회의, 대상자 구분·선정,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서비스제공 및 점검, 종결, 사후관리 총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복지지원단은 읍면동에서 초기상담 후 의뢰된 사례관리 가구에 대해 대상자 접수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를 수행



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기관으로의 연계

(1) 민간기관⁷⁴⁾에 대한 지원 요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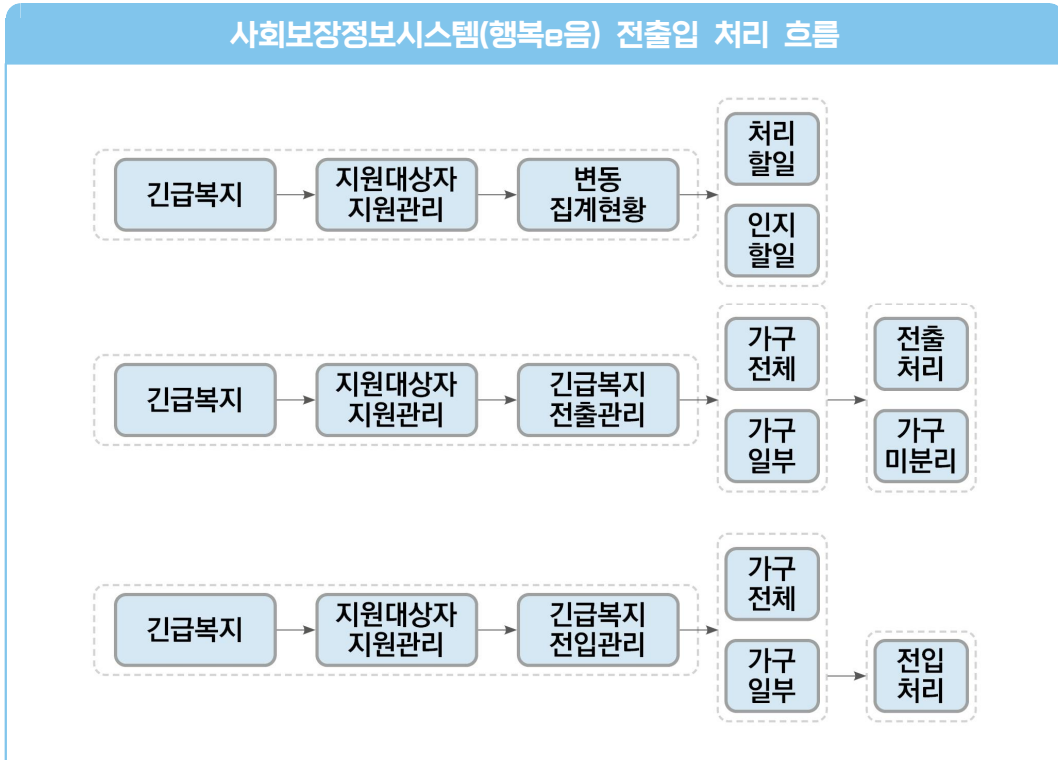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아름다운 재단 등 민간지원기관이 참여하는 긴급 지원협의회를 통해 긴급지원 후 연계방안에 대한 기본체계 마련
-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정부 차원의 긴급지원은 종료되었지만 위기상황이 종료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간기관의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민간과의 연계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74) 참고: 부록 4. 민간기관 사업 개요

7 거주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가 전출

(1)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모두가 전출하는 경우

- 긴급지원대상자가 긴급지원을 결정하기 전에 전출한 경우
 - 전산시스템 상 현장조사 내역등록 화면의 하단 [조사완료] 처리 후 ‘변동알림집계현황>처리할일>가구전체전출’에서 확인하고, 긴급복지 전출입관리 중 긴급복지대상자 전출관리>가구전체전출>전출대기’로 이동해 전산시스템으로 전출 처리*

* ‘변동알림집계현황>인지할일>가구전체전출’에서 전출처리 반영 여부 확인

- 전입지에는 별도의 공문을 시행하지 않으며, 전입지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추가 자료 요청 시 온나라메일 등을 통해 사본(스캔본) 이송 등

* 전출처리: 행복e음>긴급복지>전출입관리>긴급복지대상자 전출관리

○ 긴급지원대상자가 지원기간 중에 전출한 경우

- 전산시스템 상 현장조사 내역등록이 조사완료 상태인 경우 전산상 자동으로 전출 처리되나 [조사완료]버튼이 활성화 상태인 경우 주민등록상 전출되어도 전산에서는 전출 처리되지 않음
- '변동알림집계현황>처리할일>가구전체전출'에서 확인하고, 긴급복지 전출입관리 중 긴급복지대상자 전출관리>가구전체전출>전출대기'로 이동하여 전출 처리*
 - * '변동알림집계현황>인지할일>가구전체전출'에서 전출처리 반영 여부 확인

(2)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출하는 경우

- 가구구성원 변동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기준 확인 및 남은 가구구성원의 계속 지원 여부 등을 판단하여 가구재구성, 지원계속, 지원종료, 신규요청 등 조치
- '변동알림집계현황>처리할일>가구일부전출'에서 확인 후 '긴급복지 전출관리>전출대기' 목록에서 전출처리
- 일부 전출한 가구원이 전출지와 동일한 위기상황으로 전입한 경우에는 전출지에서 전입지의 시·군·구청장에게 추가서류 이송 필요시 사본(스캔본)을 온나라메일 등을 통해 전송
 - ※ 단, 교육·양육 또는 직장 등의 사유로 거주지 전·출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주거를 달리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가구원으로 반영(제2편 긴급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선정 - 다. 지원단위 - (2) 가구의 범위)

나 전입

(1)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이 모두 전입하는 경우

- '변동알림집계현황>인지할일>가구전체전입'에서 전입 대상 확인 후, 사후조사 등 수행
- 전출지에서 지원 받았거나 추진하려던 지원을 집행하기 위해 전입지에서는 긴급지원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의 위기상황 계속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장확인 후 지원내용과 지원기간 등을 결정 후 통보

↳ 유의사항

전산시스템 상 현장조사 내역등록이 조사완료 상태인 경우 전산상 자동으로 전출처리 되나 조사완료 상태가 아닌 경우 주민등록상 전출이 발생하더라도 자동으로 전출처리 되지 않음
 ⇒ 전출지에서 지원결정 후 1차 사후조사 완료된 경우 전산 상 자동 전출처리 되므로, 전입지에서는 현장확인 후 2차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가구의 위기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지원증지 또는 지원연장 등을 결정

(2) 긴급지원대상자 가구구성원 중 일부가 전입하는 경우

- ‘변동알림집계현황 > 처리할일 > 가구일부전입’에서 확인 후 ‘긴급복지 전입관리 > 전입대기’ 목록에서 전입처리
- 전출지에서 이송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관련 서류 사본 또는 파일사본을 확인하여 지원 결정
 - 단, 필요 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나 학업 또는 소득활동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전입할 경우에는 지원검토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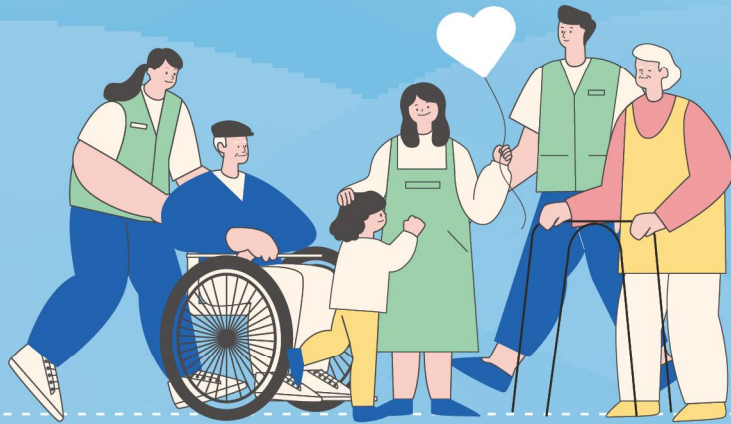
㉠ 거주지가 2개소 이상인 경우의 긴급지원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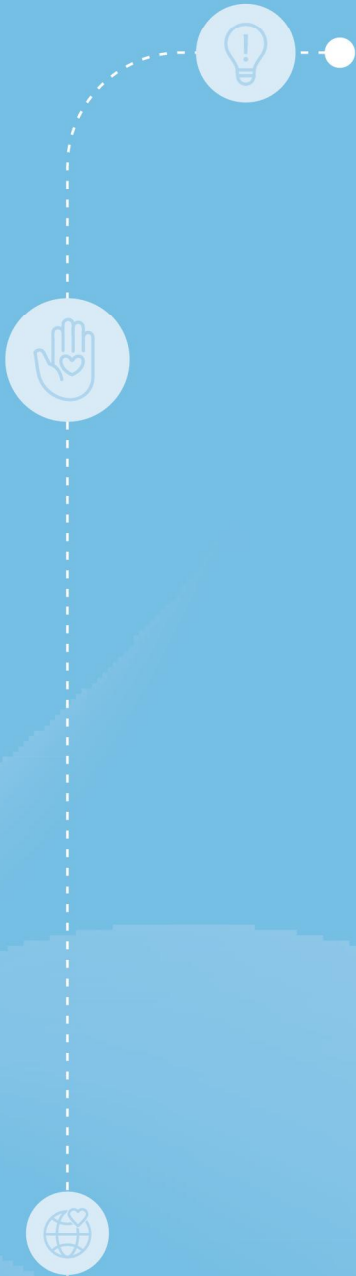
-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2개 이상의 시·군·구 관할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긴급지원기관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요청을 받았거나 신고받은 지역의 시·군·구청장이 됨

**2026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06

서 식





[서식 1호] 현장확인서	128
[서식 2호] 긴급지원대상자 소득신고서	130
[서식 2-1호] 소득·재산 신고서	131
[서식 3호][별지 제1호의3서식]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32
[서식 4호] 고용·임금확인서	134
[서식 4-1호] 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	135
[서식 5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136
[서식 6호] 긴급지원금관리자 지정동의서	137
[서식 7호] 긴급지원대상자 지원 요청서	138
[서식 8호] 긴급지원대상자 통보서	139
[서식 9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40
[서식 10호] 긴급지원비용 청구서	141
[서식 11호]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142
[서식 12호]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144
[서식 13호] 이의신청서	145
[서식 13-1호] 현장 조사서	146
[서식 14호]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147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149
[별지 1]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51
[별지 2]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152
[별지 3]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요청서	153
[별지 3-1] 진료비 영수증(진료받은 기관) 제공 동의서	154
[별지 4] 진료비 확인 요청 위임장	155
[별지 5] 진료비 확인 요청 취하서	156
[별지 6]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서	157

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서식 1호]

(앞면)

현 장 확 인 서					처리기간 지체없이			
요청인 또는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_____)						
위기사유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8%;"> <input type="checkbox"/> 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기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input type="checkbox"/>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input type="checkbox"/> 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input type="checkbox"/> 제7호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혼)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출소)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복지사각지대발굴)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자살고위험군)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여객기참사피해자) </div> <div style="width: 48%;"> <input type="checkbox"/>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4호 가구구성원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input type="checkbox"/> 제6호 주(부)소득자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input type="checkbox"/> 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전)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기 노숙)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통합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범죄피해주거이전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이태원참사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초대형산불피해자) </div> </div>							
긴급지원 대상자	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 표에 미기재된 가구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등초본 확인 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지원 결정								
유의사항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본 확인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4.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p>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긴급지원대상자: _____ (서명 또는 인)</p>							

[서식 2-1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21.7.1.>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¹⁾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원	()	원	()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연금소득	원	원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²⁾	원	원	원	원	기 타 (지자체 지원금등)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원	토 지	원	원	원
선 박		원	원	입목재산	원	원	원	
항공기		원	원	어업권	원	원	원	
자동차		□ 차량명()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원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원) □ 상가보증금(원) □ 기타(원)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마리, 원) □ 돼지(마리, 원) □ 기타가축(마리, 원) □ 종묘(원) □ 기계·기구류(원) □ 기타(원)	원	원	분양권	원	원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원	조합원 입주권	원	원	원
				원	회원권	원	원	원
		소계 (A-(B+C+D))		원			원	원
	(A) 일정기간 ³⁾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원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원	원		
(C) 부채 상환액		원			원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원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원	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	원	원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원)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⁴⁾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원)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3)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지출비용: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서식 3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의3서식] <개정 2025.7.4.>

(양쪽)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 유의사항 :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포함)으로 대신합니다.

세대주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2)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³⁾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인감)

- 1)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교육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특별시교육감·광역시교육감·특별자치시교육감·도교육감·특별자치도교육감(관련법에 따른 위탁업무수행 기관장 포함, 이하 '보건복지부장관 등' 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2)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까지,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취득 전까지

5. 정보제공 목적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 지원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의료급여법」, 「주거급여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확인조사 지원,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익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제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이후 주기적인 맞춤형 급여 안내를 위한 금융재산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가구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출 여부에 따라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안내하는 사업의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8항 및 제49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 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확인조사, 맞춤형 급여 안내, 수급희망 이력관리,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식 5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신설 2015.6.2.>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긴급지원 수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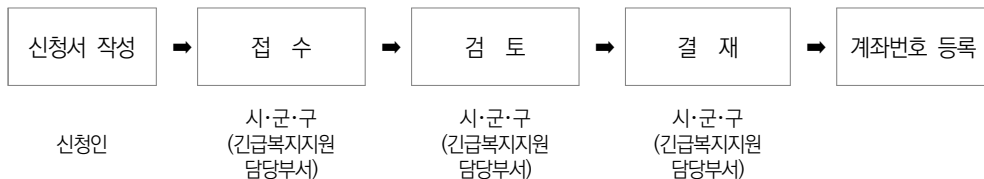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계좌번호가 표시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

처 리 절 차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서식 9호]

제 호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1. 성명 : (생년월일 :)
2. 대상자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3. 주소(소재지) :
4. 긴급지원 종류 구분:

생계지원 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주거지원 대상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대상자 그 밖의 지원()

5. 제출용도 :
(용 도)
(제출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 유의사항: 목적외 사용 금지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m²]

[서식 11호]

(앞면)

긴급지원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긴급지원 대 상 자	대상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위기사유	<input type="checkbox"/> 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 사망·기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input type="checkbox"/>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input type="checkbox"/>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유기·방임·학대 <input type="checkbox"/> 제4호 가구구성원의 가정폭력·성폭력 <input type="checkbox"/> 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input type="checkbox"/> 제6호 주(부)소득자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input type="checkbox"/> 제7호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input type="checkbox"/> 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혼)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전)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출소)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노숙)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복지사각지대발굴)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통합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자살고위험군)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범죄피해주거이전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이태원참사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여객기참사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초대형산불피해자)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대상자와의 관계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원)
	본인						
재 산	일반재산	<input type="checkbox"/> 건축물 (원) <input type="checkbox"/> 주택 (원)					
		<input type="checkbox"/> 토지 (원) <input type="checkbox"/> 임차보증금 (원)					
		<input type="checkbox"/> 선박/항공권 (원) <input type="checkbox"/> 동산 (원)					
		<input type="checkbox"/> 어업권 (원) <input type="checkbox"/> 입목재산 (원)					
		<input type="checkbox"/> 조합입주권 (원) <input type="checkbox"/> 분양권 (원)					
사	자동차	<input type="checkbox"/> 평가액 (원) <input type="checkbox"/> 차종·연식 ()					
		<input type="checkbox"/> 차량번호 ()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					
		<input type="checkbox"/> 배기량 (cc) <input type="checkbox"/> 용도 ()					
항	금융재산	<input type="checkbox"/> 금융재산 (원) <input type="checkbox"/> 기타일시금 (원)					
		<input type="checkbox"/> 월 고정지출금 (원)					
	공채	<input type="checkbox"/> 자산형성지원금 (원) <input type="checkbox"/> 자연감소분(금융) (원)					
		<input type="checkbox"/> 대출금 (원) <input type="checkbox"/> 임대보증금 (원)					
부채	<input type="checkbox"/> 개인간부채(사채) (원)						
	총합계		원				

(뒷면)

긴급지원 적 정 성 판단자료	소득	※ 판단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재산	※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고시 제7호 기준
	금융재산	※ 「금융재산 기준」 고시 제1호 기준
사후조사 결 과	지원연장, 변경 및 중지	<input type="checkbox"/> 지원연장 <input type="checkbox"/> 지원중지 <input type="checkbox"/> 지원변경
	담당자 의 견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사후조사 결과를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직위	성명	(서명)
확인자 직위	성명	(서명)

[서식 12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4.1.1.>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차)				
수급자 (보호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거주지(소재지)			
비용(부당이득) 납부자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수급자·보호 대상자와의 관계	[] 본인	[] 부양의무자	[] 기타()
복지 급여 및 서비스 제공내용				
환수(반환) 사유				
환수결정액		원	납부장소	
기 납부액		원		
납부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까지	산출내역	별첨	
<p>「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및 제47조, 「아동복지법」 제61조, 「장애인복지법」 제51조, 「기초연금법」 제19조, 「장애인연금법」 제17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의2 및 제26조,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2, 「의료급여법」 제23조, 「주거급여법」 제20조, 「아동수당법」 제16조,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10에 따라 에 따라 보호대상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직인</p>				
안내사항				
<p>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장애인활동지원, 한부모가족지원, 양육수당, 부모급여(현금) 및 사회서비스이용권의 경우 '납부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제 체납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다른 급여는 민사집행 절차에 따라 환수할 수 있습니다.</p> <p>2.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1) 기초생활보장 : 수급자나 급여 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도교육감을 말함)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음</p> <p>2)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장애인활동지원, 영유아보육·유아학비: 결정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3) 장애인연금, 아동수당, 부모급여(현금) :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국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p> <p>4) 기초연금 : 결정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 (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할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서면으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신청</p> <p>5)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한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별도안내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신청인과의 관계	
	주소	(전화번호 :)			
처분내용		[] 선정 []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 환수 []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월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분의 내용 또는 통지된 사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8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기초연금법」 제22조, 「장애인복지법」 제84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8조, 「아동수당법」 제19조,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아동수당 관련 이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안내사항

1.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장·군수·구청장(교육급여의 경우 시·도교육감)이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에게 송부합니다.
다만, ① 기초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②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대한 이의신청은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③ 한부모가족지원 및 장애인복지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30일 이내, ④ 장애인연금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 ⑤ 장애인활동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 내 연장가능), ⑥ 장애아동가족지원, 장애아가족양육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15일 이내(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⑦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지원, 방과후활동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⑧ 영유아보육지원원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⑨ 아동수당지원 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30일(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이내, ⑩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 관련 이의신청은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결정통지 처리합니다.
2. 기초생활보장 및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사도교육감의 경우에는 직접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를 말한다)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 관련 이의신청의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3.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을 결정할 보장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보장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13-1호]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6.6.30.>

현장 조사서	
조사 대상	
조사 목적	
조사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조사 담당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조사의 범위	
관계 법령	
제출자료	
기타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width: 100%;"> 년 월 일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center; margin-top: 20px;"> 기 관 명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60px;"> 직인 </div> </div>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14호]

긴급복지지원 의뢰서				요청구분	<input type="checkbox"/>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뢰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주 소							
가구 구성원	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연락처 (직장 등)
						직업	직장명(학교명)	
	본인							
※ 배우자 관계(<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별거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지원 이력	* 최근 2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기간: ~)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인 진술	<현재 생활실태: 소득활동, 재산사항, 지원요청내용, 향후계획 등 포함>							

유의 사항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p> <p>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본 확인서를 확인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p> <p>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 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p> <p>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4.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p>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상자: _____ (서명 또는 인)</p>	
상담자 의견	<p><상담내용: 대상자의 상황·상태, 향후 관리방안, 지원의 필요성 등></p> <p style="text-align: right;">상담자: _____ (서명 또는 인)</p>	
<p>위의 상담내용에 따라 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를 긴급지원대상자로 의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읍·면·동장 또는 부서장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읍·면·동 또는 부서명	팀명	
상담자 성명	연락처	

[서식 15호]

긴급복지지원 추천서				요청구분	<input type="checkbox"/> 노숙인 <input type="checkbox"/> 자살고위험군 (자살시도자 또는 그 가족/ 유족/ 자살의도자)			
추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연락처				
	주 소							
가구 구성원	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연락처 (직장 등)
	본인					직업	직장명(학교명)	
※ 배우자 관계(<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별거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지원 이력	* 최근 2년 <input type="checkbox"/> 시설입소(시설명 및 시설종류: , 입소기간: . . . ~ . . .)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시설 이용 등):							
대상자 본인 진술	<현재 생활실태: 가구이탈사유, 소득활동, 재산사항, 지원요청내용, 향후계획 등 포함>							

유의 사항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본 확인서를 확인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역·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4.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p>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대상자: _____ (서명 또는 인)</p>		
상담자 의견	<p><상담내용: 대상자의 상황·상태, 향후 관리방안, 지원의 필요성 등></p> <p style="text-align: right;">상담자: _____ (서명 또는 인)</p>		
<p>위의 상담내용에 따라 본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를 긴급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보건소장 또는 센터장 (서명 또는 인)</p> <p>시장·군수·구청장 귀하</p>			
보건소 부서명 또는 센터명		연락처	

[별지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4. 7. 18.>

[]외래 []입원 ([]퇴원[]중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환자등록번호		환자 성명		진료기간		아간(공휴일)진료	
				. . . 부터 . . . 까지 [] 아간 [] 공휴일			
진료과목		질병군(DRG)번호		병실	환자구분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항목		급여		비급여	금액산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전액 공단부담금		⑥ 진료비 총액 (①+②+③+④)		
기본 항목	진찰료				⑦ 공단부담 총액 (②+⑤)		
	입원료	1인실			⑧ 환자부담 총액 (①-⑤)+③+④		
		2·3인실					
		4인실 이상					
	식대	행위료			⑨ 이미 납부한 금액		
		약품비			⑩ 납부할 금액 (⑧-⑨)		
	주사료	행위료					
		약품비					
	마취료				⑪ 납부한 금액		
	처치 및 수술료				카드		
		검사료			현금영수증		
	영상진단료				현금		
	방사선치료료				합계		
	치료재료대				납부하지 않은 금액 (⑩-⑪)		
재활 및 물리치료료				현금영수증()			
정신요법료				신분확인번호			
잔혈 및 혈액성분제료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선택 항목	CT 진단료				* 요양기관 임의활용공간		
	MRI 진단료						
	PET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						
	보철·교정료						
	제증명수수료						
	선별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정액수가(요양병원)						
	정액수가(안화의료)						
질병군 포괄수가							
기타							
합계	①	②	③	④			
상한액 초과금	⑥			-			
요양기관 종류	[] 의원급·보건기관 [] 병원급 []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		[인]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p>1. 일부 본인부담 일변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나, 요양기관 지역, 요양기관의 종별, 환자 자격,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여부, 병실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 외래 본인부담률: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30% ~ 6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원 ~ 2500원, 0% ~ 15%) 등</p> <p>- 입원 본인부담률: 20%(의료급여는 수급권자 종별 및 의료급여기관 유형 등에 따라 0% ~ 10%) 등</p> <p>※ 식대: 50%(의료급여는 20%) / CT·MRI·PET: 외래 본인부담률(의료급여는 입원 본인부담률과 동일) /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본인부담률(50%, 80%, 90%)</p> <p>※ 상급종합병원 입원료: 2인실 50%, 3인실 40%, 4인실 30% / 병원급 의료기관(차과병원 제외) 입원료: 2인실 40%, 3인실 30%</p> <p>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에서 금액을 청구 및 인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 부담합니다.</p> <p>3. 상한액 초과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의료법, 제83조제2항제6호와 관련하여 따른 요양병원(정액안락시설, 제6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8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에 입원한 기간이 같은 연도에 120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공단이 부담하는 초과분 중 사전 정산하는 금액을 말한다.</p> <p>※ 전액 본인부담 및 선별급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등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시 제외합니다.</p> <p>4. 질병군 포괄수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2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3조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병군 입원진료에 대하여 해당 입원진료와 관련된 여러 의료행위를 하나의 행위료 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할 것을 말한다. 다만, 해당 질병군의 입원진료와 관련되는 의료행위라도 비급여대상이나 이차처치 등 포괄수거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위 표의 기본항목 및 선택항목에 합산하여 표기합니다.</p>						<p>1.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p> <p>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한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p>	
<p>주(註): 1. 진료항목 중 선택항목은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아간(공휴일)진료 시 진료비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p> <p>2. 환자가 「위기 임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p>							

210mm×297mm[백상지 80g/m²]

06
서
식

[별지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4. 7. 18.>

약제비 계산서 · 영수증

영수증번호(연월-일련번호)			
환자 성명	조제일	투약일수	야간(공휴일)조제
			[] 야간 [] 공휴일
항목	급여		비급여
	일부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약품비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관리료			
선별급여			
65세 이상 등 정액			
기타			
합계	①	②	③ ④
⑤ 약제비 총액 (①+②+③+④)		납부한 금액	카드
⑥ 환자부담 총액 (⑤-②)			현금영수증
			현금
			합계
현금영수증()		* 요양기관 임의활동공간	
신분확인번호			
현금영수증 승인번호			
처방한 요양기관	[] 의원급 · 보건기관 [] 종합병원	[] 병원급 [] 상급종합병원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년	월 일
항목별 설명	일반사항 안내		
1. 일부 본인부담: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30% ~ 50% (의료급여 500원)이나, 환자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선별급여(「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에 따른 요양급여)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2. 전액 본인부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6 또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적용되는 항목으로 건강보험에서 금액을 정하고 있으나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1. 야간(공휴일)조제 등 이 계산서·영수증에 대한 세부내용은 요양기관에 요구하여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자가 전액 부담한 비용과 비급여로 부담한 비용의 타당성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홈페이지: www.hira.or.kr)에 확인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계산서·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공제신청(현금영수증 승인번호가 적힌 경우만 해당합니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증비용으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은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현금영수증.kr)		
주(註): 환자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비식별화된 가명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환자의 성명 대신 가명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48mm×210mm(백상지 80/㎡)

[별지 3]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에 관한 운영 지침[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4.17.>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요청서(보장기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진료비 확인 요청인 (보장기관)	보장기관명칭	보장기관기호	
	주소 및 담당부서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회신방법 [] 이메일 _____ @ _____, [] 우편		
	환불금 입금계좌(※ 보장기관 계좌 작성, 담당자 개인계좌 불가)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확인 요청 내용 및 진료받은 기관	확인 요청 내용	
	진료받은 기관	

진료비 확인 결과 통보받을 자	[] 긴급지원대상자와 동일 (긴급지원대상자와 통보받을 자가 같은 경우 []에 √ 표시)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긴급지원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환불금 입금계좌(※ 긴급지원대상자 또는 통보받을 자에 한함)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제1항,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요청합니다.

요청인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첨부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진료비(약제비) 계산서·영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확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2.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의 자필서명(날인) 위임장(별지 제2호) 및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의료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 법정성숙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사망확인 서류 및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확인 서류 제출) 3.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사본 4.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와 통보받을 자가 다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의료지원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선택)

본인은 이 건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요청 처리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보유 및 이용기간: 요양급여 대상 여부 확인 결과 통보일부부터 1년
- 해당 내용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안함)

요청인 _____ (서명 또는 인)

210mm ×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3-1]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2.24.>

진료비 영수증(진료받은 기관) 제공 동의서

진료받은 사람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		

요청인 (법정대리인 또는 가족)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진료받은 기관	의료기관명
---------	-------

동의사항	<p>진료받은 기관에서 심사평가원에 진료비 확인 처리를 위한 진료비세부내역 자료를 제출 시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요청인이 제공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하는 항목: 진료비 또는 약제비 계산서 영수증 - 보유 및 이용기간: 진료받은 기관은 진료비확인 요청일부터 결정사항 통보일까지 보유·이용합니다. -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진료비확인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p>위와 같이 진료비확인 처리를 위해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을 진료받은 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p>
------	--

위와 같은 사실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6] [요양급여 대상여부의 확인에 관한 운영 지침(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3.4.17.)

진료비 확인 이의신청서 ([]개인 / []요양기관 / []보장기관)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요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이의신청 요청인	성명(기관명)	생년월일(기관기호)
	연락처	진료받은 사람과의 관계
	주소	
진료받은 사람	성명	생년월일
	진료받은 기관	
진료비 확인 결과 내용	결과(※환불, 정당 등)	문서번호
	환불금 총액	이의신청 금액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취지	
	첨부서류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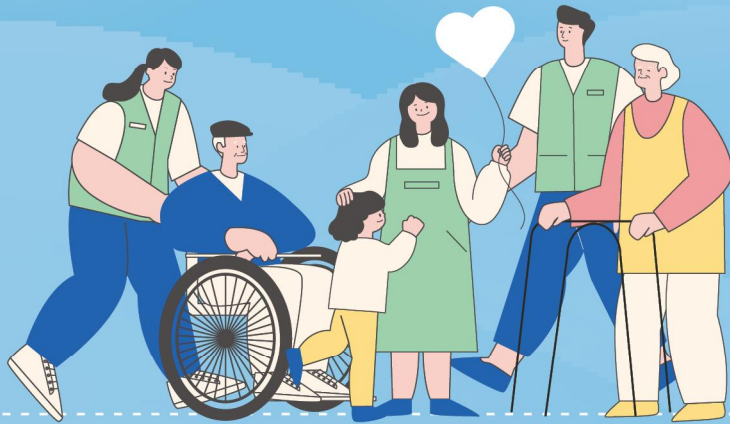
210mm×297mm(백상지 80g/㎡)

06

서
식

07

부 록





1.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2. 고시
3. 만성고시질환
4. 민간기관 사업 개요
5. 노숙인 시설 현황



2026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07 1.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시행규칙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제 정 2005.12.23., 법률 제 7739호 타법개정 2008. 2.29., 법률 제 8852호 일부개정 2009. 5.28., 법률 제 9751호 타법개정 2010. 1.18., 법률 제 9932호 타법개정 2010. 4.15., 법률 제10261호 타법개정 2011. 7.14., 법률 제10854호 일부개정 2012.10.22., 법률 제11512호 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934호 일부개정 2015.12.29., 법률 제13644호 일부개정 2016.12. 2., 법률 제14319호 일부개정 2018.12.11., 법률 제15878호 일부개정 2019. 6.12., 법률 제15878호 일부개정 2021. 7.27., 법률 제18327호 일부개정 2023. 6.13., 법률 제19448호</p>	<p>제 정 2006. 3.23., 대통령령 제19397호 일부개정 2007.12.28., 대통령령 제20474호 타법개정 2008. 2.29., 대통령령 제20679호 일부개정 2009. 2. 6., 대통령령 제21319호 일부개정 2009. 5.28., 대통령령 제21508호 타법개정 2009.10. 1., 대통령령 제21765호 타법개정 2010. 3.15., 대통령령 제22075호 일부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2호 일부개정 2012.12.28., 대통령령 제24282호 일부개정 2013. 6.28., 대통령령 제24648호 일부개정 2015. 6. 1., 대통령령 제26296호 타법개정 2016. 1.22., 대통령령 제26922호 타법개정 2018. 6. 5., 대통령령 제28946호 타법개정 2020. 8. 4., 대통령령 제30893호 일부개정 2022. 5. 3., 대통령령 제32620호</p>	<p>제 정 2006. 3.24., 보건복지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6호 타법개정 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09. 5.28.,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13호 일부개정 2009.12.31.,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44호 타법개정 2010. 3.19., 보건복지부령 제 1 호 일부개정 2013. 1.31., 보건복지부령 제178호 타법개정 2014. 8. 6., 보건복지부령 제254호 일부개정 2015. 6. 2., 보건복지부령 제319호 타법개정 2016. 5.25., 보건복지부령 제403호 일부개정 2018. 8.17., 보건복지부령 제588호 일부개정 2019. 6.11., 보건복지부령 제629호 일부개정 2021.12. 6., 보건복지부령 제841호</p>
<p>제1조(목적) 이 법은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1조(목적) 이 영은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따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2. 10. 22., 2014. 12. 30., 2018. 1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기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p>[전문개정 2009. 5. 28.]</p> <p>제3조(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p> <p>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p>		<p>제1조의2(위기상황의 기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4. 수도, 가스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중단된 경우 5.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상당한 기간 동안 체납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p>[본조신설 2015. 6. 2.]</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4. 15.> [전문개정 2009. 5. 28.]</p> <p>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 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지원대상 및 소득 또는 재산 기준, 지원 종류·내용·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긴급지원사업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다른 법률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구호·보호 또는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5조(긴급지원대상자) 이 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5조의2(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본조신설 2009. 5. 28.]</p> <p>제6조(긴급지원기관)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자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개정 2015. 7. 24.></p> <p>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자원요청 또는 신고가 특정지역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을 수행할 담당공무원(이하</p>	<p>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 2012.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p>[본조신설 2009. 5. 28.]</p>	<p>제2조(긴급지원기관의 조정)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자원요청 또는 신고가 관할 지역에 집중되어 예산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사업을 포함한 복지 관련 교육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1.> [전문개정 2009. 5. 28.]</p> <p>제7조(자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p> <p>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사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 직원, 산학겸임교사, 강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5.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활동지원인력 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 		<p>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 2018. 8. 17.></p> <p>② 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기관의 조정을 요청받은 시·도지사는 관할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예산 확보 현황 및 긴급지원사업 실적 등을 고려하여 지체 없이 새로운 긴급지원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7.> [전문개정 2009. 5. 28.]</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p> <p>7.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8.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p> <p>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p> <p>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p> <p>11. 그 밖에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 등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7. 27.></p> <p>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p> <p>⑥ 제5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시간,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p>		<p>제2조의2(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 법 제7조제3항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11., 2021. 1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2.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직원 3. 동·리의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복지 분야나 민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외의 직원 <p>[본조신설 2015. 6. 2.]</p> <p>제2조의3(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 관련 교육)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긴급지원사업의 신고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이하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개정 2021. 1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지원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3.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p>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이나 보수교</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p> <p>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지원사업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2021. 7. 27.></p> <p>[전문개정 2009. 5. 28.]</p> <p>제7조의2(위기상황의 발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p> <p>[본조신설 2014. 12. 30.]</p> <p>제8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자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p>		<p>육 과정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1. 12. 6.></p> <p>③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람이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 12. 6.></p> <p>④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의 실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19. 6. 11.]</p> <p>[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4로 이동 <2019. 6. 11.>]</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 소방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체 없이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p> <p>④ 제1항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는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p> <p>⑤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산설 2015. 12. 29.> [전문개정 2009. 5. 28.]</p> <p>제8조의2(금융정보 등의 제공등서 제출)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할 때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위기상황을 확인할 때에 그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서면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긴급지원담당공</p>	<p>제1조의3(금융정보 등의 제공등서 제출)</p> <p>① 법 제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의식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산설 2015.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식불명인 경우 2.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인 경우 	<p>제2조의4(현장조사서) 법 제8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본조산설 2016. 5. 25.] [제2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4는 제2조의5로 이동 <2019. 6. 11.>]</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무원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p>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p> <p>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p> <p>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p> <p>[본조신설 2009. 5. 28.]</p>	<p>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p> <p>② 법 제8조의2제1호에서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 2018. 6. 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時勢價額).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5.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p>③ 법 제8조의2제2호에서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2.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p>④ 법 제8조의2제3호에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2.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p>[본조신설 2009. 5. 28.] [제목개정 2015. 6. 1.]</p>	
<p>제9조(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p>	<p>제2조(생계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생계지원의 대상은 긴급지</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1. 금전 또는 현물(現物) 등의 직접지원 가.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p>	<p>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p> <p>②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하여 물품구매가 곤란한 경우 등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현물(現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2016. 1. 22.></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p>	
<p>나. 의료지원: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p>	<p>제3조(의료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른 의료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으로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이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검사 및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다. 주거지원: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지원</p> <p>라.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입소(入所) 또는 이용 서비스 제공이나 이에 필요한 비용 지원</p>	<p>3.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p> <p>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p> <p>5.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등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5. 28.]</p> <p>제4조(주거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 다목에 따른 주거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임시거소(臨時居所)의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임시거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소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임시거소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임시거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지역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임시거소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임시거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5. 28.]</p> <p>제5조(사회복지시설의 이용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의 대상자는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마. 교육지원: 초·중·고등학생의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p>	<p>람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가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시설의 입소자 수 또는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필요한 비용을 해당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금액을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5. 28.]</p> <p>제5조의2(교육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교육지원의 대상은 긴급지원대상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중 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공민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각종학교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학교와 유사한 학교 6.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만 해당한다)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바. 그 밖의 지원: 연료비나 그 밖에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p> <p>2. 민간기관·단체와의 연계 등의 지원 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사회복지기관·단체와의</p>	<p>긴급지원대상자에게 학교 또는 시설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이하 “학비”라 한다)을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에 개설된 긴급지원대상자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p> <p>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수업료 등을 납부하거나 학용품 등을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학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분기에 따라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9. 5. 28.]</p> <p>제6조(그 밖의 지원) ① 법 제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그 밖의 지원의 종류는 연료비 및 해산비,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원으로 한다. <개정 2010. 3. 15.></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긴급지원대상자</p>	<p>제2조의5(학비의 분기별 지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지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분기: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제2분기: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3분기: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제4분기: 12월 1일부터 그 다음해 2월 말일까지 <p>[본조신설 2009. 5. 28.] [제2조의4에서 이동 <2019. 6. 11.>]</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연계 지원</p> <p>나. 상담·정보제공, 그 밖의 지원</p> <p>② 제1항의 구체적인 지원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제1호가목 및 다목의 자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을 각각 한도로 한다. <개정 2012. 10. 22., 2015. 12. 29.></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을 하는 경우 관할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요청을 받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설의 입소기준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기간에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전문개정 2009. 5. 28.]</p>	<p>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의 성격상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현물을 제공할 수 있다.</p> <p><개정 2010. 3. 15.></p> <p>[전문개정 2009. 5. 28.]</p> <p>제7조(사후조사의 시기 및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전단에 따른 지원 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후조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후조사 중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금융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p> <p>② 법 제13조제1항에서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2012. 12. 28., 2013. 6. 28., 2015. 6. 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일 것. 다만,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85 이하이어야 한다. 2. 재산의 합계액 및 금융재산이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일 것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제9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 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p> <p>② 긴급지원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긴급지원금만이 긴급지원수급계좌에 입금되도록 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p> <p>③ 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절차와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2. 30.]</p> <p>제10조(긴급지원의 기간 등) ①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3개월간,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1개월간의 생계유지 등에 필요한 지원으로 한다. 다만, 같은 호 다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긴급지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1개월씩 두 번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3.></p> <p>②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의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p>	<p>③ 제2항에 따른 소득, 재산 또는 금융재산의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5. 28.]</p> <p>제7조의2(긴급지원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이하 “긴급지원금”이라 한다)을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긴급지원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긴급지원대상자가 금융회사나 우편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를 말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금을 법 제9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6. 1.]</p>	<p>제3조(지원연장 결정)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원연장을 결정한 때에는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을 검사·치료하기 위한 범위에서 한 번 실시하며,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도 한 번 실시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1항제1호기목·라목 및 바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6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지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을 합하여 총 12개월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두 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지원은 제2항에 따른 지원횟수를 합하여 총 네 번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0. 22., 2014. 12. 30.></p> <p>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연장에 관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시기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전문개정 2009. 5. 28.]</p> <p>제11조(담당기구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상담·정보제공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담당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p> <p>② 삭제 <2012. 10. 22.></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12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p>		<p>제4조(긴급지원의 추가 연장)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 따라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연장이 필요한 사유,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 내용 등을 기재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p>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긴급지원대상자의 지원연장 여부에 대하여 지원기간이 끝나기 3일 전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원연장을 하기로 결정한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원연장 기간 및 지원내용과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 7. 2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 2.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p>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③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해당 시·군·구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p>④ 시·군·구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 경우 그 위원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p> <p>[전문개정 2009. 5. 28.]</p>		<p>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p> <p>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6조(수당의 지급)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7조(소득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1호에서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3. 1. 31., 2021. 12. 6.></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하고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 생산업, 가축 사육업, 종축업(種畜業) 또는 부화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營林業), 임산물 생산업 또는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양식업을 포함한다)과 이에 따른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그 밖의 사업소득: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또는 그 밖의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임대소득: 부동산, 동산, 권리 및 그 밖의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p> <p>다.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p> <p>4. 그 밖의 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보조금 및 그 밖의 금품</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p> <p>1.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p> <p>2. 보육·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p> <p>③ 제1항에 따른 소득에서 의료비와 주거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은 차감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9.> [전문개정 2009. 5. 28.]</p> <p>제8조(재산의 범위) ① 영 제7조제2항제2호에서 “재산의 합계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과 제2호나목 단서에 따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보험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3. 1. 31., 2018. 8. 17.></p> <p>1. 일반재산</p> <p>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 건축물 및 주택. 다만, 종중재산(宗中財産),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p> <p>나.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p> <p>다.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른 자동차</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라.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전세금을 포함한다)</p> <p>마.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種苗) 등 동산(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동산은 제외한다) 및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p> <p>바.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p> <p>사.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p> <p>아.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사목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p> <p>자.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p> <p>2. 금융재산</p> <p>가.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및 국채·공채 등 유가증권</p> <p>나.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다만, 「주택법」 제56조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은 제외한다.</p> <p>②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 용자금,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부채는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개정 2010. 3. 19.></p> <p>③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일이하 “조사일”이라 한 다음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2010. 3. 19., 2013. 1. 31., 2015. 6. 2., 2018. 8. 17.></p> <p>1. 제1항제1호가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제13조(사후조사)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소득 또는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긴급지원이 적정한지를 조사하여야 한다.</p>		<p>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제1항제1호나목: 「지방세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3. 제1항제1호다목: 차종·정원·적재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4. 제1항제1호라목: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5. 제1항제1호마목: 동산은 조사일 현재의 시가, 입목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6. 제1항제1호바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7. 제1항제1호사목: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 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8. 제1항제1호아목: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제1항제1호자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10. 제1항제2호: 영 제1조의3제2항 및 제4항의 기준에 따른 금융자산별 가액 <p>④ 삭제 <2009. 12. 31.> [전문개정 2009. 5. 28.]</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국세·지방세·건강보험·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등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p>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이 제8조의2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2011. 7. 14.></p> <p>④ 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를 제공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장은 그 정보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7. 14.></p> <p>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p>	<p>제8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 및 가구구성원에 대한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 2010. 3. 15., 2012. 12. 28., 2020. 8. 4.></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p>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해당 금융정보등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p>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3. 15.></p> <p>[전문개정 2009. 5. 28.]</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⑦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또는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얻은 정보와 자료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⑧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금융정보 등의 제공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전문개정 2009. 5. 28.]</p> <p>제14조(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①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한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p> <p>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긴급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p>	<p>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8조에 따른 현상 확인 및 지원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에 관한 사무 <p>[본조신설 2022. 5. 3.]</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를 이유로 긴급지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이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15조(지원중단 또는 비용환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p>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그 초과 지원 상당분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p> <p>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16조(이의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p>		<p>제9조(서식) ① 제2조의3에 따른 현장조사서, 법 제8조의2에 따른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식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5. 25.></p> <p>②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 8. 17.> [전문개정 2015. 6. 2.]</p>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p>사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17조(예산분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8.]</p> <p>제18조(압류 등의 금지) ① 이 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은 압류할 수 없다. ②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③ 긴급지원대상자는 이 법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또는 현물을 생계유지 등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5. 28.]</p> <p>제19조(벌칙) 제13조제7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 [전문개정 2009. 5. 28.]</p>	<p>부 칙 <제32620호, 2022.5.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841호, 202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p>
<p>부 칙 <제19448호, 2023.6.1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		

07 2. 고시

2-1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1. 생계지원 금액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 원 금 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지급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지역 \ 가구원 수	1~2 인	3~4인	5~6인
대 도 시	398,900	662,500	874,100
중 소 도 시	299,100	435,600	574,200
농 어 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원/월)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5. 교육지원 금액

(원/분기)

구 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원/월)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7. 재산의 합계액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 (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

※ 산식: (조사결과의 총액)-(공제액)≤(기준금액)

(천원)

지 역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0	42,000	35,000
기준금액	241,000	152,000	130,000

※ 대도시: 특별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 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1.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원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6년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금액	8,564	10,199	11,359	12,494	13,556	14,555

* 7인가구 이상은 1인 증가시 마다 960천원 추가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3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1.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 가.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를 한 경우
 - 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2.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에 한한다)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다만, 부소득자의 경우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일 것
 - 가. 주(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되었으나 지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나. 긴급지원 요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인 경우
 - 다.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를 하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의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3.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것
 - 2) 가족이 다음의 사람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가)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 나) 65세 이상의 자
 -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부터 별표 4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 나. 구금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출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요청한 경우
6. 가족으로부터의 방임유기,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노숙인시설의 장이 해당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요청하였을 것
- 나. 노숙인이 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것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8.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9. 자살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1) 자살한 자의 유족
 - 2)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 가족
 -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살의도자
-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을 것
-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10.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

제3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07 3. 만성고시질환

3-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2조

질환별로 급여일수를 각각 산정하는 질환

시행규칙 제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에서 정한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과 중복되는 질환은 제외한다.(괄호안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의한 상병분류기호를 말한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 ~ F99)
2. 신경계질환(G00 ~ G37, G43 ~ G83)
3. 고혈압성 질환(I10 ~ I15)
4. 간의 질환(만성바이러스간염포함) (B18, B19, K70 ~ K77)
5. 당뇨병(E10 ~ E14)
6. <삭 제>
7. 기타 만성폐쇄성폐질환(J44)
8. <2007 .7.1일자로 삭제>
9. 대뇌혈관질환(I60 ~ I69)
10. 두개내손상(S06)
11. <2007 .7.1일자로 삭제>
12. 갑상선의 장애(E00 ~ E07)
13. 심장질환(I05 ~ I09, I20 ~ I27, I30 ~ I52)
14. 뇌전증(G40, G41)

3-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별표 2]

의료급여 희귀질환자 및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대 상
1	만성신부전증의 경우
	가. 혈액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나. 복막투석을 실시하는 사람
2	혈우병(D68.4)
3	장기이식의 경우
	가. 간이식을 받은 사람
	나. 췌장이식을 받은 사람
	다. 심장이식을 받은 사람
	라. 신장이식을 받은 사람
	마. 폐이식을 받은 사람
	바. 소장이식을 받은 사람
4	아래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1., 구분 2. 및 [별표 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구분 5.의 상병
5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극희귀질환자
6	구분 4에 해당되지 않는 희귀질환으로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
7	제17조의2제5항에 따라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

3-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구분	대 상	특정기호	
1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2	[별첨 1]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별첨 1]에서 I60~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별첨 1]에서 I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 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 진료 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 [별첨1]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3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약제투여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 단, [별첨 2]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첨 2]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 (V306은 제외)	가.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7
		나. 별첨 3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48
		다.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라. 별첨 3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마. 별첨 3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V250
5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상세불명희귀질환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해당 임상 소견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질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제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젠]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우]의 결핍	D68.2	V009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D68.2	V009
	제13인자[피브린안정화]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제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2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가족성선종성폴립증	D12.6 (M8220/0)	V281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중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 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삼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울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해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해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항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성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솔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슐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증(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튼](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작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인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 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I 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비스코트-엠티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조지증후군	D82.1	V111
	홍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홍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엠펙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상세불명의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9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터레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말샘염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홍채섬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취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외종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외종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넬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터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가족성 부신키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패증	E27.2	V116
	부신흡혈	E27.4	V116
	부신행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안드로젠저항증후군	E34.5	V16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카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키-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뇨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윌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랜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하르트넵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함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신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Ⅰ, Ⅱ형)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Ⅰ, Ⅱ형)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젓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폼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 ₂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뮤코지질증 IV	E75.1	V117
	GM ₁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 ₃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쉐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라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안스키-빌소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벤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I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헐러증후군	E76.0	V117
	헐러-샤이에증후군	E76.0	V117
	샤이에증후군	E76.0	V117
	II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헌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III, IV, VI, VII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뮤코지질증 III [거짓헐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뮤코지질증 II [I -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뮤코지질증 I]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뇨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혈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멘케스(꼬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월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효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1	V120
	남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카다실	F01.1	V122
	레트증후군	F84.2	V122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헌팅톤병	G10	V123
	헌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힘줄반사율(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헌트운동실조]율(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율(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염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허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히-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론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어깨중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III형[큐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G12.28)은 제외)	G12.2	V123
	가족성 운동신경세포병	G12.20	V123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V123
	케네디 병	G12.28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울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만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중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뒤췌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중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췌]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증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툼슨]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심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G71.2)	G71.2	V012
	미세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00-D48†)	G73.1*	V25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G90.5	V17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V168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폭스디스트로피	H18.5	V307
	원추각막	H18.6	V307
	맥락막결손	H31.2	V295
	근초망막병증	H35.0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체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아이젠먼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먼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뢰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긴QT증후군	I49.82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섬유증	J84.1	V236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이완불능증	K22.0	V315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가성 장 폐색	K56.0	V312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전신농포건선	L40.1	V313
	손발바닥농포증	L40.3	V313
	중증 화농성 한선염	L73.22	V309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검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굿파스처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과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가야수]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I39.8*)	M32.1	V136
	리브만-삭스병(I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I32.8*)	M32.1	V136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I68.2*)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쉐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쉐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킨빅]	M92.2	V299
	성인의 킨빅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외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댄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Q16.1	V291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간	Q20.0	V144
	동맥간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증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측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측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용기결손	Q21.2	V269
	제1공심방중격결손(Ⅰ형)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측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멘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증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판하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차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2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안전유합	Q75.0	V265
	뿔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웨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처-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점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점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안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쿤)(-스틴버그)증후군	Q78.1	V154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무라티-앵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종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횡격막탈장	Q79.0	V155
	횡격막결여	Q79.1	V155
	횡격막 탈출	Q79.1	V155
	횡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횡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자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할리퀸테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탄력섬유성 거짓황색증	Q82.8	V31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클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고린-사우드리-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꿀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외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안치지의 형성이상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더-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리-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셴그렌-리슨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뼈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착지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캐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4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5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단,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은 등록에서 제외함.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시술·수술 관련 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4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편집조현병	F20.0	V161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렙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조현병성 납굴증	F20.2	V161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후우울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추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정신병	F22.0	V161
	편집증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F22.8	V161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패 델리랑뜨	F23.0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패 델리랑뜨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감응성 정신병	F24	V161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5	도슨 붕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311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말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말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펠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I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G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근염(I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G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I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I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병증(L40.5+)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6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해당 상병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병 2형(G30.0†)	F00.0	V800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F00.0	V80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F00.0	V800
	피크병에서의 치매(G31.00†)	F02.0	V800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0	V800
	피크병	G31.00	V800
	전두측두치매	G31.00	V800
	의미변이원발진행실어증	G31.01	V800
	비유창원발진행실어증	G31.02	V800
	로고페닉원발진행실어증	G31.03	V8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원발진행실어증	G31.04	V800
	진행성 고립성 실어증	G31.04	V800
루이소체치매(F02.8*)	G31.82	V800	
7	아래 상병으로 등록하여 다음 중 한 가지 상황 발생 시, 해당 상병과 직접 관련된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를 받은 경우 등록일 기준 매년 최대 60일. 단,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의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의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60일 추가 인정 ① 치매 및 치매와 직접 관련되어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여 입원 및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 ② 문제행동이 지속적으로 심하여 잦은 통원 혹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③ 급속한 치매 증상의 악화로 의료적 재접근이 필요한 경우, ④ 급성 섬망 상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병 1형(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F00.1	V810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F00.1	V810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F00.2	V810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F00.2	V810
	급성 발병의 혈관성 치매	F01.0	V810
	다발-경색치매	F01.1	V810
	주로 피질성 치매	F01.1	V810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2	V810
	혼합형 피질 및 피질하 혈관성 치매	F01.3	V810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G30.1	V810



07 4. 민간기관 사업 개요

4-1 대한적십자사(희망풍차 긴급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소득·재산·금융 기준이 충족하는 경우

* 주소득자의 실직·사망·가출 및 이혼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월세 체납으로 인한 강제퇴거 등

나.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구분	소득	재산		금융 재산
지원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대 도시 중소도시 농 어 촌	25,000만원 이하 16,000만원 이하 14,000만원 이하	840만원 이하

다. (지원 단위) 가구 단위 지원

라. (지원 종류)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4-2 사회복지공동모금회(긴급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재해·재난 및 공공부조 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층

※ 공공부조에 의한 지원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며,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대상자를 기본원칙으로 함

나.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다. (지원 종류) 개인 긴급지원(생계·의료지원), 재해·재난지원(화재피해, 재해·재난피해)

라. (신청절차)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의 생활보장담당부서 또는 지회가 지정한 신청 기관을 통해 신청 가능(개인 신청 불가)

※ 당해 연도 동일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07 5. 노숙인 시설 현황

■ 노숙인 재활시설(32)

• 법인시설(29)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5)	늘푸른자활의집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바리골길 421	031-953-3491 031-953-3490
	목동의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본로31길 33	02-3668-8432
	서울특별시립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8	02-2243-9183 02-2243-9188
	아가페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7길 6, 102동	02-942-9193 02-942-9194
부산 (2)	오순절평화의 마을 희망의집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055-352-4241 055-351-1984
	인성원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1870-63	055-375-1797 055-375-7588
대구 (1)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희망마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053-632-1229 053-635-3316
인천 (1)	은혜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32번길 22(심곡동)	032-590-8500 032-562-5108
광주 (1)	광주희망원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용산동)	062-234-9279 062-234-9277
대전 (1)	자강의집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1길 2(대화동)	042-349-5631 042-349-5601
세종 (1)	금이성마을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솔티로 293	044-862-7004 044-862-7051
경기 (3)	가평꽃동네요한의집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53-37	031-589-0109 031-589-0209
	성경원	경기도 동두천시 평화로3208번길 43-22(하봉암동)	031-865-2490 031-867-2923
	성혜원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포승장안로1120번길 46-29	031-358-9395 031-358-9397
충북 (2)	성덕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산성로658번길 301	043-253-4761 043-253-4762
	음성꽃동네 노숙인재활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40-55	043-879-8551 043-879-8555
전북 (2)	신애원	전라북도 군산시 새터길 20(구암동 63-21)	063-445-1782 063-445-3782
	이리자선원	전라북도 익산시 익산대로76길 9-17(신용동 75-2)	063-855-7672 063-854-1598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전남 (5)	진성원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유교길 101	061-280-6510 061-280-6516
	동명원	전라남도 무안군 청계면 복길로 211-35	061-452-5514 061-452-6570
	금강원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옥천로 1081	061-686-5580 061-686-5582
	디딤밭	전라남도 순천시 매봉길 30	061-721-1565 061-723-4124
	해남희망원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중앙1로 391	061-536-3640 061-535-1385
경북 (1)	고령들꽃마을	경상북도 고령군 우곡면 우곡강변길 516-16	054-956-9800 054-956-0052
경남 (3)	진주시복지원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제곡길98번길 34-13	055-762-7620 055-762-1157
	창원시립복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삼진의거대로 827	055-256-0079 055-293-0269
	합심원	경상남도 사천시 삼상로 613(이홀동)	055-835-8557 055-835-8579
제주 (2)	서귀포시사랑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분토왓로174번길 49-8(서홍동)	064-763-5551 064-763-5561
	제주시희망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봉로 451(월평동)	064-721-0711 064-721-0714

● 개인시설(3)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3)	그리스도의공동체 겨자씨들의동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로21길 10	02-999-3932 0505-900-3932
	수선화익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중앙남로 16나길 62-1	02-2644-0713
	십자가침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로 6가길 24-1	02-941-2503 02-941-2510

■ 노숙인 요양시설(22)

● 법인시설(17)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4)	서울특별시립 은평의마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5길 27-1	02-3156-6315 02-354-4205
	서울특별시립 영보자애원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등읍 이원로 483	031-333-7390 031-333-7392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특별시립 여성보호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 34길 124	02-3412-4503 02-3412-4512
	다일작은천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57	02-2213-8004 02-2242-7004
부산 (2)	부산광역시 마리아마을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림로 298(장림동)	051-263-3902 051-263-3925
	오순절평화의마을 사랑의집	경상남도 밀양시 삼랑진읍 삼랑진로 453	055-352-4241 055-351-1984
대구 (1)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보석마을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58	053-267-4400 053-267-4402
경기 (1)	가평꽃동네 사랑의집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꽃동네길 53-37	031-589-0109 031-589-0209
강원 (3)	춘천시립복지원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1925-25	033-261-6901 033-262-2335
	원주복지원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	033-747-1795 033-747-6996
	강릉시립복지원	강원도 강릉시 진재골길 12-14	033-648-7824 033-648-0272
충북 (1)	음성꽃동네 노숙인요양원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꽃동네길 39-16	043-879-0431 043-879-0209
전북 (1)	전주사랑의집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926(호성동2가 631-13)	063-253-8393 063-253-5522
전남 (1)	기쁨원	전라남도 담양군 월산면 월신평길 79-11	061-382-0626 061-383-0565
경북 (2)	나자렛집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 가일길 143	054-335-0125 054-335-0122
	포항들꽃마을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로 293	054-262-9093 054-262-9095
경남 (1)	새살의집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가례로 667-7	055-574-3633 055-574-7544

● 개인시설(5)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1)	마더테레사의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 2길 20	02-3216-2431 02-3216-1566
인천 (3)	다사랑의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11번길 34-10(송의동)	032-886-8780 032-889-8780
	한무리힐리라이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천로19번길 15(송의동)	032-881-5777 032-889-3777
	광명의집	인천광역시 서구 새오개로16번길 7-4(석남동)	032-576-3347 032-581-4424
전남 (1)	해남임마누엘공동체	전라남도 해남군 옥천면 서산길 231	061-536-0202 061-536-0203

■ 노숙인 자활시설(44)

• 법인시설(34)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16)	서울특별시립 24시간 게스트하우스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람길 125	02-2215-9251 02-2215-9254
	가나안쉼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56-1	02-964-1558 02-965-4165
	광야홈리스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0길3	02-2636-3373 02-2068-7254
	강동희망의집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28길 21	02-2041-7817 02-475-4588
	구세군서대문사랑방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1	02-312-7225 02-3147-2321
	구세군가재울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명지대1다길 2	02-309-3009 02-6442-2031
	길가온혜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리로22나길 14	02-891-5732 02-891-5731
	대한성공회살림터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회단지길 67	02-875-3474 02-875-3490
	수송보현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31길 22-7	02-737-4894 02-737-4896
	애원희망홈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53	02-3421-2707 02-3421-0124
	아침을여는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10길 19	02-924-1010 02-924-1018
	양평쉼터(시립)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화전로 264	031-775-4940 031-773-4961
	열린여성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내2길 66-10	02-704-5395 02-704-5514
	천애원 희망의집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로 7-7	02-952-4564 02-6442-4568
	희망나무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92길 37-4	02-846-3070 02-2675-0643
	현돌회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7가길 12	02-372-5905 02-372-5915
부산 (3)	금정희망의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서부로40(서동)	051-526-1033 051-526-1066
	금정내일의집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샘로18번길 60	051-995-1077 051-995-1080
	다이룸자활센터	부산광역시 금정구 반송로 446-1	051-412-0191 051-412-3945
대구 (2)	성프란치스코 자활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77길 40	053-243-1313 053-218-1313
	동대구노숙인쉼터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4길 36	053-742-0353 053-754-0355
인천 (1)	내일을여는자활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29-35(계산동)	032-544-6330 032-549-0229
광주 (1)	무등노숙인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삼정로 10(두암동) 무등종합사회복지관 3층	062-262-7481 062-268-0094
대전 (3)	울안공동체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 3층(정동)	042-252-5255 042-252-5257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성바우로의집	대전광역시 동구 충정로130번길 53, 정우빌라 A동 401호 (가양동)	042-635-3186 042-635-3184
	파랑새등지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835번길 75(중동)	042-221-8334 042-221-8330
울산 (1)	울산광역시 노숙인자활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 238, 5층(달동, 달성빌딩)	052-247-8323 052-223-1366
경기 (2)	안나의집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8(하대원동)	031-602-6033 031-751-9050
	해뜨는집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275번길 130(정자동)	031-257-3015 031-257-3153
강원 (2)	다시서는집	강원도 원주시 가매기길 18-12	033-747-4932 033-766-4935
	최양업토마스의집 [(구)원주노숙인센터]	강원도 원주시 원일로 250	033-746-1206 033-744-4259
충북 (1)	한마음실직자지원센터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392(신봉동)	043-276-9697 043-276-9698
충남 (1)	천안희망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문화2길 5(문화동)	041-553-9154 041-553-9155
전북 (1)	전주다시서기지원센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덕적골2길 35-70 휴먼빌 2동 301호(평화동1가 454-6)	063-245-9004 063-245-9005

● 개인시설(10)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1)	내일의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60길 2-1	02-497-6333 02-461-6251
대구 (2)	살림커뮤니티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117	053-425-0696 053-425-0694
	제일평화의집	대구광역시 북구 고성로28길 1	053-356-9113 053-358-9118
대전 (1)	아곱의 집	대전광역시 중구 당리로95(산성동)	042-586-9395 042-586-9394
경기 (5)	실로암교육문화센터	경기도 부천시 부일로191번길 30(상동), 2층	032-329-3164 032-329-3167
	베다니마을 뜨란채쉼터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465번길 23(신천동)	070-8818-6964 031-311-6967
	이레자활공동체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대평평장길 69	031-775-1972 031-775-1339
	작은자의마을 벨엘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11, 501호(이동)	031-417-7191 031-775-3196
	새살공동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94번길 49	031-254-2110 031-255-2118
전북 (1)	전주희망의쉼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추천1길 27-1 팔복5 301호(팔복동2가 137-4)	063-272-9199 063-273-9199

■ 노숙인급식시설 현황(4)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2)	참좋은친구들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27	02-754-0031 02-312-8295
	살맛나는공동체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69	02-707-0944 02-707-0954
대구 (2)	안나의집 노숙인급식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8(하대원동)	031-755-9050 031-751-9050
	사랑마루 급식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8, 4층(수진1동)	031-722-1026 031-722-1025

■ 노숙인진료시설 현황(2)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2)	서울역 노숙인 무료진료소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21, 서울역전우체국 2~3층	02-777-1145 02-777-5394
	영등포 노숙인 무료진료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02-2069-1604 02-2069-1606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현황(13)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3)	시립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92길 6	02-777-5217 02-777-5393-4
	시립 브릿지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7-1	02-363-9199 02-363-9198
	시립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24	02-2069-1600 02-2069-1605
부산 (3)	부산소망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60번길 3-9(초량동)	051-463-7707 051-463-7723
	부산희망등대 종합지원센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14(전포동)	051-463-1127 051-463-1128
	부산희망드림센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404(좌천동)	051-631-9001 051-631-9002
대구 (1)	대구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8길 22, 3층	053-426-5828 053-423-6243
광주 (1)	광주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1(용산동)	062-716-7400 062-716-7409
대전 (1)	대전광역시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대전시 동구 대전로839번길 75, 3층(중동)	042-221-8331 042-221-8330
경기 (3)	성남시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1147번길 12	031-751-1970 031-751-1971
	수원다시서기 노숙인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갯매산로 86, 2층	031-238-8579 031-236-4979
	의정부시희망회복 종합지원센터	경기도 의정부시 동일로711번길 41-2	031-846-4232 031-846-1660
제주 (1)	희망나눔 종합지원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탐동로15길 2	064-753-0711 064-753-0712

■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현황(8)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4)	옹달샘드롭인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94길 6	02-2068-9113 02-2672-9113
	만나샘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45	02-757-7595 02-757-7597
	햇살보금자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54길 41-16	02-2636-8182 02-2636-8183
	디딤센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6길 7	02-332-5515
대구 (1)	징검다리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남로38길 22, 4층	053-426-0231 053-423-0232
대전 (1)	대전광역시 노숙인일시보호센터	대전광역시 동구 선화로 224, 2층(정동)	042-221-8332 042-221-8332
강원 (2)	춘천시 노숙인일시보호소	강원도 춘천시 영서로 1925-25	033-264-6901 033-262-2335
	원주시 노숙인일시보호소	강원도 원주시 흥업면 대안로 1010 (원주복지원 내)	033-747-1795 033-747-6996

■ 쪽방상담소 현황(10)

시·도	시 설 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5)	창신동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54길 29-3	02-3672-1264 02-3672-1266
	남대문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0(3층)	02-778-1290 02-757-4136
	돈의동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돈화문로9가길 20-2	02-747-9074 02-747-9073
	서울역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로57길 9-12	02-3789-5119 02-3789-5991
	영등포쪽방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 823-2	02-2068-4353 02-2068-7254
부산 (2)	동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중로 131(수정동)	051-462-2017 051-462-2018
	부산진구쪽방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천로108번길 3(전포동)	051-807-5663 051-807-5664
대구 (1)	대구쪽방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문화로47길 13-3	053-356-3494 053-356-3496
인천 (1)	인천쪽방상담소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 91(계산동)	032-543-6330 032-544-8348
대전 (1)	대전광역시쪽방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835, 2층(정동)	042-252-5256 042-252-8395

제 작**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Homepage

<http://www.mohw.go.kr>(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